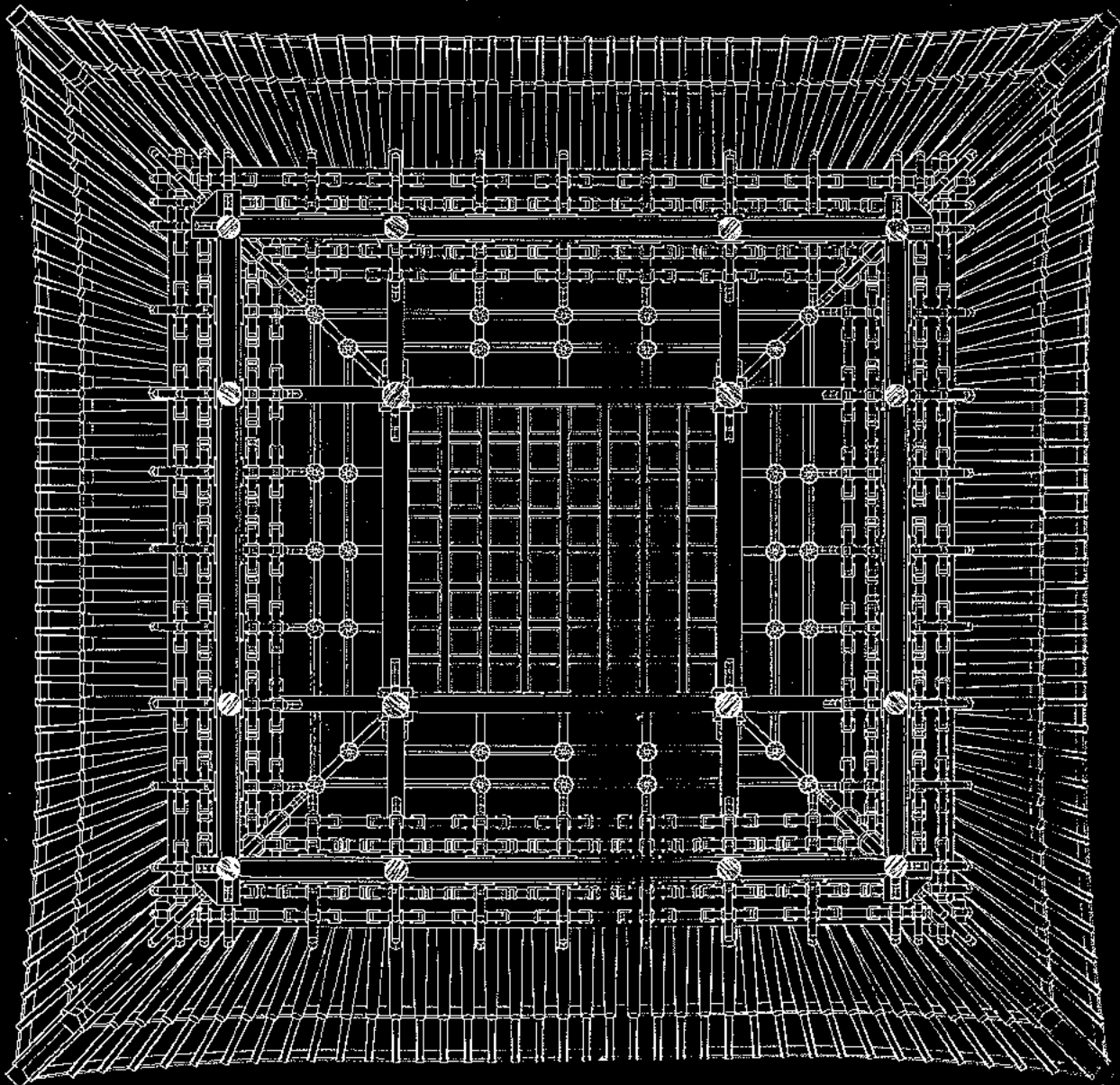


197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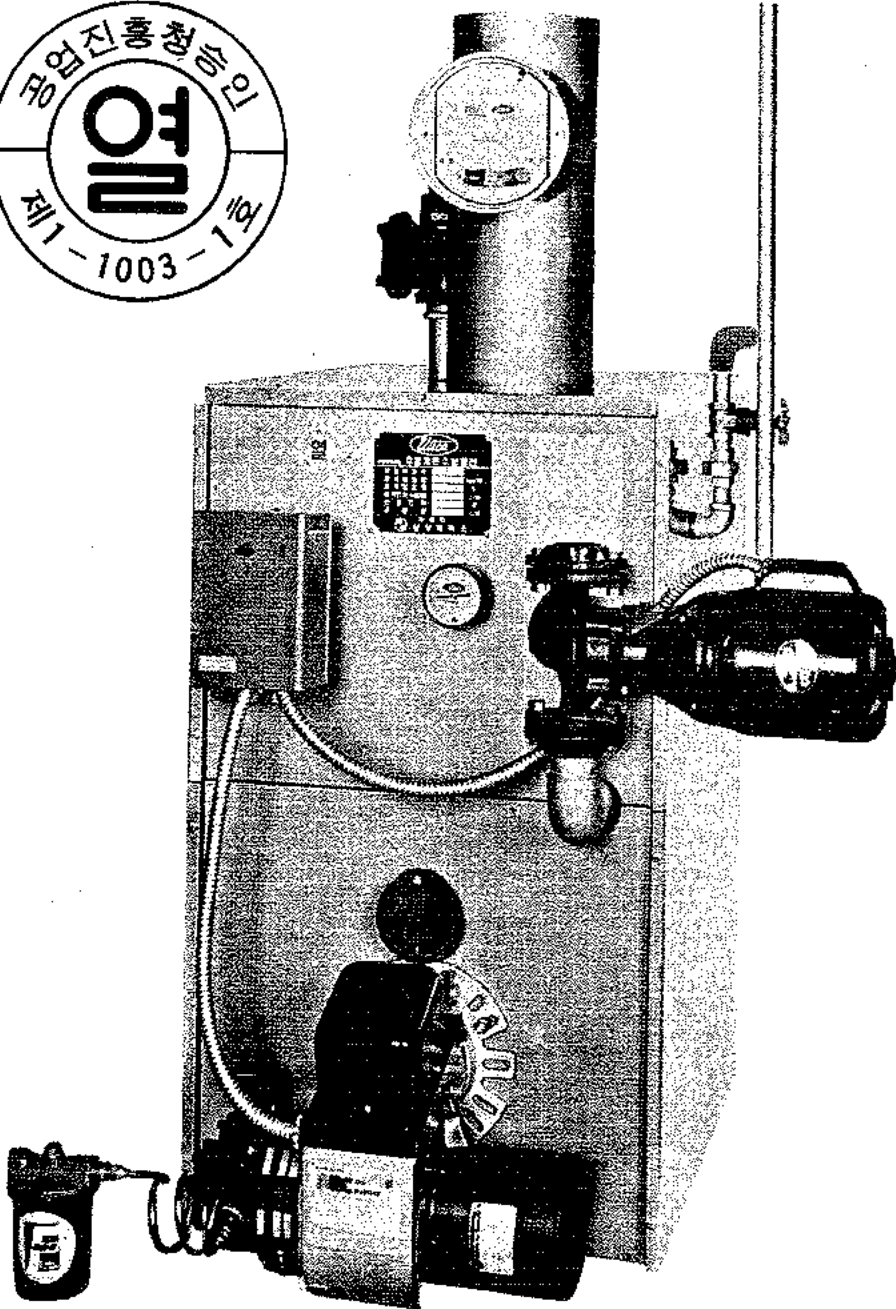


#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상 사**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2807 · 26-8015



#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路75 / 電話：(02)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区 萬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梁山郡日光面伊川里 / 電話 釜山 (52) 4066~4070

## ※ 제품 안내

맑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각종전구발보, 유리블럭, 관유리<조명용  
의료기용

## 各國의 建物들 (씨리즈 IV)



국명 : Korea 도시명 : Seoul 건물명 : Bank of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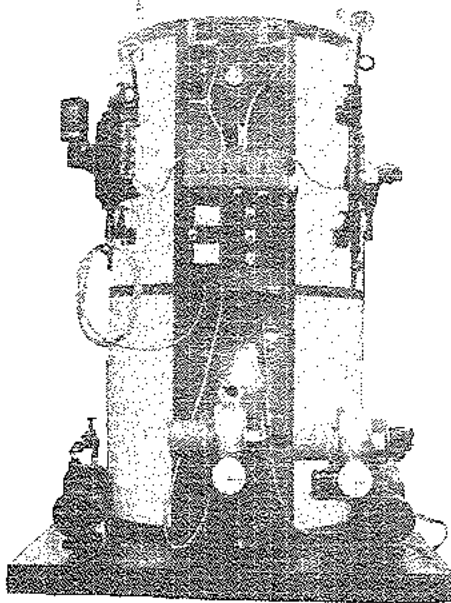
# Rocket Boiler

##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는

증기용전자동보일러

0.5톤, 0.2톤소형전자동증기보일러가 필요하  
실 (압력 3.5kg/cm<sup>2</sup>) 섬유공장의 증기다림기, 세  
탁조, 염색기, 세탁, 기속사 1,000명 이상 취  
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저렴한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됨이 필요치 않으  
며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 보일러

1,500TON이하의 선박난방및 온수공급용전자  
동 보일러

건조용 보일러

건조실의 온도를 자유 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건조용(증기, 온수) 보일러 (비건공장,  
섬유공장, 식육공장, 화학공장)

공장 난방용 보일러

전병 20병 ~ 600병 까지 난방용순회용 증기, 온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물류수용 보일러

시간당 20TON 이하의 순수한온수(보일러내수  
관전도급)가 필요한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  
자 동 온수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

가정용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미국 하니얼 자동, 신드 스탠드 킷즈 등, 부품  
을 직수입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버너

연탄 보일러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병이내의 소형 연  
탄 보일러

※ 관리 유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  
려면 Rocket Boiler에 問議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Rocket Boiler는 영하 40℃의 북방어선 전설 난방부터 국내 공  
장 산업시설,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  
지 우수한 성능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 TYPE<br>ITEM | 종 류                | 로 켓 트 가 료 보 일 러 (가 정 용 공 장 용) |         |         |         |         |         |         |         |         |           | 로 켓 트 스팀보일러 |                             | 로 켓 트 연 탄 보 일 러                 |        |        |         |         |
|--------------|--------------------|-------------------------------|---------|---------|---------|---------|---------|---------|---------|---------|-----------|-------------|-----------------------------|---------------------------------|--------|--------|---------|---------|
|              |                    | 단 위                           | KR-4C   | KR-6C   | KR-8C   | KR-10C  | KR-15C  | KR-20C  | KR-25C  | KR-30C  | KR-40C    | KR-50C      | KR-5-200                    | KR-5-500                        | KR-191 | KR-192 | KR-193  | KR-194  |
| 발 열 량        | Kcal/hr            |                               | 20,000  | 30,000  | 50,000  | 70,000  | 105,000 | 150,000 | 170,000 | 200,000 | 320,000   | 410,000     | 120,000                     | 320,000                         | 3,110  | 6,220  | 9,330   | 12,440  |
| 난방가능평수       | Heating Area       |                               | 20-30평  | 30-50   | 55-80   | 80-100  | 101-150 | 150-200 | 200-250 | 250-300 | 300-400   | 400-500     | 200                         | 400-600                         | 3-4    | 6-9    | 12-15   | 18-20   |
| 관 수 용 량      | ℓ                  |                               | 105     | 122.9   | 166.6   | 178     | 308     | 396     | 573     | 624     | 920.9     | 1200        | -                           | -                               | 35     | 81     | 105     | 130     |
| 연료소비량        | L/HR               |                               | 3-5     | 5-5.5   | 5.5-8   | 8-11    | 11-15   | 15-20   | 20-24   | 24-27   | 32-36     | 44-56       |                             |                                 | 19공탄   | 19공탄   | 19공탄    | 19공탄    |
| 수압시험압력       | kg/cm <sup>2</sup> |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8                               | 2      | ?      | 2       | 2       |
| 배관구경         | ㎜                  |                               | 60      | 50      | 65      | 65      | 75      | 75      | 75      | 75      | 100       | 100         | 65                          | 75                              | 32     | 40     | 40      | 60      |
| 연통구경         | ㎜                  |                               | 150     | 150     | 200     | 200     | 250     | 250     | 300     | 300     | 350       | 400         | 250                         | 360                             | 100    | 100    | 100     | 100     |
| 바 나          | HP                 |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         |         |
| 외형치수         | O                  |                               | 478     | 540     | 610     | 619     | 690     | 800     | 900     | 1000    | 1300      | 1400        | 800                         | 1100                            | 430    | 650    | 950     | 1,250   |
| 외형치수         | H                  |                               | 1150    | 1150    | 1280    | 1450    | 1600    | 1750    | 1750    | 1850    | 2000      | 2300        | 1750                        | 2200                            | 590    | 590    | 590     | 590     |
| 중 량          | ㎏                  |                               | 320     | 340     | 420     | 440     | 400     | 620     | 590     | 620     | 720       | 900         | 720                         | 2400                            | 780    | 138    | 203     | 265     |
| 로켓트보일러이달가격   | 공 장 도              |                               | 159,400 | 232,000 | 255,900 | 301,400 | 410,800 | 512,400 | 580,700 | 690,900 | 1,148,800 | 2,276,400   | 본 체 380,000<br>자동장치 527,500 | 본 체 6,600,000<br>자동장치 1,270,000 | 50,400 | 62,400 | 139,900 | 146,500 |
| 로켓트바나이달가격    | 공 장 도              |                               | 194,300 | 194,300 | 194,300 | 246,800 | 246,800 | 246,800 | 246,800 | 278,300 | 312,000   | 312,000     |                             |                                 |        |        |         |         |
| 보일러·바나<br>합계 | 공 장 도              |                               | 353,700 | 396,300 | 450,200 | 548,200 | 657,600 | 759,200 | 837,500 | 969,200 | 1,462,700 | 1,588,400   | 1,207,500                   | 2,876,400                       |        |        |         |         |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 - 9358 · 26 · 1135 ~ 6 · 66 - 1363 · 66 - 2810

人造石 물갈기가 必要없게 되었습니다.

內裝・階段・外裝・歩道用으로 새로 開發한

# 점보타일

점보타일 .....

大理石・人造大理石(데라조)과 一般타일類의 材質・特性・經濟性  
施工上の 長點만을 뽑아 바닥과 階段用으로 製造한大型타일 입니다.

用 途 .....

內裝用 (빌딩・銀行・病院・슈퍼마켓・工場・玄關 等の 바닥用)  
階段用 (빌딩・아파트・대파트 等 高層建物の 階段用)  
外裝用 (門柱・外壁等 外裝用)  
歩道車道用 (一般歩道・駅構内・地下道・駐車場・풀場 等の 바닥用)

特 徵 .....

- △ 堅固한 規格製品 입니다.
- △ 施工이 簡便하여 二期를 短縮시킵니다.
- △ 冬寒工事に 가장 適合 합니다.
- △ 表面이 完全水平이고 華麗 합니다.
- △ 工事後의 補修가 容易 합니다.
- △ 바닥능대가 必要 없습니다.
- △ 施工上 公害가 없습니다.

規 格 .....

| 型別  | 크 기       | 두께   | 枚當重量 | 坪當枚數 | m <sup>2</sup> 當枚數 |
|-----|-----------|------|------|------|--------------------|
| A 型 | 300×300mm | 28mm | 6 kg | 約36枚 | 11.11枚             |
| A 型 | 400×400mm | 30mm | 11kg | 約20枚 | 6.25枚              |
| B 型 | 300×300mm | 30mm | 6 kg | 約36枚 | 11.11枚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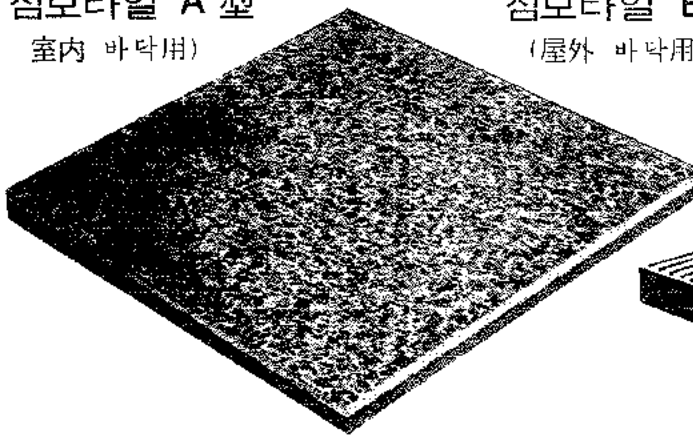
色相.....需妄者가 願하는 色

施 工 .....

모루鬚을 깬 위에 시멘트 溶液을 뿌린뒤 점보타일을 깔거나  
組立하면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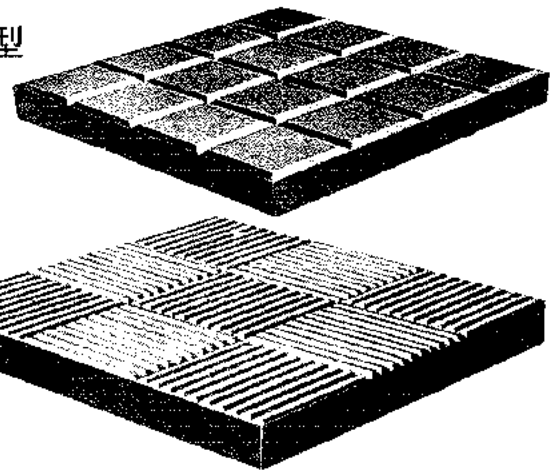
점보타일 A 型

室內 바닥用)



점보타일 B 型

(屋外 바닥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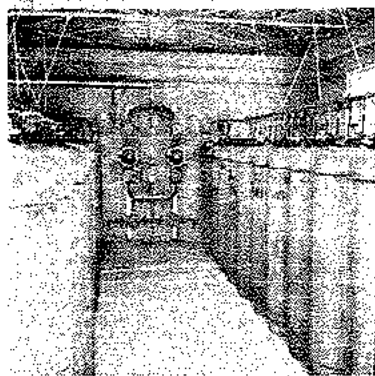
製 造 元 : **유니온建材工業株式會社** (日本国 株式会社 北陸地所와 合作会社)

總販(서울・京畿・江原地区) 三星타일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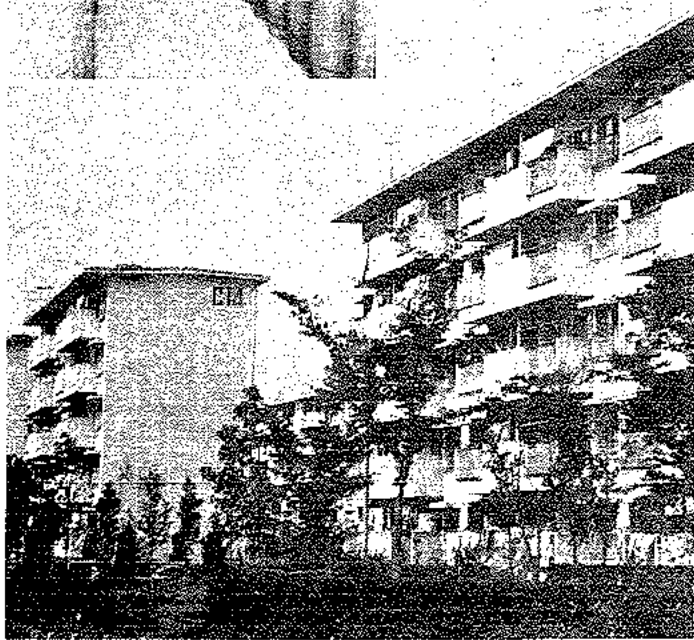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中区乙支路 3 街 5 의 6

電話 27-3600・27-0381~2

# 國內L.P.GAS開發의 先驅者!



1. 제반 가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및  
푸로판, 부탄가스 납품
2. 각종 가스 기구 취급
3. L.P.G 자동차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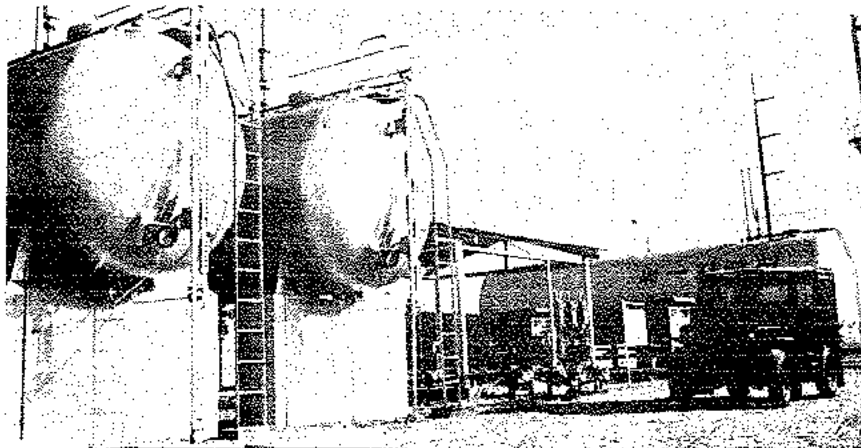


※당사는 15년간의 전통을 가진 국내最古  
最大의 가스제조, 설비 및 납품업체  
로서 일류기술진이 상시 대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시공한 주요 가스  
사용업체 및 기관을 열거하면,

- ① KIST
- ② 국정교과서
- ③ 국립보건연구원
- ④ 청담아파트
- ⑤ 한일전기
- ⑥ 삼화제관
- ⑦ 현대양행
- ⑧ 고려병원
- ⑨ 신 양 촌
- ⑩ 자연농원 등으로

당사시공 아파트 집단공급 저장설비



본사 탱크 시설

오늘도 건축업계의 일익을 담당코자  
부단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 高麗 가스 工業 株式会社

(大韓石油公社 代理店)

營業所・技術部: 서울 종로 2가56-10 Tel. (25) 8176 (25) 8177

本社 및 充填所: 서울 성동구 마장동266 Tel. (53) 2588 (54) 1685 (52) 4095

# 삼원보일러

## 삼원기름보일러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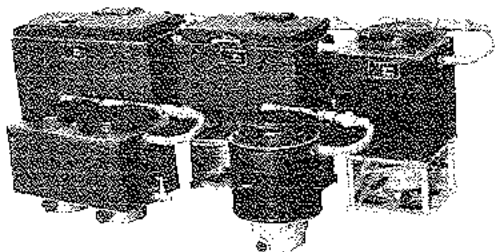
### 특징

- ※완전자동 ※화염관특수식 3-PASS
- ※연료비 20% 절감 ※금탕 겸용
-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 삼원보일러

| 항목        | 단위                 | S-1     | S-2     | S-3     | S-4     | S-5     | S-6     | S-7     |
|-----------|--------------------|---------|---------|---------|---------|---------|---------|---------|
| 발열량       | Kcal/Hr            | 20,000  | 30,000  | 50,000  | 7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 연료소비량     | L/Hr               | 2.5     | 3.7     | 7       | 9       | 12.5    | 18.7    | 25      |
| 수입시험압력    | Kg/cm <sup>2</sup> | 4       | 4       | 6       | 6       | 6       | 6       | 6       |
| 전열면적      | m <sup>2</sup>     | 2.15    | 2.68    | 3.71    | 5.62    | 7.4     | 11.57   | 16.26   |
| 연통직경      | mmφ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300     |
| 배관구경      | mm A               | 50      | 50      | 65      | 65      | 80      | 90      | 80      |
| 바나        | HP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외형치수      | W                  | cm      | 52      | 52      | 57      | 61      | 61      | 80      |
|           | H                  | cm      | 91.5    | 91.5    | 105     | 122     | 122     | 140     |
|           | L                  | cm      | 55      | 70      | 82      | 92.5    | 123     | 150     |
| 난방면적      | 평                  | 30~40   | 40~60   | 60~100  | 100~140 | 140~200 | 200~300 | 300~400 |
| 삼원보일러본체가격 | 공장도(원)             | 130,000 | 160,000 | 200,000 | 250,000 | 330,000 | 440,000 | 530,000 |

## 삼원보일러 연탄용



### 특징 스마일보일러

-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 ※상부 복사열 100% 흡수
-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 ※수명 일반품의 3배
- ※상하부 2중가열 특수식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연탄보일러

| 정식종류   |                    | SB-1       | SB-2       | SB-3         | SB-4        | SB-5         |
|--------|--------------------|------------|------------|--------------|-------------|--------------|
| 용량     |                    | 2탄용 (1일2탄) | 3탄용 (1일3탄) | 쌍2탄용 (2일2탄)  | 쌍3탄용 (2일3탄) | 3일3탄용 (3일3탄) |
| 수입시험압력 | Kg/cm <sup>2</sup> | 3          | 3          | 3            | 3           | 3            |
| 사용연탄   | 크기                 | 22         | 22         | 22           | 22          | 22           |
| 연통     | mmφ                | 80         | 90         | 80           | 90          | 90           |
| 배관구경   | mm A               | 25         | 25         | 25           | 25          | 32           |
| 설치방법   |                    | 부뚜막식       | 보일러식       | 부뚜막식<br>보일러식 | 보일러식        | 보일러식         |
| 난방면적   | 평                  | 3~5        | 5~6        | 6~10         | 10~14       | 14~20        |
| 가격     | 원                  | 35,000     | 50,000     | 60,000       | 95,000      | 130,000      |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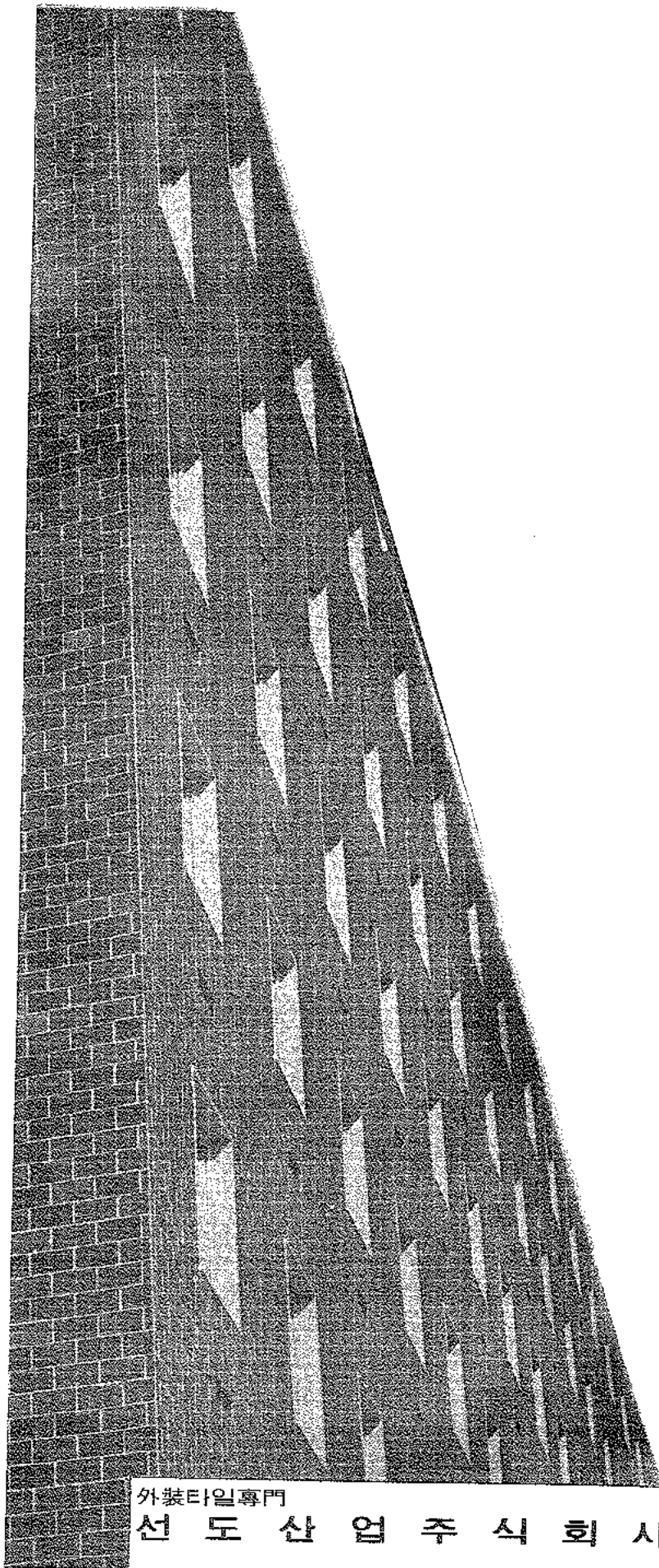
주식  
회사

## 삼원기계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8872, 전시장 42-8550

끝없는 空間創造가 이 素材에서...



鮮陶外裝타일은

耐寒・耐酸性이 强하고

優雅한 色感

美麗한 色相

刺戟性있는

余分の 光澤을 除去한  
表面의 多様な 色度處理...

지금부터

建材에 必要한條件을

完全히 具備한

需要家注目の 製品입니다.

(特殊形狀, 特殊치數의 注文도

引受하고 있습니다)

外裝타일專門

선도산업주식회사

 SUNDO TILE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 草二里212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2街 148  
TEL. ②6 1565・2534 ⑤5 0764・1790



#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ASPHALT·EMULSION)시대로!



## 완전 방수제

# 동방 포루마

포루마방수 일위대가표 (m²당)

| 방수종별<br>방수개소                                 | 3 회 방수공법          | P P 망 전부 특수공법                                                                    |                        | 지 하 실 방 수                                                           |
|----------------------------------------------|-------------------|----------------------------------------------------------------------------------|------------------------|---------------------------------------------------------------------|
|                                              |                   | 5회공법(P.P망 1회)                                                                    | 8회공법(P.P망 2회)          |                                                                     |
| 벽면, 옥실, 강화조, 물 탱크, 지하실외벽 등                   |                   | 옥실, 균열벽면                                                                         | 균 열 옥 실                | 지 하 실 (1층당)                                                         |
| 포 루 마 (KR-3)                                 | 243 <sup>00</sup> | 324 <sup>00</sup> (4회)                                                           | 486 <sup>00</sup> (6회) | 지하실 외벽은 3회 공법적용                                                     |
| 포루마止水用(KR-5)                                 |                   |                                                                                  |                        | 67 <sup>50</sup>                                                    |
| P. P. 망                                      |                   | 120 <sup>88</sup>                                                                | 241 <sup>72</sup>      |                                                                     |
| 포루마시공공임                                      | 311 <sup>91</sup> | 415 <sup>88</sup>                                                                | 624 <sup>03</sup>      | 52 <sup>26</sup>                                                    |
| 방수중 혼합세멘트                                    |                   |                                                                                  |                        |                                                                     |
| 바 탕 정 리                                      |                   |                                                                                  |                        |                                                                     |
| 공사준비비용                                       |                   |                                                                                  |                        |                                                                     |
| 보 호 을 탈                                      |                   |                                                                                  |                        |                                                                     |
| 소 계                                          | 554 <sup>91</sup> | 860 <sup>74</sup>                                                                | 1,351 <sup>75</sup>    | 119 <sup>76</sup> (1층당)                                             |
| 공과잡비 ( % )                                   |                   |                                                                                  |                        |                                                                     |
| 한 계                                          |                   |                                                                                  |                        |                                                                     |
| ※빙딩외벽은 2회도장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며, 내벽은 2회도장후 벽지를 붙인다. |                   | 포루마(KR-3)는 유연성, 접착력, 내한성 등이 우수하며 P.P망은 인장강도가 강하므로 포루마 5회공법은 아스팔트 8겹 방수의 성능을 능가함. |                        | ※수압에 따라 흡수가 상이할<br>포루마止水用은 액체방수. 분말방수등과는 달리 강도가나<br>면서 균열과 모체분리가 없음 |

1975 年分

### 포루마 물방방수

포루마는 수성 아스팔트  
임으로 세멘트물탕과 혼  
합하여도 100% 방수가  
됨

### 방수실공사

포루마와 질서를 혼합하  
면 신축이 우수하고, 완  
벽한 바탕이 됨.

### 스치로폴 정착

스치로폴을 붙이고, 스  
치로폴과 차체를 방수하  
며 스치로폴위에 미장을  
탄도 할수 있으므로 스  
치로폴을 옥상삼부로 올  
려 단열할수 있음.

포루마 (KR-3) 1회 도장時 1m²당 소요량

| 명         | 상    | 수 | 단      | 단     | 금          | 세멘트 혼합시 |
|-----------|------|---|--------|-------|------------|---------|
| 포루마(KR-3) | 0.27 | ℓ | 300.00 | 81.00 | 0.2kg 별도계상 |         |

포루마止水用(KR-5) 1층당 시공비 (1m²당)

|        |       |   |                   |                  |          |
|--------|-------|---|-------------------|------------------|----------|
| 포루마止水用 | 0.27  | ℓ | 250 <sup>00</sup> | 67 <sup>50</sup> |          |
| 방 수 공  | 0.012 | 인 | 1,780             | 21 <sup>38</sup> | 액체방수품생기준 |
| 인 부    | 0.03  | 인 | 1,030             | 30 <sup>90</sup> | "        |

※바탕정리, 방수층혼합용세멘트, 보호모루터는 별도 계상

포루마도장 방수공임 (1m²당 1회)

|       |       |   |       |                  |          |
|-------|-------|---|-------|------------------|----------|
| 방 수 중 | 0.037 | 인 | 1,780 | 66 <sup>86</sup> | 아스팔트품생기준 |
| 인 부   | 0.037 | 인 | 1,030 | 38 <sup>02</sup> | "        |

※ 바탕정리·도르터바르기는 별도 계상

P. P 망 깔기 (1m² 당 1회)

|        |       |    |                  |                  |          |
|--------|-------|----|------------------|------------------|----------|
| P P 망  | 1.10  | m² | 50 <sup>00</sup> | 55 <sup>00</sup> | 속복된10%가산 |
| 깔기 방수공 | 0.037 | 인  | 1,780            | 66 <sup>86</sup> |          |

※ 깔기 인건비가 포함되었음.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255

부산 : 43-4558

月刊「建築士」(通卷88号)

1976 6

目 次

|                           |                |
|---------------------------|----------------|
| 주택 건축허가 절차 개선방안 실시에 관한 건의 | (2)            |
| 주택 건축허가 절차 개선방안 보완        | 국무총리지시제 8호 (6) |
| 共同住宅의 隣棟間隔                | 李海成 (7)        |
| 南倉再開発地区에 대한 事例研究          | 尹定燮 (12)       |
| 會員코너                      | 崔昌奎 (19)       |
| 會員作品                      | (21)           |
| 어린이회관문화관                  | 金仁錫            |
| L 氏 住宅                    | 李興秀            |
| 서협교회                      | 조성만            |
| 住宅                        | 金錫徹            |
| 송전대학교기독교박물관               | 김관풍            |
| 제21회 세계 올림픽 몬트리올 경기장      | (35)           |
| 建築法質疑応答                   | 建設部建築課 (53)    |
| 建築法施行規則                   | (59)           |
|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 (75)           |
| 會員動靜                      | (78)           |
| 協會記事                      | (86)           |
| 月間協會動靜                    | (87)           |
| 建築許可統計                    | 建設部 (89)       |
| 편집후기                      | (90)           |

編纂委員会

|     |     |
|-----|-----|
| 委員長 | 金斗燮 |
| 委員  | 金仁錫 |
| "   | 金眞一 |
| "   | 辛鉉植 |
| "   | 俞景哲 |
| "   | 尹道根 |
| "   | 李文輔 |
| "   | 韓鉉燮 |
| "   | 李環會 |

表紙說明 佛國寺 觀音殿 仰示圖

發行人兼 編輯人・李圭福 / 登録番号・第2-1251号

登録日字・1967年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6年6月30日 / 通卷 第88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 주택 건축 허가절차 개선방안 실시에 관한 건의

1 차건의

건축주의 불편을 덜어 주고 건축 행정을 위요한 부조리를 일소하는등 건축 행정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주택건축허가 절차 개선 방안은 그간 춘천, 수원, 전주, 진주등 4개 지구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당초 기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이 입증 되었으나 이 방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시정이요망되오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7월 1일부터 전국 35개시에서 이 방안을 확대 실시하는데 대비 각 지방별 수입 태세를 갖추는데 있어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어오니 실시 요강을 변경할 때 심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망하나이다.

## 1. 시범실시 지구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요망 사항

가. 5인 건축사의 연서 절차

(1) 현 행

매건의 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공정 보고서, 준공검사서 작성시마다 5인조 전원이 날인하고 있음.

(2) 시정 요망 사항

건축 허가 신청서와 준공 검사서에만 5인조 전원이 연서 날인하고 착공 신고서와 공정 보고서에는 이를 담당하는 건축사만이 날인하도록 시정을 요망함.

(3) 시정 사유

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공정 보고서, 준공 검사서에 5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그중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타하거나 유고시에는 기일이 지연되는등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 허가 신청서와 준공검사서에만 5인이 연서 날인하여도 책임의 소재를

충분히 추궁할 수 있음으로 착공 신고서와 공정 보고서에는 동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만이 서명 날인하는 것이 타당함.

나. 점검표(체크리스트)의 기재 사항 간소화

(1) 현 행

건축허가 신청과 중간 검사 및 준공 검사시에 점검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함.

(2) 시정 요망 사항

설계 도서에 기재된 사항은 설계 도서 작성시에 건축사가 참고 하도록 하고 허가청에 제출하는 점검표에는 법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만을 기재케 하고 설계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복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매록 간소화를 요망함.

(3) 시정 사유

건축 허가 신청시 점검표 작성은 설계 도서 작성시에 점검되어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일단 동 점검표에 의거 작성된 설계 도서의 내용을 점검표에 재기재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게 됨으로 점검표는 법상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만을 기재하게 하여 설계 도서에 명기된 사항의 중복 기재 사항을 대폭 줄여 간소화 되어야 함.

다.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8 근무 시간내 허가 처리

#### (1) 현 행

법 해석상의 견해차와 서류 보완 지시등 8 근무 시간내에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는 2, 3일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 (2) 시정 요망 사항

5인의 건축사가 연서한 건축 허가 검토 보고서와 준공 검사 보고서 등이 제출될 경우 접수 창구에서 즉시 건축 허가 통보서 또는 준공 검사서가 교부되도록 시정을요망.

#### (3) 시정 사유

주택 건축 허가 절차 개선 방안은 200명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와 준공 검사등의 업무를 5인의 건축사 책임하에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만일의 경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대 서명한 5인의 건축사를 처벌함으로써 명량한 건축 허가 행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동 절차에 의한 건축 허가는 건축사가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건축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청에서 법해석상 견해차 또는 설계 도서의 수정등을 이유로 2, 3일씩 지연시키는 행위는 건축 허가절차 개선 방안의 근본 취지에 위배됨.

## 2. 35개 시에서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요망 사항.

### 가. 합동 사무소 설치 문제와 대책

(1) 귀부에서는 이 방안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 조단위 건축사의 합동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바.

(2) 서울, 부산등 대도시 중심 지대에서는 사무실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온데 보조원등 종사자 평균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축사 5인이 (종사자 총수 50명)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50명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부에서 150명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일 뿐더러 설혹 사무실이 물색되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임대 보증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1급 건축사의 업무중 200명 이하의 주택 설계, 감리는 전업무의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일부 건축사는 대단위 정부 용역 및 작품 활동을 수행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건축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점이 우선 있고 합동 하는 경우 상호 업무상의 비밀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 건축 설계 업무의 본질상 이러한 경우에는 합동 사무소 설치 운영이 오히려 부작용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도시의 경우)

(4) 따라서 합동 사무소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상기한바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시와 합동 사무소 설치 운영이 가능한 건축사들은 합동 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합동 사무소 설치가 어려운 건축사들은 현재 일부 시범 지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무실을 각기 설치 운영 하되 조편성만으로 연대 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편성에 따른 문제점과 요망 사항

(1) 건설부 제책에 의하면 5인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 장관의 재량으로 4인조 편성을 허용할 것이라 하며 또한 전문된 바에 의하면 300m<sup>2</sup> 이하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5인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300m<sup>2</sup>이상 660m<sup>2</sup>이하의 대상 건축물에는 1급 건축사로서 3인 연대 책임제를 구상하고 있다 하옵는 바.

(2) 5인 연대 책임제의 조편성에 있어서

주택은 특수한 설비가 불필요한 건축물임으로 5인 이하의 인원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예상치 않았던 건축주의 위법 행위에 관련 연대 책임을 진 건축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조편성 인원수를 꼭 5인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는 반론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조편성 인원수의 현실적인 재조정도 검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3인 연서제를 주장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3) 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m<sup>2</sup> 이하의 대상 건축물은 5인 연서제로 300m<sup>2</sup>이상~660m<sup>2</sup> 이하의 대상 건축물은 1급 건축사 3인 연서제로 한다는 것은 현행 건축사법 상의 1, 2급 건축사의 업무 한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사료는 되으나 이러한 차등 연대책임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별 조편성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며 대형 건축물 일수록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형 건축물(300m<sup>2</sup> 이하)은 5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은(300m<sup>2</sup>이상~660m<sup>2</sup>이하) 3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조편성 단위 인원수는 대상 건축물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5개 시에서의 확대 실시를 계기로한 기타 요망 사항  
가. 건축사법의 조속한 개정

(1) 주택 건축 허가 절차 개선을 실시하기 위한 건축사 조편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1, 2급 건축사 업무 한계입니다. 업무 한계가 각기 상이한 1, 2급 건축사가 한개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조편성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귀부에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라 사료하옵는바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개정이 시급한 바 있습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제정 이래 10여년간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건축사법의 개정을 1974년 11월에 이미 건의하고 그 후 기회있을 때 마다 수차례 걸쳐 보완 자료 또는 추가 건의 사항을 제출하면서 동 법의 시급한 개정을 열망해 온바 있어온데 금번 35개 시에서의 이 방안 확대 실시를 계기로 건축사의 급별 폐지와 잠정적인 2급 건축사의 업무 한계 재조정등을 위시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관계 조항의 전면 개정으로 주택 건축 허가 절차 개선을 전국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법적 뒷받침과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편성 이전 개인 업무에 대한 하자의 불문 조치

주택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중 5인 연서 체제의 조편성은 동 간소화 방안에 의한 하나의 허가 대행 단위로서 허가 행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바 76. 7. 1부터 35개 시에서 확대 실시될 때 그 이전의 이유로 건축사가 문책될 경우 해당조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타건축사에게까지 큰 피해가 미치게 하는등 혼란이 야기 될 것이 우려되오니 76. 7. 1 이전 수행한 건축사의 업무중 하자가 발견될 경우라도 조편성과 유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일체 불문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1976. 6. 14.

대한건축사협회

| 현행                                                                                                                                                                                                                                                      | 개정요청안                                                                                                                                                                                                        | 사유                                                                                                                                                                                        |
|---------------------------------------------------------------------------------------------------------------------------------------------------------------------------------------------------------------------------------------------------------|--------------------------------------------------------------------------------------------------------------------------------------------------------------------------------------------------------------|-------------------------------------------------------------------------------------------------------------------------------------------------------------------------------------------|
| <p>3. 연대 책임 건축사의 편성 : 다음 기준에 의거 연대 책임 건축사의 조를 편성한다.</p> <p>나. 1, 2급 건축사 혼성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건축사법 제 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대 책임 건축사(다른 조의 1급 건축사를 포함한 다)로 편성하되 서울·부산·대구에서는 3인 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2인 이상으로 한다.</p> <p>다. 연대 책임 건축사의 사무실을 조별 공동 사무실로 하거나 동일 건축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p> | <p>3. 연대 책임 건축사의 편성 :<br/>과 동</p> <p>나. 1, 2급 건축사 혼성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업무는 1급 건축사가 수행하고 동 업무에 대한 연대 책임은 해당 조에서 진다.</p> <p>다. 연대 책임 건축사의 사무실을 조별 공동 건축사무실로 하거나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p>1. 조 편성의 2원화에 따른 혼란 초래</p> <p>2. 35개사중 10개 시는 1급 건축사가 1인밖에 없어 사실상 실시 불가능.</p> <p>3. 건축사의 총화 단결을 저해</p>                                                                                 |
| <p>5. 건축 허가 업무처리 가. 현행</p> <p>나. 허가청은 건축사가 작성한 점검표에 의해서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적법 여부를 검토하여허가 업무를 처리한다.</p> <p>다. 건축 허가 업무는 8 근무 시간내에 처리하며 창구 즉결 또는 과장 전결로 한다.</p>                                                                                           | <p>5. 건축 허가 업무처리 가. 과 동</p> <p>나. 허가청은 건축사가 작성한 점검표에 의해서 창구에서 즉결 허가 업무를처리한다.</p> <p>다. 삭 제</p>                                                                                                               | <p>1. 대도시에서는 사무실 부족 및 막대한 임대료 관계등으로 사무실 확보 난.</p> <p>2. 건축사 개개인의 업무상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p> <p>3. 건축사 업무의 본질 및 현행법 체제상 합동 사무실 설치는 합동 사무소에 세제 및 업무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권장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p> |

|                                                                                                                                                                                                                                                                                                                                                                                                                                                                                             |                                                                                                                                                                                                                                                                                                                                                                                                                                                                                                |                                                                                        |
|---------------------------------------------------------------------------------------------------------------------------------------------------------------------------------------------------------------------------------------------------------------------------------------------------------------------------------------------------------------------------------------------------------------------------------------------------------------------------------------------|------------------------------------------------------------------------------------------------------------------------------------------------------------------------------------------------------------------------------------------------------------------------------------------------------------------------------------------------------------------------------------------------------------------------------------------------------------------------------------------------|----------------------------------------------------------------------------------------|
| <p>9. 중간점사의 실시 가.</p> <p>4. 중간 점사 결과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건축사는 그 시정이 끝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시키고 즉시 이를 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나. 건축법 제 7 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시공지시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즉시 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합동 검사반의 편성 및 합동 검사의 실시 가. 시장, 군수는 건축물이 건축 관계 법령 및 설계 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합동 검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p> <p>반 장 : 건축허가 담당국 과장 1인</p> <p>반 원 : 건축허가 담당국 직원 1인 도시계획 담당직원 1인 청소 담당직원 1인 한국전력 본지점 직원 1인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부서의 직원</p> | <p>9. 중간 점사의 실시 가.</p> <p>4. 중간 검사 결과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건축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즉시 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나. 건축법제 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시공지시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즉시 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합동 검사반의 편성 및 합동 검사의 실시 가. 시장, 군수는 건축물이 건축 관계 법령 및 설계 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합동 검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p> <p>반 장 : 건축 허가담당국 과장 1인</p> <p>반 원 : 건축허가 담당국 직원 1인 도시계획담당 직원 1인 청소담당직원 1인 한국전력 본지점 직원 1인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건축사 1인 기타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직원</p> | <p>건축사에게는 강제 명령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없음.</p> <p>건축사 업무에 관한 합동 검사인만큼 건축사 참여가 타당함.</p> |
|---------------------------------------------------------------------------------------------------------------------------------------------------------------------------------------------------------------------------------------------------------------------------------------------------------------------------------------------------------------------------------------------------------------------------------------------------------------------------------------------|------------------------------------------------------------------------------------------------------------------------------------------------------------------------------------------------------------------------------------------------------------------------------------------------------------------------------------------------------------------------------------------------------------------------------------------------------------------------------------------------|----------------------------------------------------------------------------------------|

## 주택건축 허가절차 개선방안 보완

### 국무총리 지시 제 8 호

1. 국무총리지시 제20호(75. 12. 15)로 지시한 “주택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수원·춘천·전주·진주 4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건축 허가의 신속화, 행정의 간소화, 부조리의 제거등 여러가지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그 시행과정을 통하여 토지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절차등에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적용함에는 도시계획재정비등 선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보완대책을 시달하니 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 전국일원 도시 계획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이외의 지역지구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 건축법 제 9 조(대지의 안전) 및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에 적합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가한다.

(2) 토지형질변경의 신청·허가 및 준공 검사는 생략한다.

(3)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직권으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다.

나. 연대 책임을 지는 건축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 지사가 3인 이상으로 편성하게 할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의 주택건축 허가 절차 개선방안 실시는 1977. 1. 1부터 하되, 서울특별시장은 1976. 12. 31이전에 다음 조치를 완료 그 결과를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1) 도시계획의 재정비, 아파트 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을 결정등을 위한 적법 절차를 필하고 공고하는 등 주택건축 허가절차 개선방안 실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

(2) 위의 조치가 완료된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의 시범실시를 할것.

1976. 6. 21

국무총리

# 共同住宅의 隣棟間隔

李 海 成 瀋陽工大教授

## 1.

共同住居団地の 団地計劃은 獨立住宅이나 聯立住宅 団地와 같은 低層 低密度인 境遇와는 달리 格別한 計劃條件을 가지고 있다.

까닭에 共同住居団地는 그 나름대로의 計劃規準이 라던지 法的規制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問題는 일찍이 共同住居形式을 都市住居形式으로 發展시켜온 諸國에서는 이미 諸般案件이 定해져서 좋은 成果를 얻고있다.

그러나 國內의 事情은 近間 都市人口의 急激한 膨脹과 더불어 都市住居의 量的不足이 顯著해져서 共同住居形式이 現實적으로 必要하게되어 開發景氣를 刺戟하므로써 그 建設이 擴大一路에 있다.

初期의 開拓的 試驗段階에서는 自然히 公共團體가 主管하여 純粹한 計劃技術的 立場에서 示範的 企圖가 實踐되었으나 景氣展望이 좋아지는데 따라 民間企業으로 投資의 対象이되고 建設量이 擴張되어가는 現象과 더불어 規準이나 規制가 時急을 要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民間企業으로서의 共同住居団地の 造成 開發은 營利에 그 目的을 두게되는 것이므로 基本的 居住要件이나 居住環境이 犧牲되어질 憂慮가 있으며 實際로 이러한 일이 問題로서 提起되고있다. 먼저 말한대로 比較的 建物の 層數도 높아지고 居住密度도 높아지는 共同住居団地の 特殊한 要件이 原則적으로 勸案되지않는다면은 共同住居団地內的 生活은 環境條件에서 威脅이나 混亂 또 災害와 不健康을 招來하게된다.

共同住居団地 計劃에서 基礎的으로 다음과 같은 要件이 考慮되는 것이 原則이다.

〈1〉 共同住居団地の 計劃은 自然光線의 採光과 通風이 滿足할만큼 確保되는 條件下에 마련되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2〉 共同住居団地の 計劃은 居住密度가 獨立住居 団地보다 훨씬 높은 까닭에 個生活體의 Privacy가 侵害될 念慮를 細密히 念頭에 두어야 한다.

〈3〉 共同住居団地の 計劃은 그속에 마련되는 空間이 가장 좋은 方法으로 組織된 生活活動을 許容할 수 있는 充分한 크기라야 한다.

〈4〉 共同住居団地の 計劃에서 交通에 使用되는 空間은 各種活動에 使用되는 空間과의 連結이 時間적으로나 費用上으로 最少로 되게하여야 한다.

〈5〉 共同住居団地內的 住居用健物の 配置는 団地內外的 機能的 連結이나 公共生活施設과의 關聯이 가장 좋고 充分한 空間을 最上의 位置에 確保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여기서는 優先 가장 基本的要件인 日照條件에 따른 隣棟間隔, 建物の 높이, 建物の 幅, 建物の길이 등을 現在 法的으로 規制되어있는 容積率, 建蔽率 등과 關聯시켜 檢討하고 視覺的 條件과도 比較하여 其適當性을 찾아보아 現在 建設된 또 建設이 進行되고 있는 共同住居団地の 樣相을 對照해 보려는 것이다.

〈1〉 서울의 緯度와 太陽의 高度角, 方位角에 따른 隣棟間隔

서울의 緯度는 中央觀象台를 標準位置로 할때 北緯 37° 34' 이다.



이 緯度에서 가장 必要한 冬至때의 各時間의 太陽의 高度角과 方位角은 다음과 같다.

(冬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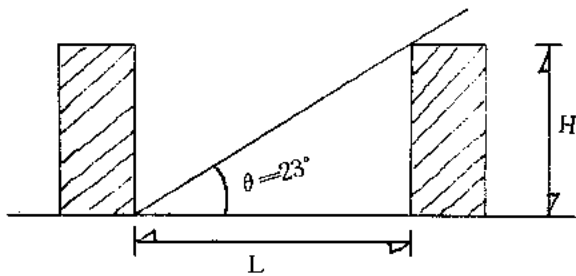
(表 1)

| AM      | PM     | AZIMUTH  | ALTITUDE |
|---------|--------|----------|----------|
| NOON    |        | 180°     | 28° 56'  |
| 10 : 00 | 2 : 00 | 150° 11' | 22° 44'  |
| 8 : 00  | 4 : 00 | 126° 53' | 6° 55'   |
| 7 : 18  | 4 : 42 | 12° 12'  | 0°       |

日照條件이 問題가 되는것은 特히 冬節때이며 最少 限 冬至를 中心으로 하여 日中 4時間程度의 日射光線을 必要로 하는 것이 一般의 常識이다.

이까닭에 冬至때 太陽의 高度角으로 日中 4時間의 日射光線을 받으려하는 南쪽 向에서 前面 建物高에 따라 棟間隔의 距離를 어느程度 確保하느냐가 計劃上 計算에 依해 算出되어왔다.

即 위의 表를 規準해 보려는 日中 4時間을 午前 10時에서 午後 2時까지로 生覺할때 다음 그림에서



$$L = H \cot 23^\circ = 2.359H \text{ 가 된다.}$$

다시 말해서 棟間隔은 時面建物高의 約 2.356배나 떨어져야 한다는 結果이다. 이것은 冬至때 日中 4時間의 日射光線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棟間隔으로 配置 計劃의 規準이 된다.

또 冬至때 이 時間사이 即 午前 10時에서 午後 2時까지가 水平面에든 垂直面에든 中中 日射量이 가장 큰 時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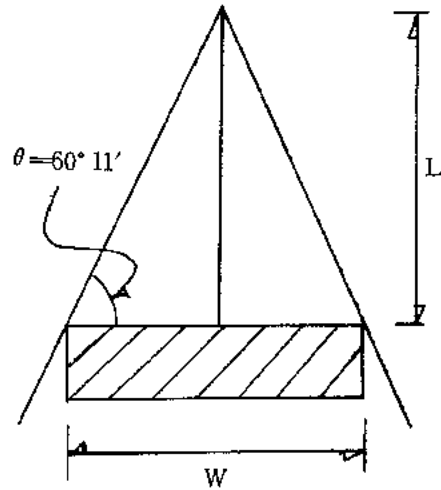
勿論 日射光線이 必要한 것은 最下層, 窓의 窓 밑을 以上이니 嚴格히 따지려는 地盤面에서 最下層, 窓 밑을 따지의 높이(r) 만큼을 前面建物高에서 빼면

2,356(H-r) 이며는 充分하다.

다음 이것을 方位角을 規準으로 하였을 때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表-1)에서 冬至때의 正午에는 方位角이 180° 이며 午前 10時와 午後 2時에는 150° 11' 이다.

午前 10時나 午後 2時때 太陽의 方位角으로 생기는 그늘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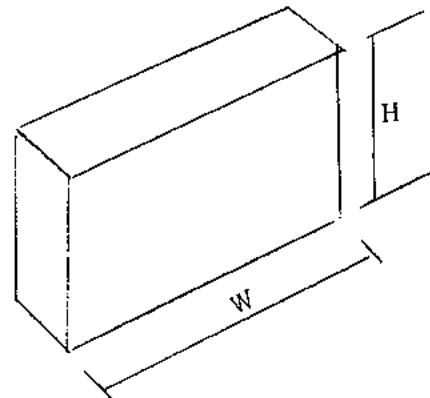
$$L = \frac{W}{2} \cot 60^\circ 11' = 0.8602W$$

即 建物 거리의 0.8602배의 幅이 그늘의 範圍에 든다.

이것을 먼저 얻은 太陽의 高度角에 따라 생긴 그늘의 範圍와 一致시켜 주려는 建物 길이(W)와 建物 높이(H)와의 關係를 單純하지마는 찾을 수 있다.

即  $W = 2.75H$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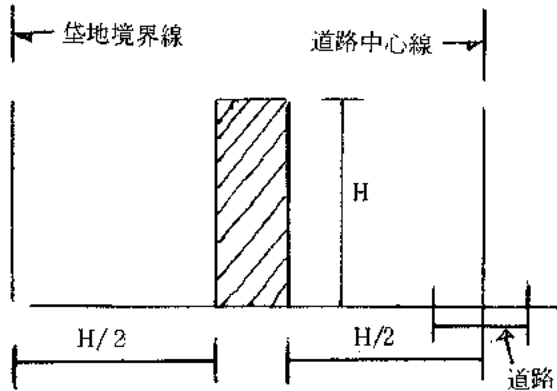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H)가 1 일때 W는 約 2.75H이면 高度角이나 方位角 兩境偶에서 같은 範圍의 棟間隔을 決定할 比例가 된다.



現在 우리나라 建築法上 日照權等を 위한 建築物 높이 制限에 관한 內容은 建築法施行令 167條에 建物高와 隣棟間隔에 對한 規制를 하고있는바 要約 하려는 다음과 같다.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商業地域内の 共同住宅, 聯立住宅, 寄宿舎, 病院과 이에 類似한 建物은 南北 兩方位이어서 垜地境界線까지 (前面에 道路가 있을때는 道路中心線까지)의 距離를 建物高의 1/2 以上 더워 주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結局 南北軸線上의 建物과 建物사이의 隣棟間隔은 建物高만큼 疎려져야 한다는 内容이며 또 이 規制는 同一垵地內의 共同住居建物の 棟間隔에서도 같은 制約을 받는다.



이 規制를 먼저 얻은 서울의 太陽高度角과 方位角에서 定해진 冬至때의 午前10時와 午後2時, 그리고 正午때의 그늘의 範圍와 比較하여보면 正午때 太陽高度  $28^{\circ} 56'$ 에서도 위의 建物は 地盤面에서  $0.446H$  程度까지 全히 日射光線을 受 받게되고 午前10時나 午後2時의 太陽高度에서는  $0.576H$  程度까지 全히 日射光을 受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隣棟間隔을 建物高만큼만 疎룬다는 것은 冬至에 있어서 後面建物の 約 切半以下가 全히 日射光線을 終口 受 받는 結果가 된다.

勿論 韓國의 經濟的 實情이나 水準을 考慮할때 當場은 科學的으로 바람직한 規準을 適用 規制할 수 없다는 口實은 別問題로하고 共同住居團地의 切實한 基本要件中에서도 가장 必需的 要件인 日射光의 問題는 長期的 眼目에서 볼때나 또 共同住居形式이 市民의 居住로서 繼續的으로 開發되어갈 展望을 勘案할때 規制를 是正할 勇斷이 要望된다.

더우기 한가지 添言해 둘 일은 共同住居用 建物の 길이에 對하여서는 全히 規制가 되어있지 않아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規制가 되지 않으려는 限定없이 建物の 길이을 制約할 根據가 없다.

## 〈2〉 視覚條件으로 본 隣棟間隔과 建物 配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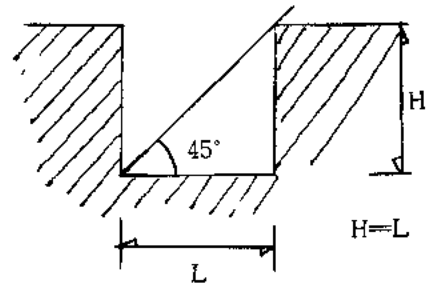
다른 한便 이러한 問題들을 視覺的 條件에 關聯시켜 論議가 되는것이 常識이다.

大體的으로  $70'$ 에서  $80'$  사이가 人間이 相對的 表情을 感知할 수 있는 距離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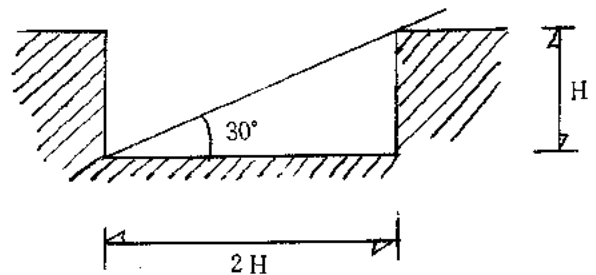
가닭에 共同住居團地內의 隣棟間隔은 視覺的 間涉을 받지않기 위해 最少限 이 距離는 建物高에 相關없이 確保해야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條件은 棟과 棟사이 設定된 空間의 視覺的條件上의 空間感이다.

一般的으로 前面에 遮斷된 높이만큼의 距離를 視覺距離로 했을때는 그 空間感을 陷穴속에 놓여진 心的反應을 느끼게 된다.



이 가치있는 듯한 空間感을 벗어날 수 있는 限界는 視覺距離가 前面에 遮斷된 높이의 2倍程度 疎려져야 한다. 即 前面의 높이와 이루는 角度가  $30^{\circ}$ 일때이다.



建物高와 隣棟間隔이 같을때에는 그 建物사이의 空間은 空地(open space)로 느껴지는것이 아니라 반자 없는 복도 役割밖에는 못한다.

적어도 棟間隔이 前面建物の 2倍以上 疎려져야 비로서 空地(open space)로서의 空間感을 얻기 始作한다는 것이다.

먼저도 말한것과 같이, 이러한 空間感의 確保는 獨立住居團地와는 달리 共同住居團地에서는 重要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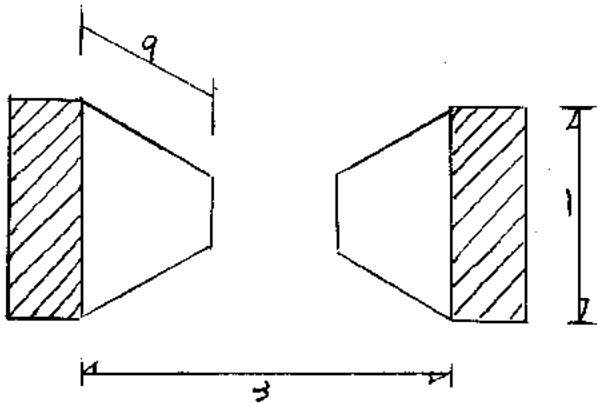
가닭에 餘裕있는 計劃에서는  $3H$ 程度나 考慮하고 있는 先例를 볼수 있다.

偶然한 일이겠으나 이러한 棟間隔의 考慮는 먼저 살펴본 太陽의 高度角이나 方位角에서 얻어진 그것과 近似點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일은 共同住居建物の 길이 方向의 配列長의 問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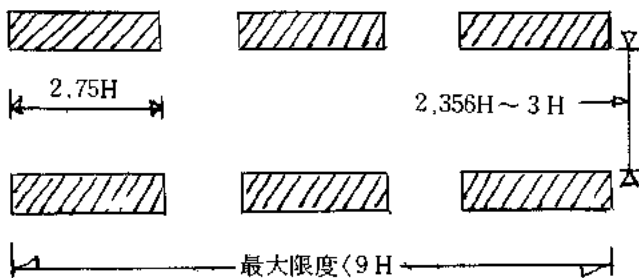
“기버트”는 그의 著書 “Town Design”에서 이에 關해 並列式으로 配列할때 그 길이가 지나치게 길며는

其 中間에 位置해 있는 住居單位는 心的으로 脱出될 수 없다는 压迫感을 받게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比例的 限界를 말하고 있다.



即 棟間隔을 建物높이의 3倍로 했을때 長方向側의 配列 最大 長이는 建物高의 9倍가 限界라는 것이다.

이러한 提案과 먼저 풀어 보았던 一棟의 建物길이와 建物높이와의 比 即,  $W=2.75H$ 를 關聯시켜보면 並列配列形式일때 配列의 最長은 3棟을 配置하는것이 限界이다.



並列로 配列하는 方法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겠으나 不得意 하다면 이와같은 程度의 限界는 計劃上에 考慮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3. 容積率 建폐율, 建物高, 建物幅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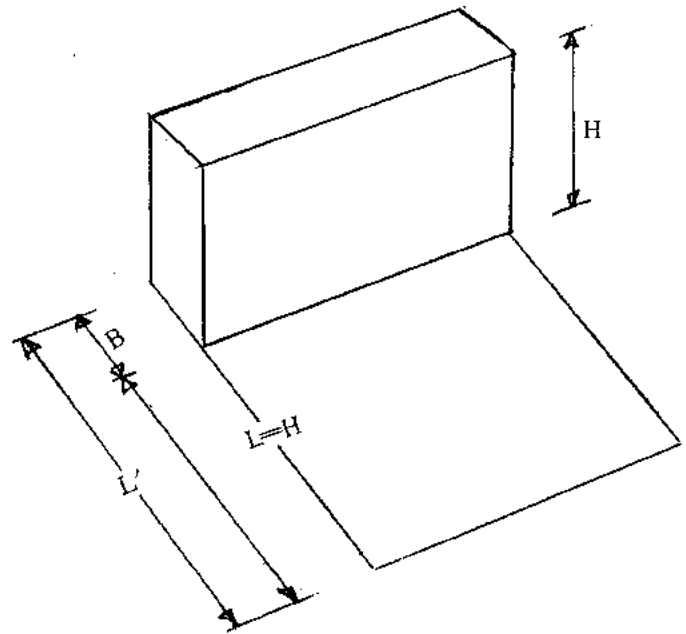
이에 關係서는 이번에는 現行法이나 條例에 定해진 條件에만 基本을 두고 檢討해 보려고하며 또 檢討의 規準은 団地内の 道路나 其他 共用施設用地를 除外한 純共同住居用 用地에만 極限시켜 살펴 보기로 한다.

서울 一圓의 建設된 共同住居建物の單位住居平面을 類型別로 추려보니 그 幅 (Depth)이 大體로 어느 範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찾아진다.

即 7m에서 12m程度의 幅 (Depth)이 大部分을 찾아하고 있다.

簡單하게 數式的 作業을 하며는 이 根源을 알 수가 있다.

假令 다음의 圖面과 같이 定했을때



$$F = \frac{B}{L} \times \frac{H}{3}$$

\* (F는 Floor Area Ratio即 F. A. R이다)

\*또 위의 公式은 層高를 3M로 했을 때이다.

現行條例대로 5層以上の 共同住居団地內에서 容積率 240% 即  $F=2.4$ 로하고 隣棟間隔은 施行令대로  $L=H$ 로 하며는

$$L' = H + B \text{ 이다.}$$

이때 建物の 幅 B는

$$B = \frac{7.2H}{H - 7.2} \text{ 로서}$$

建物 높이에 따라 變하게된다. 이를 層數에 따라서 追跡해보며는 다음과 같이 變한다.

| 層 數  | H (建物高) | B (建物幅) | 純建폐율   |
|------|---------|---------|--------|
| 6 層  | 18m     | 12m     | 40%    |
| 7 層  | 21m     | 10.95m  | 34%    |
| 8 層  | 24m     | 10.28m  | 29%    |
| 9 層  | 27m     | 9.81m   | 26.65% |
| 10 層 | 30m     | 9.47m   | 23.9 % |
| 12 層 | 36m     | 9 m     | 20%    |
| 15 層 | 45m     | 8.57m   | 15%    |
| 20 層 | 60m     | 8.18m   | 11%    |

이 追跡의 結果를 보면 現行 規制上 建物高 12層 36m, 建物幅 9m가 建폐率 20%가 되어 가장 適正한 것이며 12層以下는 建폐율의 限定線 20%를 超過하여 可能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다.

綜合的으로 現行條例와 施行令대로 容積率 240%, 建폐率 20%, L=H 일 때 層高 3M로 하려는

$$B = \frac{0.2H}{1-0.2} \text{ 이니}$$

各層別 建物幅의 値는 다음과 같게 된다.

|                   |                    |
|-------------------|--------------------|
| 6層 H=18m면 B=4.5m  | 12層 H=36m면 B=9m    |
| 7層 H=21m면 B=5.25m | 14層 H=42m면 B=10.5m |
| 8層 H=24m면 B=6m    | 16層 H=48m면 B=12m   |
| 9層 H=27m면 B=6.75m | 18層 H=54m면 B=13.5m |
| 10層 H=30m면 B=7.5m | 20層 H=60m면 B=15m   |

但 이 計算은 容積率과 建폐率의 適用을 純共同 住居 建築用地에만 하였을 때이다.

現在 規制하고 있는 容積率과 建폐率은 公有道路와 學校用垵地만을 除外한 全体 団地面積을 基準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위의 計算數值와는 다른 餘裕가 있는 까닭에 建物幅의 變化나 建物높이의 類型的 變化가 있게 마련인데 먼저 살펴본대로 建物幅이 大體로 7m에서 12m 사이의 範圍에 머무르고 있음은 그 根源을 以上の 追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좀더 具體的 作業은 密度와 關聯시켜서 容積率의 標準과 純密度와 總密度와의 比率等의 範圍가 分析된것에 日照條件에 따른 隣棟間격이나 建物높이 등이 代入되어 追跡되지 않으려는 안된다. 이는 後日로 미루려 한다.

## 公 告

會員任들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收錄코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특히 地方 특색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너도 마련되 있음을 알립니다. 會員諸位

# —環境計劃의 理論을 適用한—

## 南倉再開發地區에 對한 事例 研究

尹 定 璽

(서울대학교工大敎授)

### 附 記

本研究는 土協會誌 通卷 제79호, 75年 8月号에 發表되었던 拙稿 “都市設計 및 建築計劃과 市街地形成”의 理論을 適用, 서울 南倉再開發地區에 對한 事例研究를 試圖한 것으로, 더 詳細한 內容을 參照코자 하는 本은 同一論題의 本人報告書(서울工大研究報告)를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 1. 序 論

그나라의 国力과 文化는 都市에 의하여 代辯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都市를 形成하는 施設物중 특히 建築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莫重한 바가 있으며 이 모든 建築物은 모두가 우리들 建築家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国力과 文化를 左右하는 市街地形成의 着手係數를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建築家인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우리는 새삼 責任이 重且大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연 이와 같은 使命感을 認識하고 우리가 다루는 作品을 根本的으로 本質問題로 부터 糾明하고, 多角的으로 檢討하여 왔던가? 혹시 여러가지 與件과 時間에 쫓기어 옳다고 自己가 믿는 案을 貫徹하지 못하고 끝내 妥協的인 最終案에 만족해 버리지는 않았던가? 또는 손쉬운 在來의 慣習에 따라 何等 새로운 것도 없고 改善된 바도 없는 방식에 의하여 作品이 處理되지는 않았던가?

이 모두를 다 함께 深思熟考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摸索해 보고자 하는데 本研究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는 우리들 建築家, 都市計劃家, 造景家들이 成就할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한 途程인 것이다.

### 2. 都市設計와 建築計劃의 側面

#### 1. 建築物의 群構成과 機能, 構造, 美

建築物들이 모여서 群을 이루어 都市生活을 위한 하나의 空間을 形成할 때 建築的인 面보다는 都市設計의 面이 더욱 重要하게 된다. 都市는 서로 다른 패턴을 그 안에 갖고 있으며 이러한 都市의 패턴이란 道路와 空地, 그리고 建物로서 形成되는 幾何學的 形態를 말한다. 都市에 있어서 全体 建物群들이 주위의 要素들과 統一 및 調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都市의 패턴을 分析하여야 한다. Spreiregen은 都市패턴을 Grain과 Texture의 두가지 要素로 区分 分析하는 方法을 제시했는데(1) 여기서 前表는 都市地域內的 建物要素들의 섬세함이나 거침의 정도를 나타내고 後表는 이들 섬세한 要素와 거친 要素와의 混合의 정도를 나타낸다.

本研究에서 Study model로 택한 南倉地區는 南大門에서 南山으로 進入하는 大路邊에 길게 位置하고 있으며 이地區는 全般的으로 볼 때 建物의 老朽性和 諸般交通의 不便등으로 比較的 市內 中心部에 位置하면서도 市街地의 發展에서 疎外된 地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地區의 個個의 筆地들은 多數의 小規模筆地와 少數의 大規模 筆地로 分割되어 있고 또한 地區內에 여러가지 用途가 混在하고 있어서 土地利用面에 있어 不合理性을 안고 있다.

이제 本地區의 筆地의 規模別 分布, 用途別 建物延面積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現況調査결과 都市計劃的인 側面에서 온 南倉地區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① 土地利用의 面에서 볼 때 여러가지 用途가 混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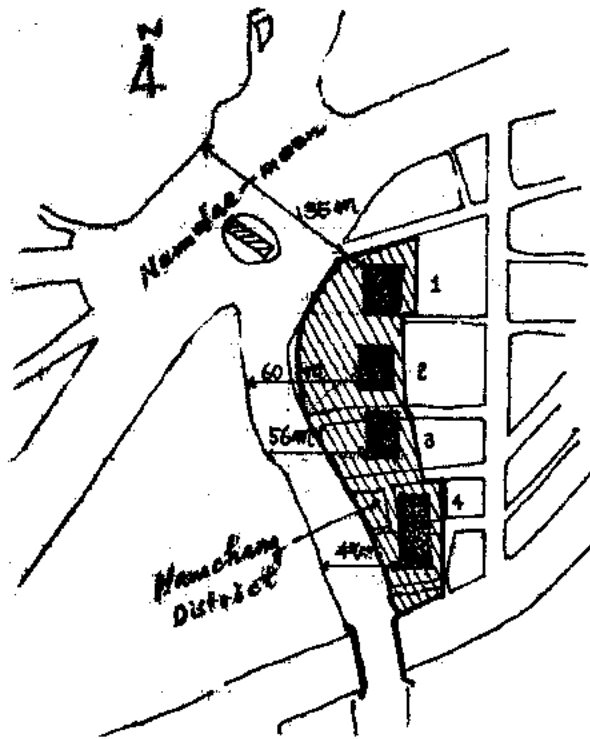


그림 1. 남창동지구의 위치도

도표 1. 垡地의 規模別 分布

| 구분<br>(평) | No. of lot<br>(each) | %     | 총연면적 (평) | %     |
|-----------|----------------------|-------|----------|-------|
| 0-10      | 18                   | 27.7  | 91.9     | 2.3   |
| 10-30     | 25                   | 38.5  | 503.3    | 5.1   |
| 30-50     | 6                    | 9.2   | 254.0    | 6.4   |
| 50-100    | 10                   | 15.4  | 702.6    | 17.7  |
| 100 이상    | 6                    | 9.2   | 2,421.7  | 58.4  |
| 합 계       | 65                   | 100.0 | 3,973.5  | 100.0 |

도표 2. 用途別 建物延面積

| 구 분             | 총건물면적 (평) | %     |
|-----------------|-----------|-------|
| 상업시설            | 1,455.0   | 46.9  |
| 음식점, 다방         | 144.2     | 4.6   |
| 위락시설            | -         | -     |
| 서비스시설           | 29.5      | 7.4   |
| Office Building | 109.2     | 3.6   |
| 병 원             | -         | -     |
| 여관 및 호텔         | 153.6     | 4.9   |
| 주거용             | 259.5     | 8.4   |
| 기 타 (공장·창고)     | 752.4     | 24.2  |
| 합 계             | 3,103.4   | 100.0 |

하여 地区性格의 純化가 必要하다.

② 交通이 不便하고 老朽된 建物이 많다.

③ 建葬率, 容積率이 너무 낮아서 既存建物 로서는 商業地區로서의 機能을 發揮하기가 不足하다.

④ 美觀上으로 볼 때 周辺地區의 퍼턴과 調和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解決하여 이地區가 機能을 回復하여 周圍의 都市地域과 均衡있는 發展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都市再開發이 不可避하다.

Fig 2는 建物의 用途別 分布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本地區計劃案에서는 그目標을 業務, 慰樂地區 로서의 性格을 浮刻시키고 土地利用率을 極大化 시키는 데 두어, 다음과 같은 計劃의 諸元을 構想하였다.

다음에는 間間人口의 收容可能數를 施設別로 予測해 본다.

本計劃案은 各개의 計劃建物을 Pedestrian deck로 連結하여 歩行의 편의와 流通體系의 圓滑로 機能의 相互連結이 용의하게 하였다. 從前의 낮은 容積率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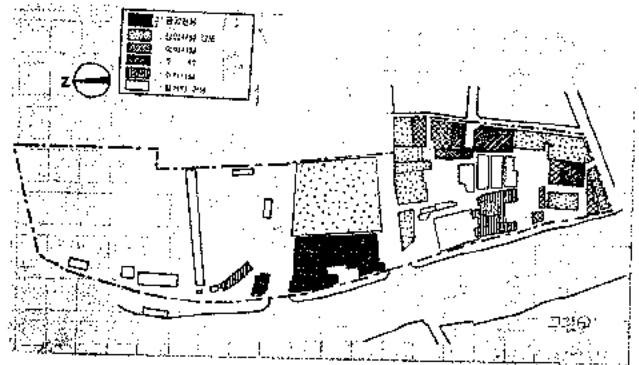


그림 2. 建物의 用途別 分布現況

표 3. 기준계획안

| No | Item  | 단위             | 면적     | No | Item                      | 단위             | 면적     |
|----|-------|----------------|--------|----|---------------------------|----------------|--------|
| 1  | 총구역면적 | m <sup>2</sup> | 12,874 | 5  | 위생시설                      | m <sup>2</sup> | 3,072  |
|    | 총건물대지 | "              | 9,491  |    | 숙박시설                      | "              | 9,633  |
|    | 주위의도로 | "              | 3,383  |    | 서비스시설                     | "              | 5,553  |
| 2  | 대지비율  | %              | 73.7   |    | 주차시설                      | "              | 12,555 |
|    | 도로비율  | %              | 26.3   |    | 전시시설                      | "              | 583    |
| 3  | 건물면적  | m <sup>2</sup> | 5,448  | 6  | Pedestrian Deck           | m <sup>2</sup> | 3,692  |
|    | 총건물면적 | "              | 74,731 | 7  | Building Coverage R (Net) | %              | 57.4   |
|    |       |                |        |    | (Gross)                   | %              | 42.3   |
| 4  | 상업시설  | m <sup>2</sup> | 3,145  | 8  | Floor space Index (Net)   | %              | 787    |
|    | 위락시설  | "              | 1,605  |    | (Gross)                   | %              | 580    |
|    | 오피스빌딩 | "              | 38,585 | 9  | Average story of Building | st.            | 13.7   |

- 1 - 신탁은행
- 2 - 은행영업부
- 3 - G. M. 코리아
- 4 - 임대사무소
- 5 - 아케이드
- 6 - 호 텔
- 7 - 귀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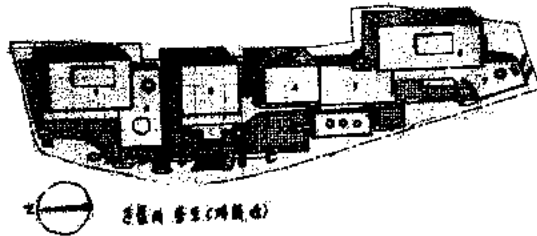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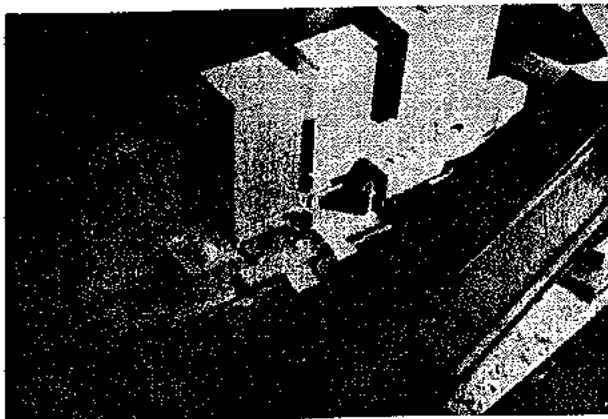


표 4. 시설별로 본 주간 인구의 수용 가능수

| item  | Floor area(m <sup>2</sup> ) | Unit (Area(m <sup>2</sup> )<br>per capita | Accommodation(p) |
|-------|-----------------------------|-------------------------------------------|------------------|
| 오피스   | 38,585                      | 9.27                                      | 4,162            |
| 상업시설  | 3,145                       | 10.3                                      | 305              |
| 위락시설  | 1,805                       | 10.0                                      | 161              |
| 위생시설  | 3,072                       | 18.3                                      | 168              |
| 숙박시설  | 9,633                       | 10.0                                      | 963              |
| 서비스시설 | 5,553                       | 11.0                                      | 505              |
| 주차시설  | 12,555                      | 100.0                                     | 125              |
| 전시시설  | 583                         | 100.0                                     | 6                |
| 합 계   | 74,731                      | -                                         | 6,395            |

교적 높은 建蔽率에 대하여, 充分한 Open space를確保하고, 장래 擴張性까지도 考慮하여, 計劃案에서는 純建蔽率을 57.4%로 비교적 낮게 策定하고, 容積率은 從前의 일곱배정도로 높였다.



계획안 모형

空間構成의 側面에서는 類似性에 의한 反復으로 機能的인 效果뿐 아니라 情緒的인 安定性을 追求했으며 rhythm 있는 建物の Elevation, 비슷한 量感의 mass 의 反復으로서, 補強해주는 것이 없이는 孤立되고 單純해지는 Landmark의 弱點에 連續性을 부여하여 立地상으로서나 建築的으로나 Landmark 의 性格을 강하게 浮刻시켜 보았다.

都市再開發이 그 地域住民의 福祉와 많은 都市人의 Amenity를 위한 것이 우선적이라면, 都市 Image의 物理的인 浮化에 力點을 두는 것도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2) 그러기에 開發前의 落后性과 不良性을 제거하고 群으로서 Megastructure를 채택하여 機能, 構造, 美의 어느 側面에서도 均衡을 잃지 않는 計劃案이 되어야 한다.

## 2. 外部空間의 構成과 그連續性

外部空間의 形成이란 問題는 建築이 비교적 발달한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眞正한 外部空間의 設計는 建築物에 의해 占有되는 空間뿐만 아니라, 建築物에 의해서 占有되지 않는 空間에 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外部空間의 設計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尺度는 공간의 糧格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큰 影響을 미친다. Ashihara Yoshinobu의 1:10理論, onethenth theory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尺度理論을 주장하고 있다. (4)

① 外部空間을 설계하는 데는 内部空間 尺度의 약 8~10배 정도의 尺度가 적당 하다.

② 外部空間의 설계에는 70~80ft의 modular unit가 有效 適切하며, 이것을 70ft기준 첫수단위方法(modular unit method)라고 한다.

즉, 제해력이 欠乏된 外部空間은 그性格이 모호해지거나 影響力이 制限을 받기 쉬우므로 70~80ft마다 리듬이나 質感 그리고 高低差등에 의해 形成되는 變化의 연속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단조로움을 감소시키고 活氣된 空間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南倉地區의 計劃案에서 外部空間構成을 살펴 보면 4개의 高層建物群의 低部를 연결하는 Pedestrian deck에 의해서 이들 外部空間은 步行人을 車道와 분리시켜 安全한 步行空間의 기능을 가지며 deck주변에 배치된 綠地들은 이들 空間에 다양한 變化를 주며 休息空間의 역할도 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경사지진형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긴 deck의 高低差는 空間의 變化의 連續性을 갖게 하여 단조로움을 없애고 活氣된 공간구성을 可能하게 하였다.

## 3. 都市計劃과 造景

都市의 物理的인 環境을 構造物, Open space, 自然

의 3가지 構成要素로 觀察할 때, 오늘날 제 1의 要素가 最大化되고 제 2의 要素가 最小化되며 제 3의 要素가 排除되는 傾向에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南倉地區 역시 首都 서울의 CBD로서 위의 범주에서 例外는 아니다. 즉 南倉地區에 現存하는 낡은 構造物, 一部 市場商街의 不潔性, Open space가 아닌 停車場과 버려진 空地등이 이 地區의 混雜하고 不美한 景觀을 이루고 있다. 本地區에 있는 2個의 停車場은 本地區의 景觀을 해치고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아스팔트의 사막이라고 일컫는 停車場은 실형 그것이 주변 建物の 高層部에 빛과 공기를 더해준다 하더라도 都市에 있어서 自由空地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都市景觀과 市民福祉를 위해 造景이란 不可缺의 要素이며, 造景形成을 위해서는, 지형에 의한 綠地의 高低變化, 樹木과 콘크리트의 反復, 무질서한 植栽가 아닌 計劃性 있는 庭園配置, 建物の 불출과 후퇴에 의한 造景과의 다양한 變化感의 연출등을 시도하는 方法이 매우 效果의 일 수 있다. 技術文明의 폐해와 그릇된 都市計劃으로 야기되는 都市環境의 파괴는 都市造景이란 側面에서 建築物, Open space, 自然의 三位一體가 되어 都市景觀의 人間化를 이루어 나가는 方向으로 轉換이 모색되어야 한다.

### 3. 環境의인 側面

#### 1. 日條條件, Orientation

本地區는 最下 1層에서 부터 最高 4層의 建築物들이 不規則하게 密集되어 있어 建物사이의 隣棟間隔의 협소와 地區內 消防道路간격의 협소등은 필연적으로 日照條件의 最惡制況을 露呈하고 있다. 太陽運行 軌跡도에 의한 冬至때의 終日陰影圖에서 보면 현재 密集되어 있는 建物간의 日照狀態는 거의 몇 棟의 建物を 제외한 대부분의 建물이 그 南쪽 建物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는 상태이다. 立面圖상으로도 이러한 現象은 여전하여 最下層은 冬期에 終日 太陽에너지의 惠沢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 2. 通風, Ventilation

本地區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地方의 年間 平均風向을 보면, 초여름의 平均風向은 우리나라 中部地方 固有의 Fohn 現象으로 대략 NE이며, 夏期 主風向은 S W이다. 이에 대하여 冬期の 主風向은 WNW인바 바람직한 通風計劃의 原理는 가능한 한 最大의 夏節風을 利用할 수 있음과 동시에 冬期季節風의 影響을 最小化시켜 夏節의 快適性과 冬節의 安樂性을 함께 추구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本地區의 通風現況의 不良狀態는 日照의 最惡狀態와 함께 本地區에 거주하는 市民들의 衛生問題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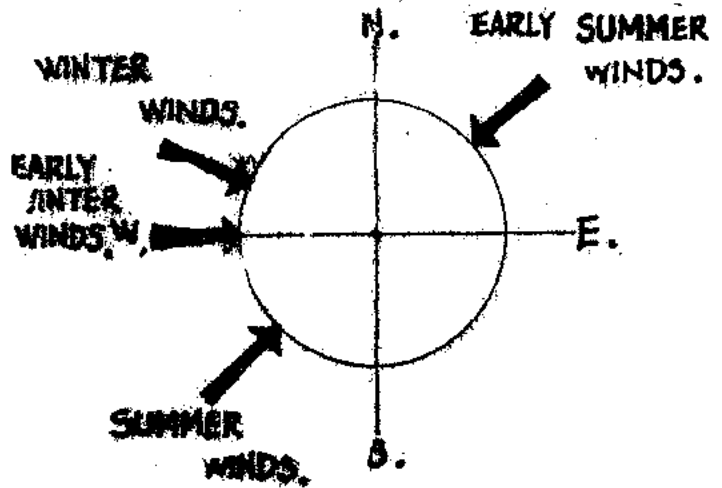


그림 5. 서울地域의 風向

협하는 주요한 Hazard가 될것인바, 여기에 本地區 開發을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要件이 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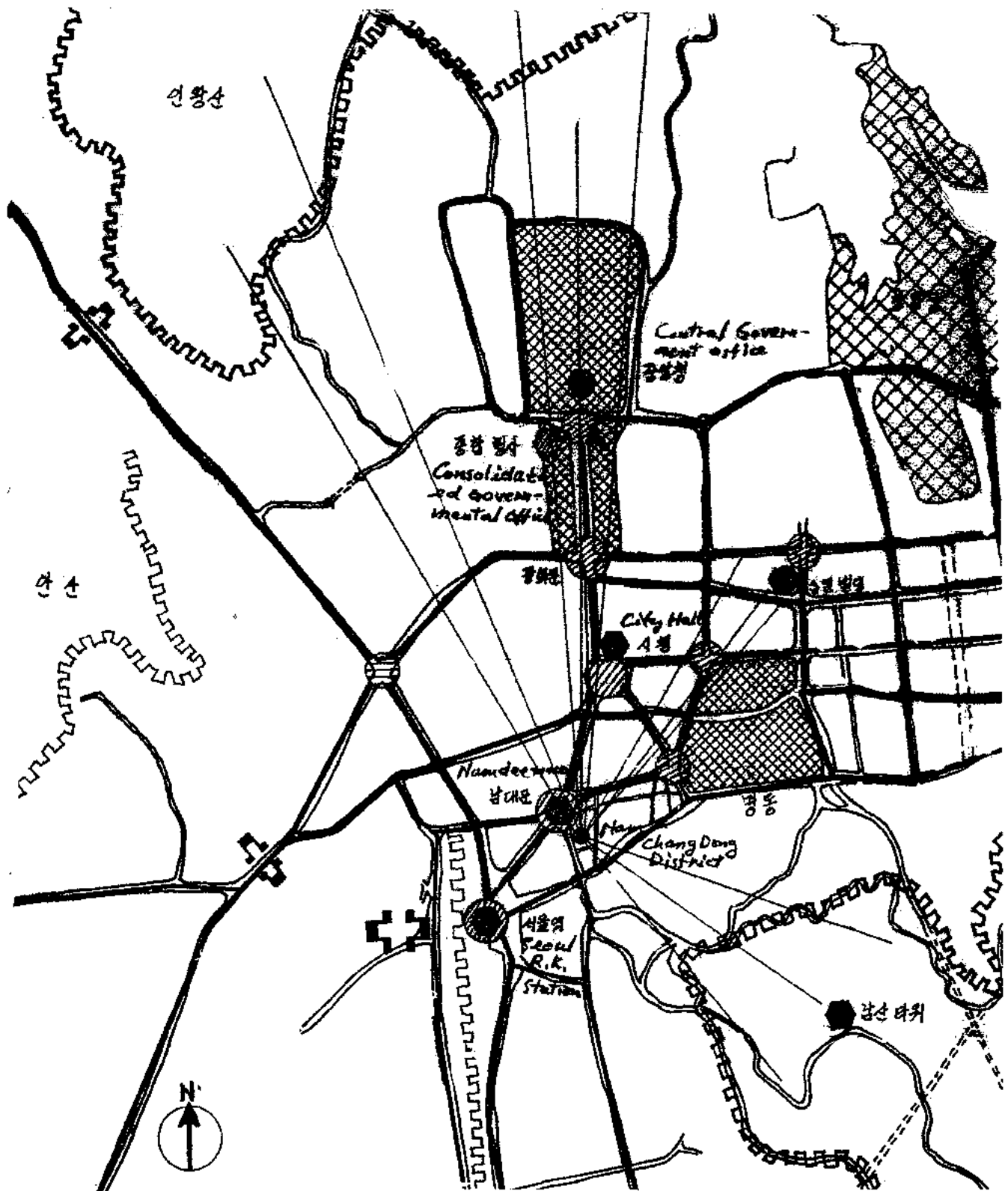
#### 3. 展望, View

由緒 깊은 南大門과 德壽宮, 光化門 一帶를 北으로 하고 있는 本地區는 서울의 市民公園인 南山과 멀리 漢江을 南으로 하고 있어 잘 計劃되지만 하면 最良의 展望條件을 利用할 수 있는 有利한 地理的, 地形的 位置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低層 건물들의 密集되어 있어 複雜한 市場街를 이루며, 高層建物들 사이에 夾雜되어 있는 그現狀은 가히 아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여기에 또한 本研究의 計劃案이 試圖하는 바 根本的 展望問題 解決이 必要한 것이다. 本地區로 부터 外部에 대한 展望狀態는 現況으로 봐서 不良하거나 地區外部로 부터 보이는 本地區의 外觀 역시 首都 서울의 中心部에 대한 感覺을 흐리게 하고 있는 實情이다.

本地區는, 가까운 南大門, 南山, 市庁等, 멀리는 北岳山, 仁旺山, 漢江등의 Land-mark와 서울驛 廣場, 南大門 로터리, 市庁廣場등의 Node를 가지며, 德壽宮, 秘苑, 景福宮등 綠地地帶와 栗啓路 북부 住宅地區, 서울驛 鐵道地區, 明洞 商業地區등의 District, 世宗路, 南大門路등의 Pathway를 가지며, 北岳, 仁旺, 孝昌地區등의 Edeg를 가지는 本地區는 이와 같은 여러 要素들이 複合적으로 存在하는 都市 CBD이면서도 開發不進으로 인하여 그 뚜렷한 性格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都市內의 都市計劃上 空間地帶의 現象을 示顯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상의 5가지 都市 Image 構成要素는 Kev in Lynch에 의해 提示된바 있다. (2)





|  |                |  |                |
|--|----------------|--|----------------|
|  | MAJOR LANDMARK |  | MAJOR EDGE     |
|  | MINOR LANDMARK |  | MINOR EDGE     |
|  | MAJOR NODE     |  | MAJOR DISTRICT |
|  | MINOR NODE     |  | MINOR DISTRICT |
|  | MAJOR PATH     |  | GATEWAYS       |

< 주위 환경 요소 >

이상의 個別的이고 靜的인 Image에 대한 問題와 아울러 動的이고 Sequential한 Image의 問題도 看過할 수 없다. 都市全體의 一部로서 靜지 또는 이동하는 각각의 視点에서 파악되는 本地区에 대한 Vista는 特徵이 없고 個性이 없는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어 인접한 諸都市構成要素들간의 不調和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缺陷을 解決하기 위해서 本研究의 計劃案은 이상의 諸要素들을 分析 評價하여 보다 바람직한 解決策의 모색에 힘썼으며 따라서 上記한 建物形態의 配置方法과 모형에 의한 分析으로 既存의 展望不在의 現況에 대한 좋은 解答을 구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環境의인 側面에 포함되는 大氣汚染 및 騒音問題, 綠地問題, 防火問題등이 있으나 紙面관계 상 생략키로 한다.

#### 4. 社會學的인 側面

##### 1. 靑少年의 退弊와 犯罪發生, Juvenile Delinque

本地区가 都市再開發地區이며, 巨大都市 서울의 CBD에 있느니 만큼, 世界的인 巨大都市들이 갖고 있는 社會病理를 本地区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Stanford大學의 心理學的인 P. G. Zimbardo는 「都市의 壓力이 美國人들을 잠재적인 暗殺者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단정했다. 미국에 있어서의 犯罪 통계에 의하면 都市地域의 犯罪率은 農村地域의 약 5배가량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暴力犯罪率, 殺人, 強간등과 같은 犯罪은 실재의 人口家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폭력과 강도는 특히 都市의 高密度地域에서 현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本地区 역시 都市내의 落後된 地區性格에 의해 다른 地域보다도 犯罪發生이 빈번한 地域이다. 本地区 주변의 좋지 못한 環境때문에 不良靑少年들이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2. 社會福祉의 側面, Public Welfare

都市社會에서의 社會福祉는 특히 社會學的 側面에서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그都市의 市民들이 요구하는 Social Welfare는 市政當局이 施策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主要한 指標가 된다. 社會福祉度의 電要指標라는 것은 주로 Health, Safety, Convenience와 Amenity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人口集中이 심하고 各種 經濟活動이 증폭되는 都市社會에서는 특히 이들 福祉度가 강력히 요구되게 된다. 어찌하면 都市再開發의 指定과 그事業施行도 결국은 이같은 福祉度가 미흡한 生活環境을 더 나은 環境으로 바꾸어 놓는 데 그意義가 있다 할 것이다.

本地区의 경우 이같은 社會福祉面에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까닭에 現在狀態를 再開發하여 再開發施行후

에는 福祉度의 最小值를 보장하는 Ciuil minimum 政策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이런 政策具現은 주로 法的規制를 수반해야 한다. (3)

Attitude Survey에 의하여 Amenity에 대한 十環境, 一환경調査에서 否定的反應과 肯定的反應을 予見할 수 있는데 否定的反應이 강하면 그환경을 再開發하여 大多數의 滿足을 얻는 方向으로 解決策을 찾아 代案을 제시하므로써 一般市民의 承認을 얻는 修正案이 발견되어야 한다.

##### 3. 人口增加의 側面, Population Explosion

人口爆發과 急激한 都市化現象은 오늘날 巨帶都市를 발생케 했고, 地域的인 都市拡散이 進行되고 있다. (15)

人間은 都市가 없는 國土領域이란 것을 내세울 수도 없고, 이들 領域이 結束될 수 있는 行政中心 없이 또 國土의 衰退와 人口減少를 방지할 수 있는 中心없이 는 國家도 成立될 수가 없다.

이와같이 人口의 複合的이고 안전치 못한 都市集合體에의 급진적集中은, 都市에서는 勞働이 함께 흐르며 또 많은 수의 市場이 성립되므로 더 가증되는 土地상의, 交通상의 問題 그리고 騒音障礙, 住居不足과 같은 環境問題와 기타 여러가지의 社會福祉상의 다른 問題들이 야기되게 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都市再開發에 있어서 人口學的 側面이란 증가되는 都市人口의 收容對象으로서도 再開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論議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本地区와 같이 서울 CBD내의 商業中心인 경우, 서울의 人口增加와 더불어 産業構造의 개편으로 인하여 3차 産業機能에로의 轉移에 따라, 管理中枢機能, 販賣機能, 金融保險機能, 公共서비스 機能등의 擴充으로 이들을 포용해야할 바로 当該地域에 南倉洞이 위치해 있느니 만큼, 시급한 都市再開發과 再整備없이 는 늘어나는 画間施設利用人口를 수용하기란 힘든다고 判斷된다.

計劃에 의한 將來 各業所별 從業員수는 前記한 Table 4와 같다.

하물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급격한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이에 따르는 都市人口集中을 予見할 때 都市內 再開發地區를 開發하므로써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이라는 Confliation of goals를 융화시키고 오히려 再開發 후의 새로운 環境이 經濟成長이나 環境保全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本地区에 대한 再開發의 盤旋性은 摸索될 수 있는 것이다.

#### 5. 經濟的인 側面

##### 1. 經濟成長과 環境惡化

Natural systems and Economic systems는 오늘

날 지구상의 2大過程을 形成하고 있다. (14) 이중 經濟系는 Techrological innovation과 더불어 Industrial Growth에 의해 눈부시게 發展되어 왔다. 더우기 都市에의 人口集中은 이런 發展을 代昇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經濟成長에 반하여 自然系는 Ecological system으로서, 크게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 왔다. 都市내의 여러가지 環境條件이 退化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중에서도 Blighted Area나 再開發地區가 발생하는 주요 原因을 形成하고 있다.

#### 6. 建築 및 都市計劃 法規的인 側面

本地区는 都市計劃상 用途地域에 의하면 商業地域 및 防火地區에 해당하며, 本計劃案에서도 이러한 地域, 地區에 따르는 建築規制를, 建蔽率, 容積率, 堡

地面積의 最小限度와 높이制限에 맞추어 作成하였다. 都市計劃法상의 再開發事業에 관한 母性(제31조~53조), 施行令(제29조~41조) 등의 規定을 감안 검토하였다.

#### 7. 結 論

이상에서 살핀 市待地形形成의 各種 側面은 우리들 都市計劃家나 建築家로 하여금 當惑한 立物에 서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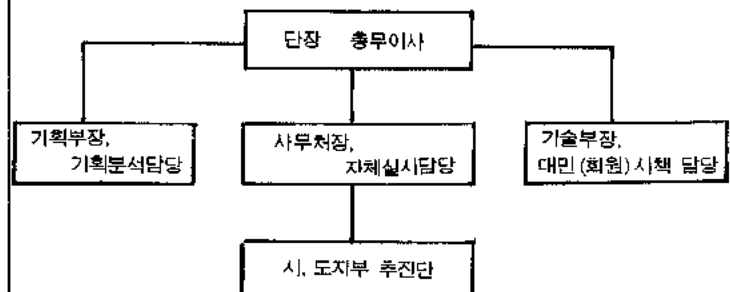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使命이 都市形成과 그의 Superstructure인 建築物計劃, 設計, 施工에 있느니 만큼, 이상의 여러 側面을 理解하기에 힘쓰는 한편, 이러한 知識을 적극적으로 活用하도록 노력함이 맞당하다 할 것이다.

###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 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 협회 실시단 구성



## 都 市

崔 昌 奎

現代에 와서 都市는 그 國家나 民族의 政治, 文化, 經濟의 中樞가 되어있고 그외의 産業, 交通의 中心과 同時에 國民의 大部分의 生活基盤의 “場”이 되었다.

歷史적으로 都市의 生成과 變遷의 過程을 더듬어 보면 더욱 確實히 알 수가 있다. 이러하듯 都市는 살아있는 生物과도 같고 “앙리-미쇼”의 作品「都市」를 보면 무슨 昆蟲을 보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는 팔·다리는 물론 触角에서 眼球·內臟에서 꼬리까지도 있다. 畫家가 본 도시의 “IMAGE”라 해도 너무도 正確을 찌른 觀察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본다면 生物은 반드시 죽는것이고 人間의 歷史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도시가 죽어갔다. “바비론” “古代로마” “폼페이” “히로시마(広島)”등은 가까운 예이고 멀리는 “잉카(INCA)” “마야(MAYA)” “시에나(SIENA)” 등이 될 것이다.

無心코 바라보면 不死身같이 보이는 都市가 頻死의 病者같이 痙攣하며 신음하는 모양은 想象하고도 남음이 있다.

都市가 죽어간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自然的인건 人爲的인건 生物이 老衰하여 죽어가듯 或은 重患으로 죽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自然的으로는 “폼페이”같이 人爲的으로는 “히로시마”가 가장 摘格한 例가 될 것이다.

제 2 次대전 當時 地球上의 數 많은 都市가 破壞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베를린” “레링그라드” “트레스텐” “東京” 등은 完全한 死地에서 다시 蘇生된 都市들이다. 이처럼 都市는 生物과 같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蘇生하기도 한다.

生物이라면 움직이고 呼吸하고 成長 繁殖을 한다.

이러한 生物的인 都市속에 生物인 人間이 살고 있다. 따라서 都市가 死滅하면 人間도 死滅하고 그 國家나 民族도 滅亡하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現代의 都市를 詳細히 살펴보면 于先 數百萬의 人口가 密集해 있다. 이 人口들이 各樣各색의 格差와 立地條件을 가지고 있다. 健康, 貧富, 教養, 性格, 思想, 宗教등의 多樣한 格差와 複雜한 生態가 混沌되어 얽히고 있다. 그 중에서 貧富의 格差는 두드러져 豪華村, 歡樂街, 슬람가(Slum)가 생기기 마련이고 슬람가

의 汚毒은 都市全体에 좋지못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人間들은 文化의 發展이니 科學의 進步니 國家와 民族의 守護라는 口호아래 莫大한 資本을 投資하면서도 病든 生物의 슬람가를 救濟는 生覺저도 않고 있다. 月世界로 보내는 “로케트”에 投資되는 資本의 몇十分의 一만으로서도 能히 많은 都市의 슬람을 救할 수 있을 것이다.

近世에 와서 가장 問題가 되고있는 公害는 따지고 보면 그 原菌이 人間의 消費性인데 많은 人間이 살고 있는 都市야말로 公害의 温床인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公害는 人間의 生命을 危脅하고 있다. 都市에는 物理的 公害뿐만 아니라 精神的 公害까지도 人間을 危地에 몰아넣고 있다. 人間의 生命이 危險한 마당에 무슨무슨 發展이며 文化파위가 그 意味를 가질 수 있겠는가? 結局은 人間의 所有慾과 消費性이 公害를 낳고 그 公害가 生命을 危脅한다면 人間의 慾心이 自身의 生命을 위태롭게 한것이 된 것이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어떤 自然科學者의 말을 빌리면 “人間이 영원히 地球上에 살아 남으려면 植物에서 昆蟲, 微生物에 이르기까지 모든 生物들과 共生해야하고 自身의 慾望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人間 爲主의 立場에서 모든 生物을 헤치고 自然을 破壞하고 便利와 安逸을 爲한 消費와 所有慾에 血眼이 되고 있으니 오래 살아 남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都市計劃家들의 立場에서 보면 真正한 意味의 都市計劃은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 理由는 土地 地上 所有權으로 因한 保償費가 建設費의 몇十倍나 되니 經濟的인 面에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不得已 計劃道路들은 本意아니게 公有地나 國有地나 혹은 河川 등의 위로 計劃할 수 밖에 없는것이 現在의 實情이라 한다. 예를들어 수년전 南北赤十字會談에 遂行하여 平壤을 다녀온 新聞記者들의 報道에 依하면 平壤市의 都市計劃이 直線의으로 廣闊하게 되어있다고하나 그것은 北韓의 政治體制에서 地上所有權이 없으므로 할수있었던 것이었고 萬一 北韓에도 地上所有權이 있다면 또는 唯一思想으로 強制로라도 할 수 있는 權力體系가 없었

다면 제 아무리 그들이라도 그런 都市計劃을 할 수 없었을 것이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 한편 政府 組織에 의한 中央集權制가 自然的으로 求心的 都市計劃에 作用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고 理想的인 都市는 遠心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歷史上 體驗이나 實例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不得이 求心的 都市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求心的 都市이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우리들의 에지를 다하여 明快性, 淸澄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自然의 導入이라는 問題가 일어나고 있지만 古代의 模範的인 遠心的 都市에서는 都市가 自然과 混合一體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도시의 自然導入이라는 方法은 물과 나무를 도시에 導入하는 것은 勿論이지만 廣闊한 空間과 草原等도 必要하게 되는 것이며 “에이커·파크(acre park)”가 都市計劃上 必然적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암스테르담”의 市內에 從橫으로 흐르고 있는 많은 運河들과 숲이 우거진 廣大한 公園들은 都市에 自然導入을 시킨 좋은 例가 될 것이다. 北京은 큰 人工湖水(中南海)와 鬱蒼한 숲으로 建物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自然과 一體가 된 都市라고 할 수 있다.

古代 東西의 哲人들 中에서도 中國의 老子와 希臘의 “아리스토텔레스”는 都市問題에 對하여 가장 많은 觀心과 名言을 남긴 사람들이다.

老子는 말하기를 「섭초부터 規則的인 “힘”이 萬物을 支配하고 있다. 모든 生成의 根源에 이 規則的인 “힘”이 作用하고 있고 變化中 中斷도 感覺의 混昧도 없이 오직 그것만이 모든 것의 根源이고 變함도 없다. 規則的인 “힘”... 그것은 모든 生成의 原初的인 衝動이고 生의 原型이다. 循環과 輪廻는 終末없는 無限으로 通한다」라고 말했다. 現代 都市計劃學의 規範이라고도 할 수 있는 理論이다. 輪廻는 佛敎의 思想과도 相通하는바 있고 即 人間의 生命에 關한 永劫으로 通하는 哲學이고 循環은 無限으로 通하는 오직 하나의 方法이요 手段이다. 幾何學에서 循環의 圓周위에서는 始點도 終點도 없다. 都市에 있어서도 이 理論은 適用된다.

循環道路를 비롯하여 給·排水線, 通信線 등이 이 循環의 原則에 依해 施設되어야만 生物體라고 보는 都市의 滅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이 都市에 모여드는 것은 살기 爲해서 보다 즐기 爲해서 모여든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어쩌면 機械文明과 科學文明의 現代都市에서 레저産業이 興盛해가는 것을 予言한 셈이 된다. 現代는 레저施設을 새로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보면 都市形成 始初부터 이 즐길 수 있는 施設도 同時에 形成되어 区分할 수 없을 정도로 一體가 되어야 한다는 理論인 것이고 그 裏面에는 人間의 인정이 必要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새가 아침에 우는 것은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아니고 氣分이 좋아서 우는 것만도 아니다. 自身이 즐겁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고” “해리-폴든”은 말하였다. 都市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과 즐겁다는 것과 일한다는 것과 休息한다는 것이 다같이 이루어져야만 真正한 都市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바와 같이 都市에 對한 歷史와 要素, 意見과 希望 以外에 더욱 現實的이고 重要한 問題는 人口集中問題일 것이다. 人口에 關한 問題는 비단 都市에 局限된 問題는 아니지만 醫學의 發達과 各種 生産力의 增大로 因한 生活의 潤沢으로 人間 平均壽命의 延長은 人口增加를 더욱 加速化시켜 産兒制限이나 自然死亡 또는 人爲死亡의 數를 陵駕하여 幾何學的으로 膨脹하여 結局은 人間生活의 絶對面積인 지구表面積을 뒤덮을 時期가 予測되는바 아무리 政策의 으로나 醫學的으로 이를 抑制하려해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더우기 이 莫大한 數의 人口의 都市集中 問題는 人類 生存의 見地에 가장 火急한 問題이지만 人間은 끝까지 人間이기에 人間의 편에 서는 것이고 보면 自然의 攝理에 期待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모든 政治家들이 이 問題에 對한 政策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大衆의 呼応이 없다는 것이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이다.

生과死, 反復과 循環의 函數關係는 아직껏 人間들이 解明을 못하고 있다.

都市空間의 創造와 育成은 人間들의 이에 대한 “이미지”에 달려있다. 막상 機能과 美觀이 相互 競合하는 現代都市의 裏面에서 孤獨하고 強靱한 人間의 知慧와 像想力이 이 問題의 解決을 試圖하고 있을뿐이다. 都市를 形成하고 있는 建築의 立場도 이와 同一한 條件下에 있다. 人間과 建築, 建築과 都市, 都市와 지구, 地球와 宇宙의 相互關係를 解明하고 理解하기 前에는 人間의 生命을 無限으로 連結시키는 方途는 遼延하다.

우리는 諸般 社會問題보다도 이 문제에 關心을 가져야만 하겠다. 關心을 갖는다는 것은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建築家와 都市計劃家들은 이 한가닥 可能性을 爲하여 默默地 人間의 住空間을 試圖하고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口頭禪같이 發表되는 發展에 對해 無條件 反對하는 것이 아니고 無條件 發展에 反對하는 것이다.

理想的 都市의 構成要素는 上記한바와 같이 地上所有權의 解放, 遠心的體系, 自然導入, 즐길 수 있는 空間, 人間的인 造型, 人口集中의 抑制 等等...이므로 이에 對한 解決方案을 研究 實踐함과 同時에 人間, 建築, 都市, 地球의 相互關係를 理解하는 새로운 未來學의 분야를 개척하여 並行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会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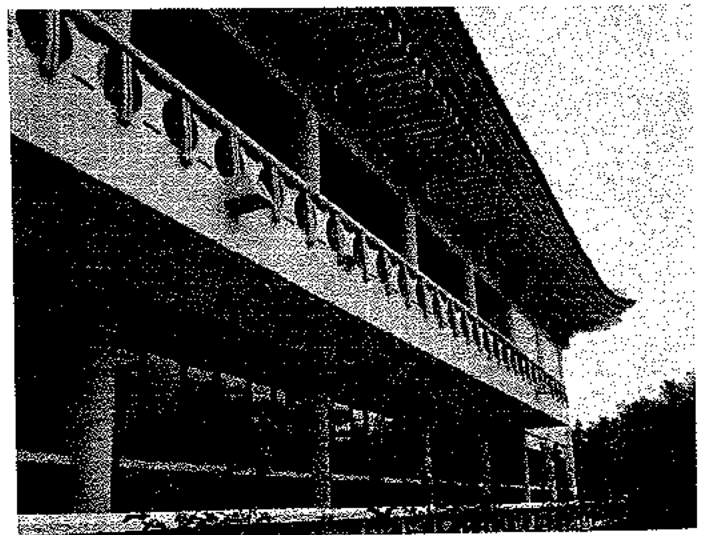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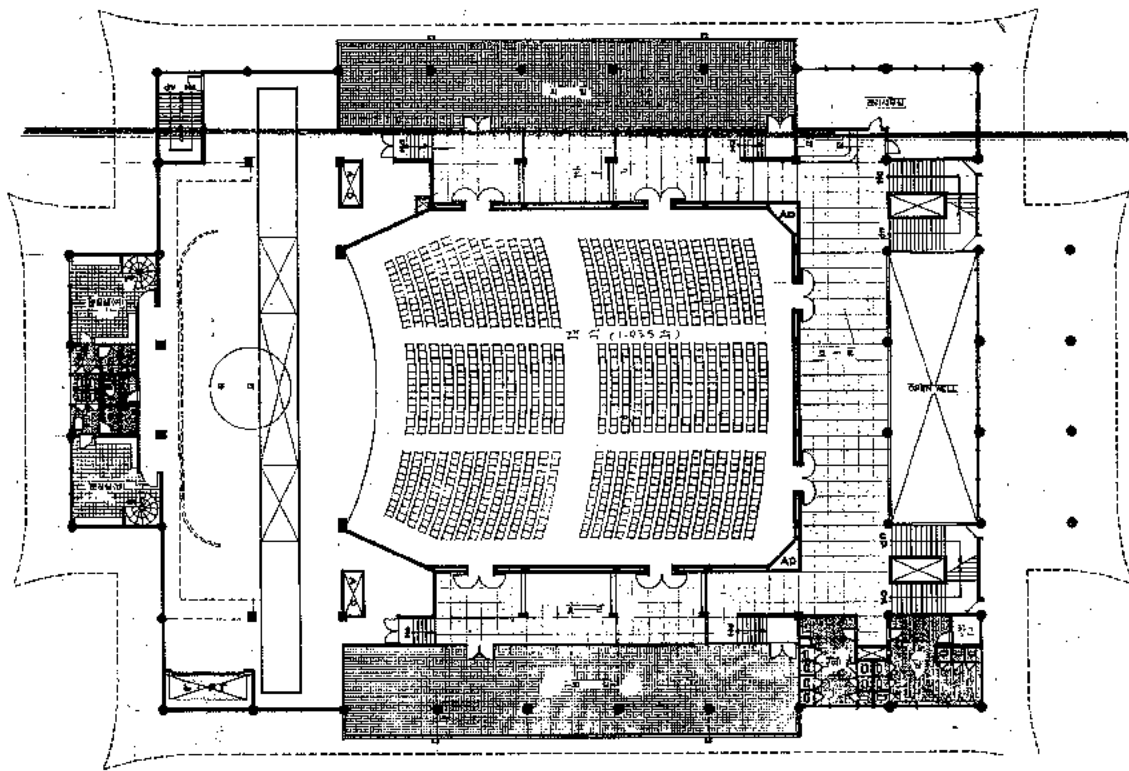
건물 전경

## 어린이회관 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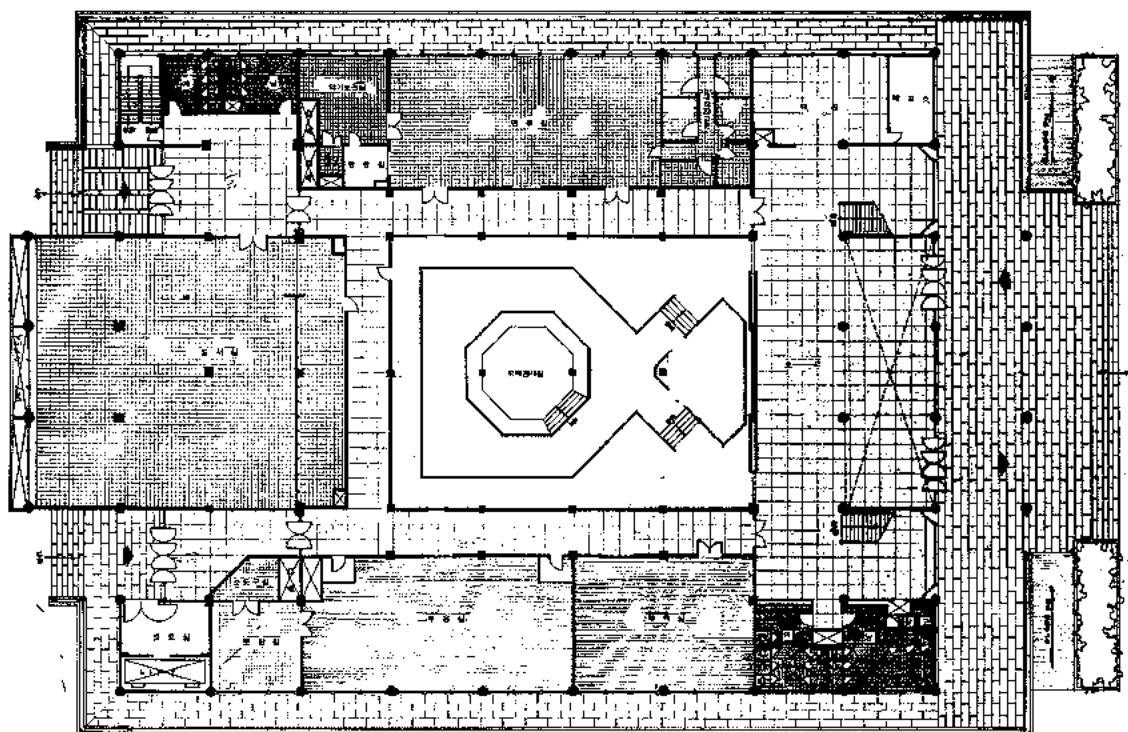
설 계 : 김인석 (우선건축연구소) 대표  
 구 조 : 마춘경  
 전 기 : 이영수  
 기 계 : 유동열  
 시 공 : 현대건축주식회사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어린이회관내  
 대지면적 : 31,238M<sup>2</sup>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개와지붕  
 건물면적 : 지하층 300.45M<sup>2</sup>  
           1 층층 2,486.45M<sup>2</sup>  
           2 층 2,030.45M<sup>2</sup>  
           3 층 332.50M<sup>2</sup>  
           계 5,207.85M<sup>2</sup>



측면회랑과 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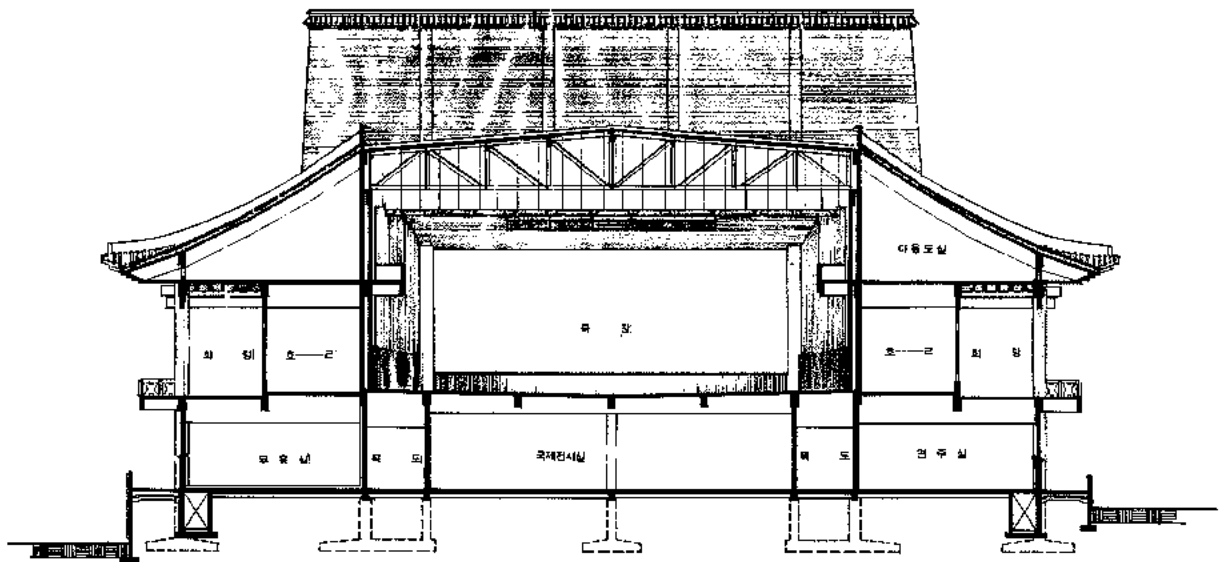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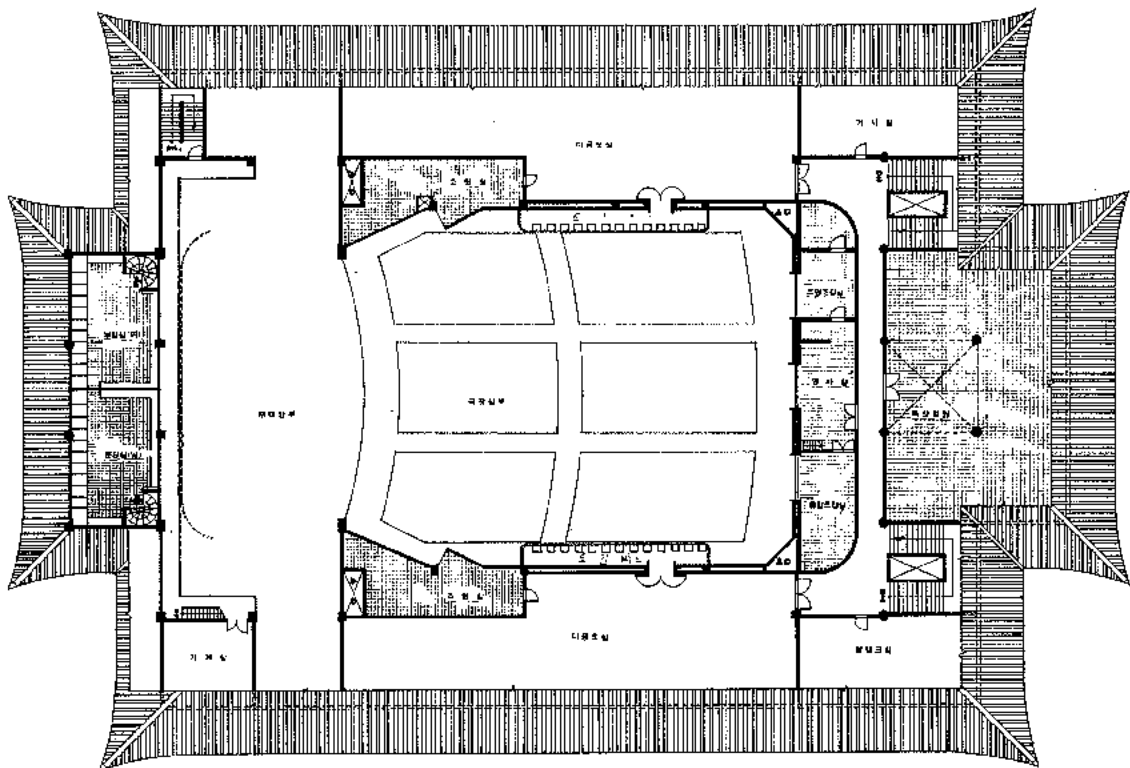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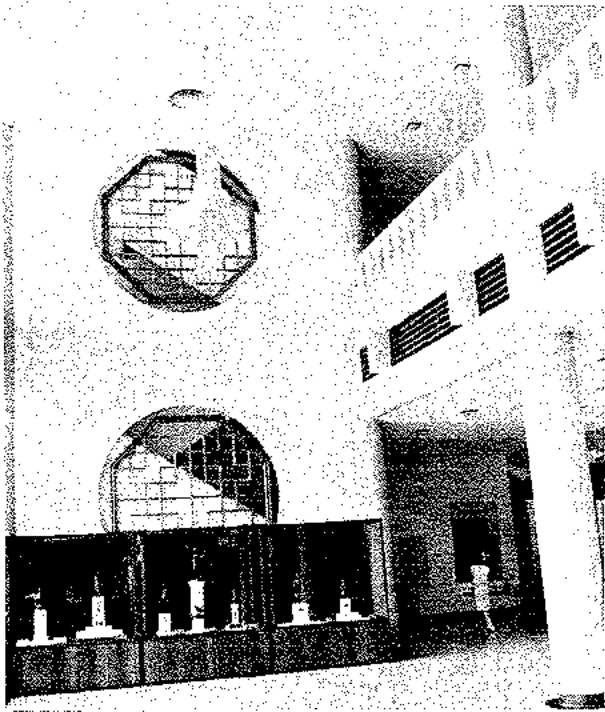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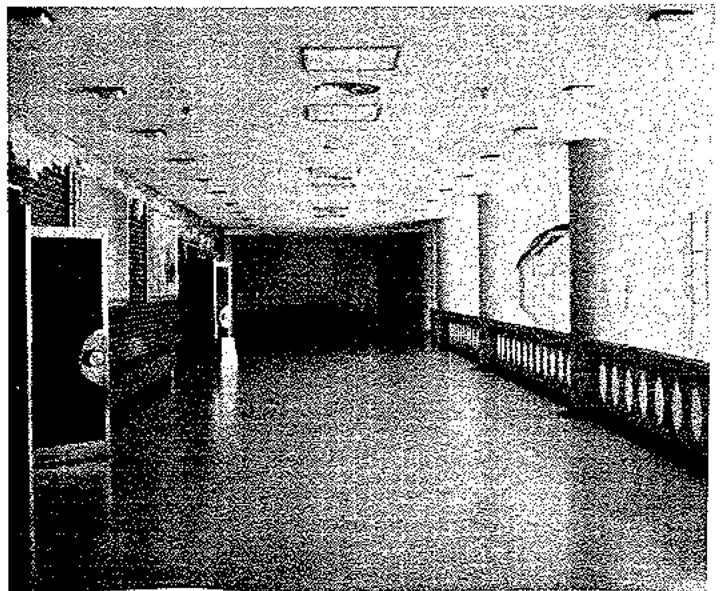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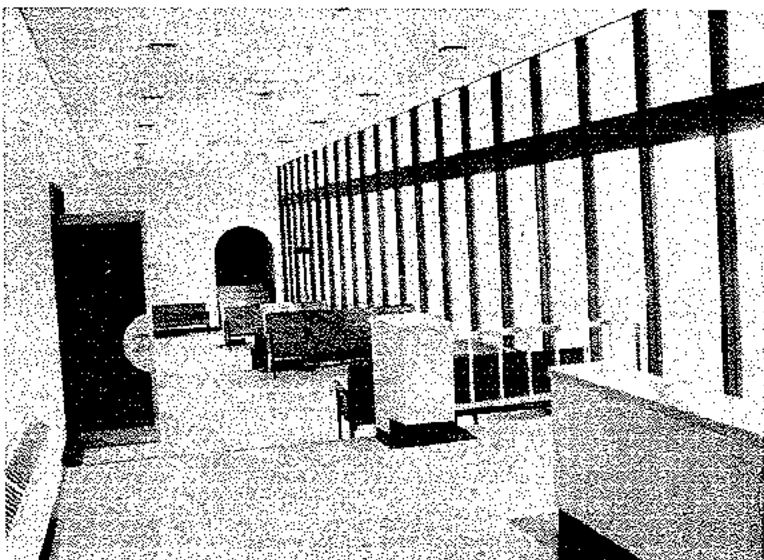
3층평면도



주현과 홀



2층정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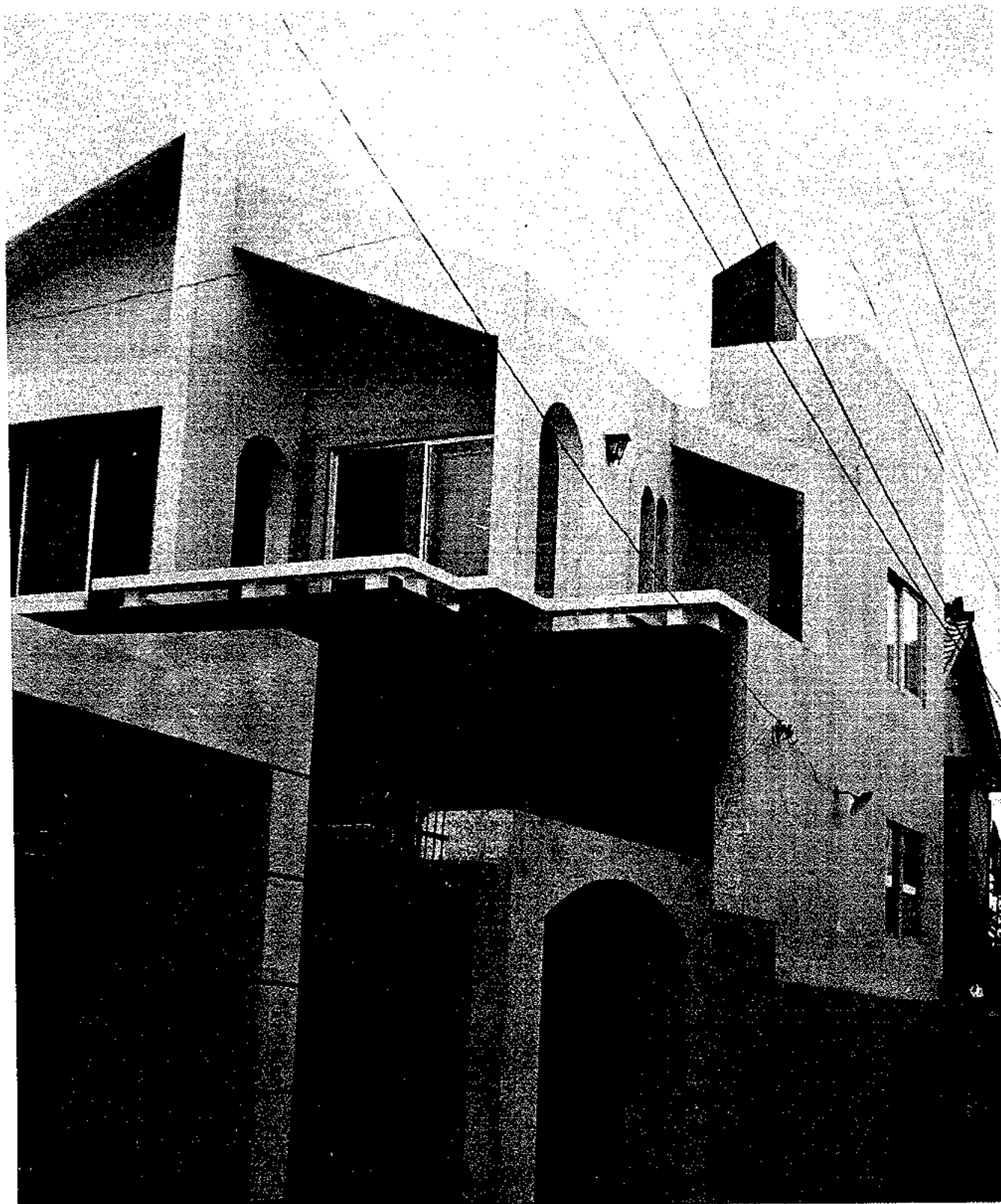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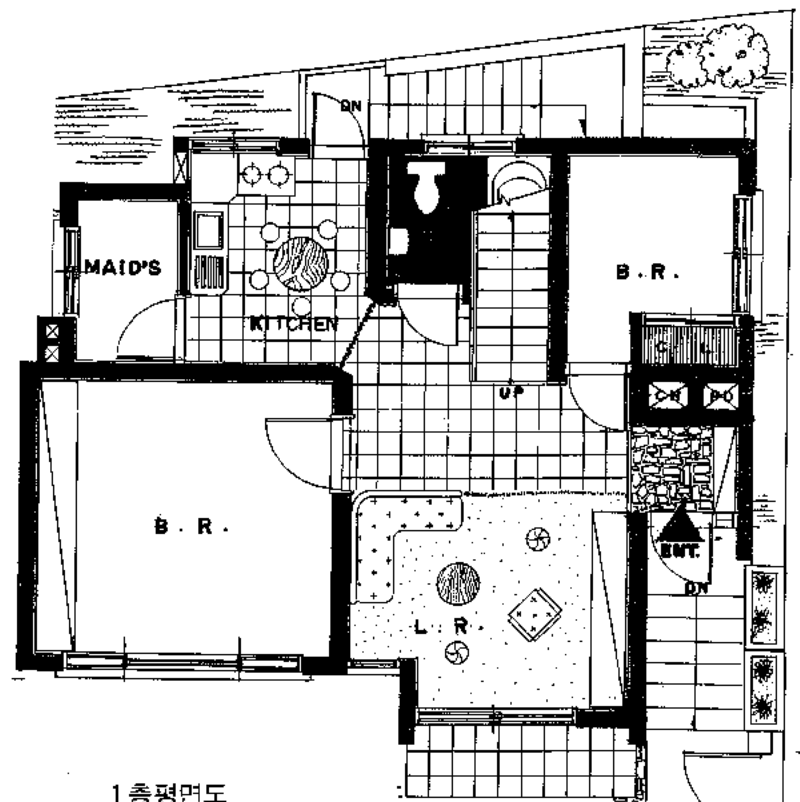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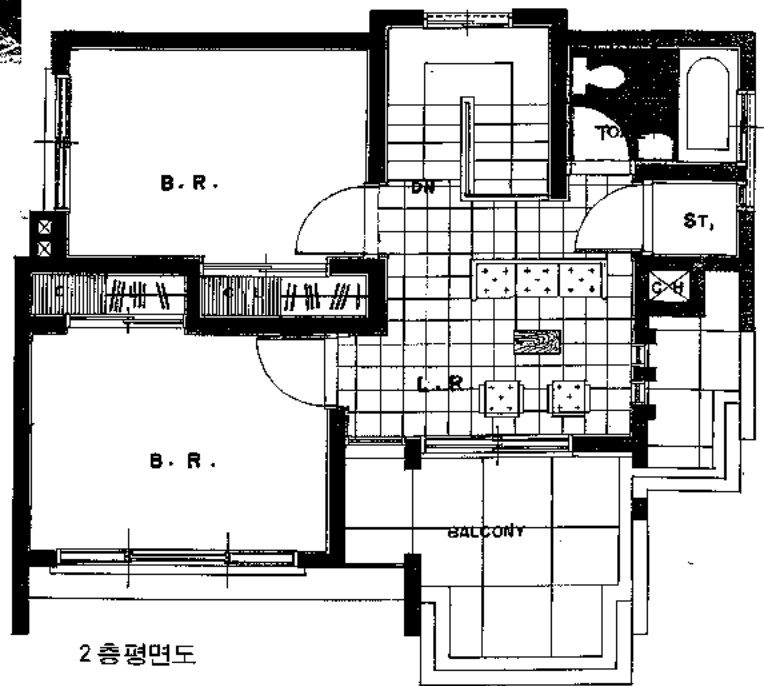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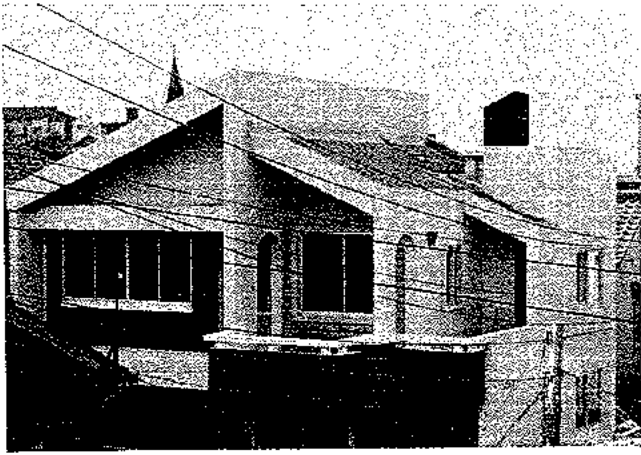
극장 양측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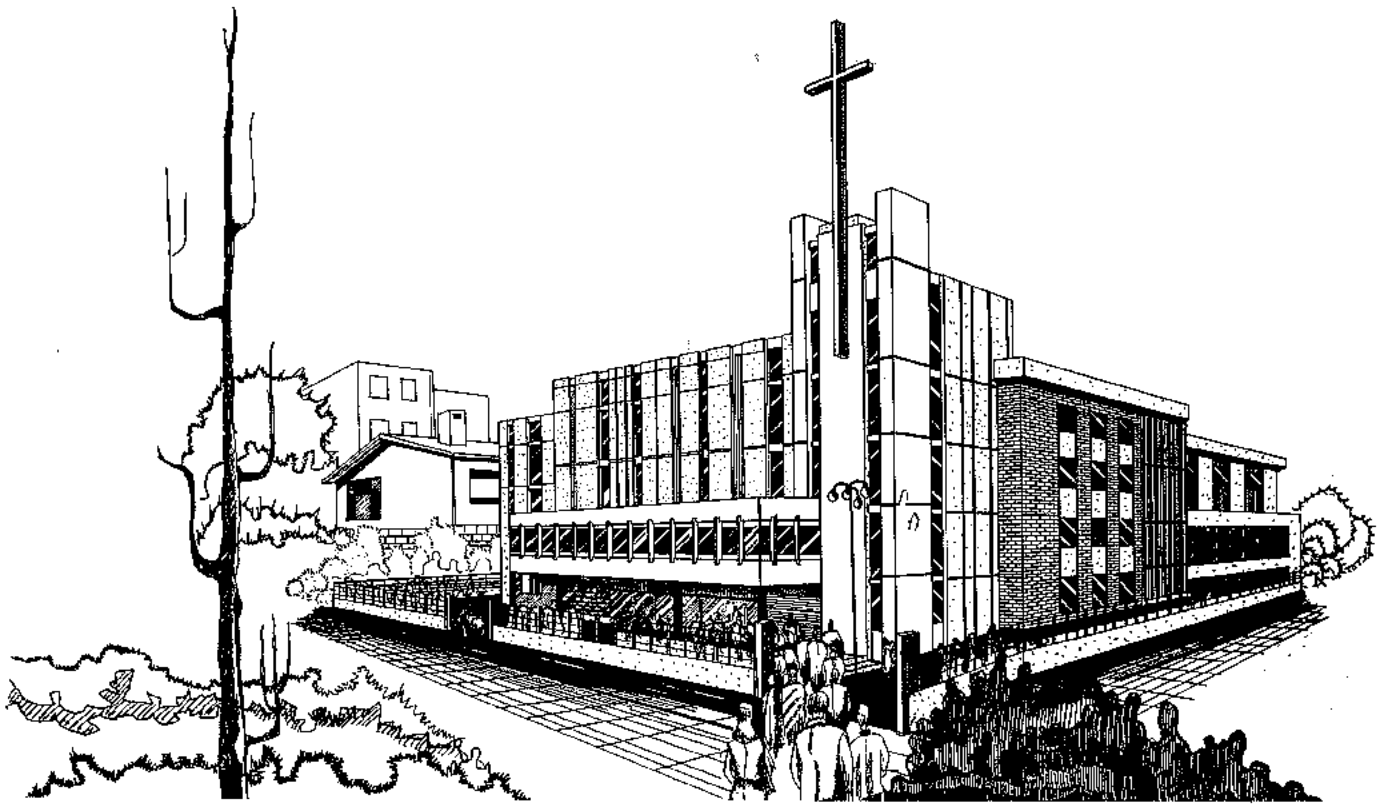
## L氏 住宅

설 계 : 이홍수 신일건축연구소  
위 치 : 서울 중구 광림동  
구 조 : 벽돌조

대지면적 : 111.87M<sup>2</sup>  
건축면적 : 지층 - 22.8 M<sup>2</sup>  
1층 - 63.28M<sup>2</sup>  
2층 - 56.34M<sup>2</sup>  
연면적 : 142.42M<sup>2</sup>







투 시 도

## 서현교회

설계: 조 성 만

(가야종합건축 설계사무소)

소재지: 마포구 서교동.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기존: 1층 219.64m<sup>2</sup> 증축: 지층: 169.52m<sup>2</sup>

2층 216.36m<sup>2</sup> 1층 266.13m<sup>2</sup>

3층 62.48m<sup>2</sup> 2층 289.72m<sup>2</sup>

소계: 498.48m<sup>2</sup> 3층 216.65m<sup>2</sup>

계: 1,238.15m<sup>2</sup> 4층 256.65m<sup>2</sup>

총계: 1,742.93m<sup>2</sup> 옥탑 30.36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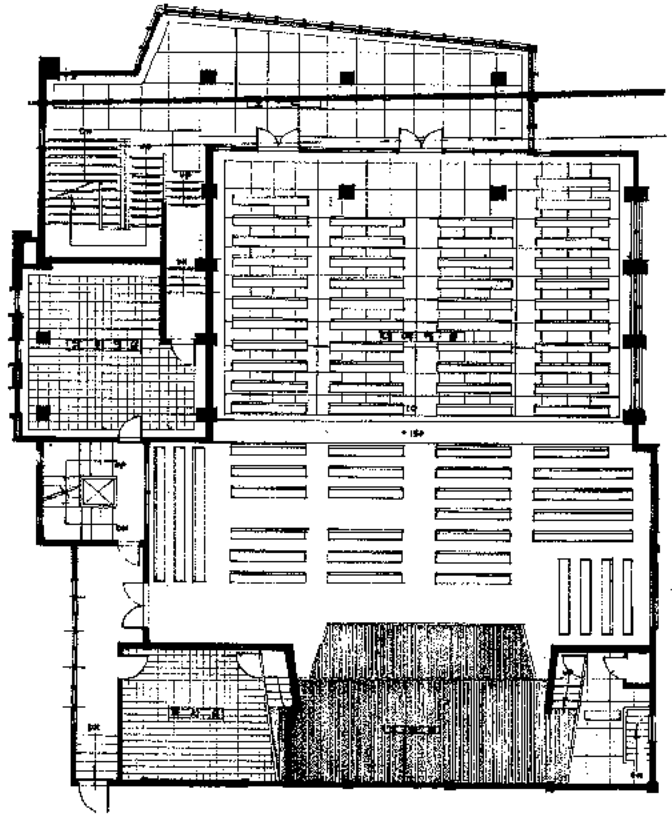
종탑 9.24m<sup>2</sup>

준 공: 197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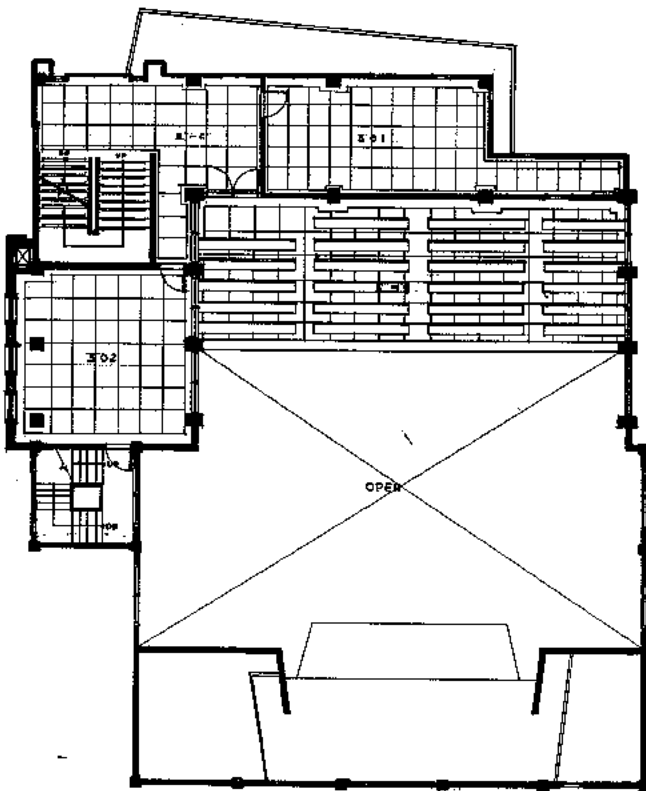
개 요: 협소하던 기존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대 예배실의  
용장함을 최대한으로 이용함.

외적 공간에 상징적인 외부 처리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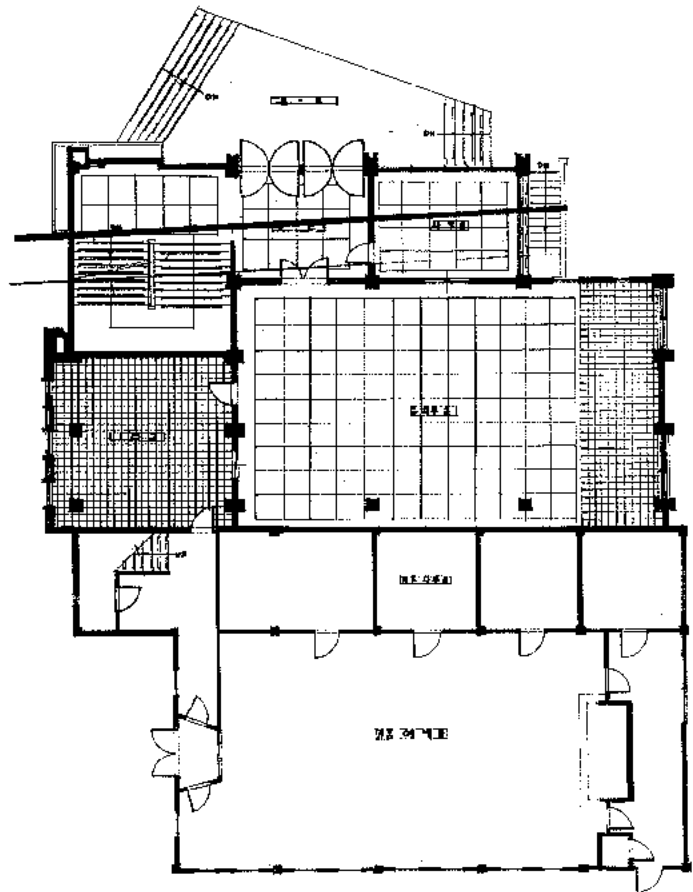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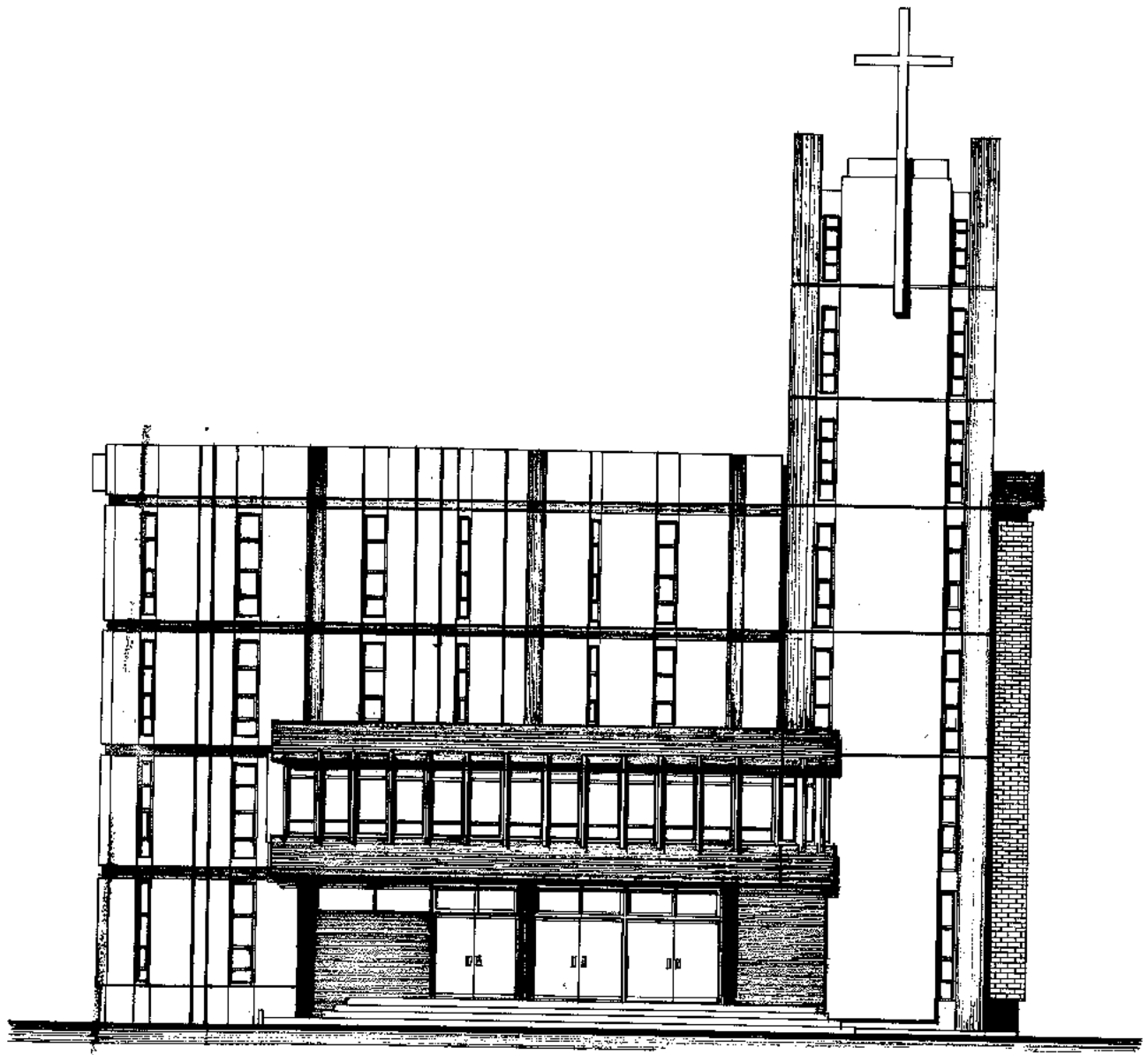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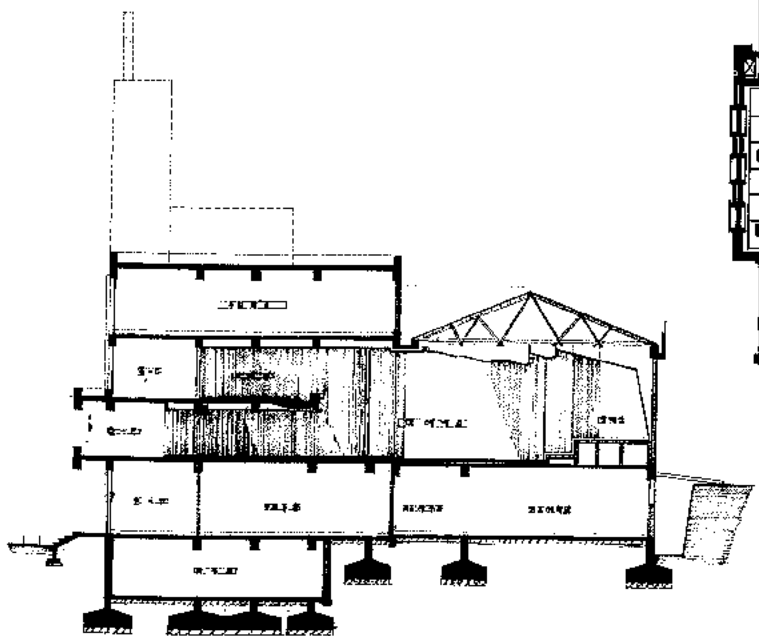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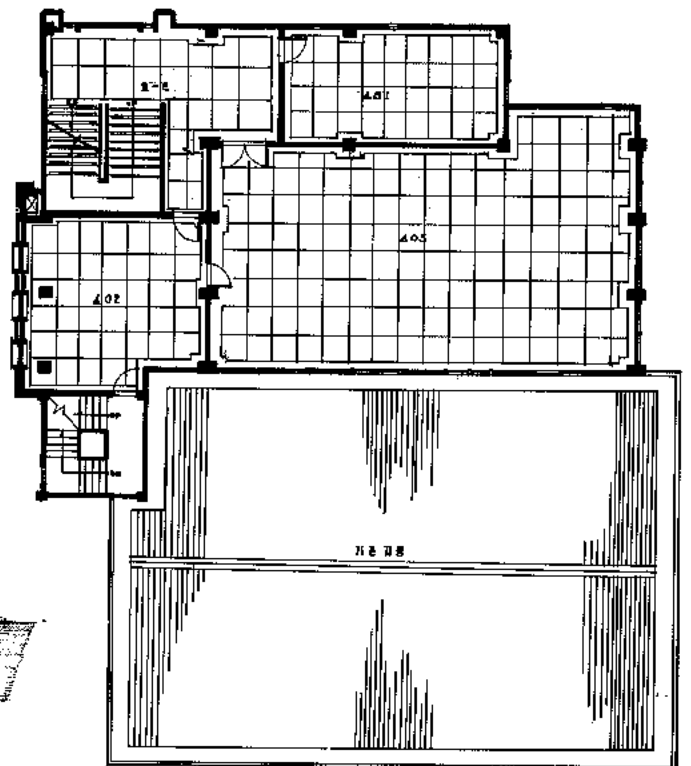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4층평면도

## 주 택

설계개요 : 김석철 설계사무소 아키반

개 요 : 경사지붕과 캔티레바로 형태를 만듦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대 지 : 110평

구 조 : 조 적 조

설 비 : 경유 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겸용

외부마감 : 백색 본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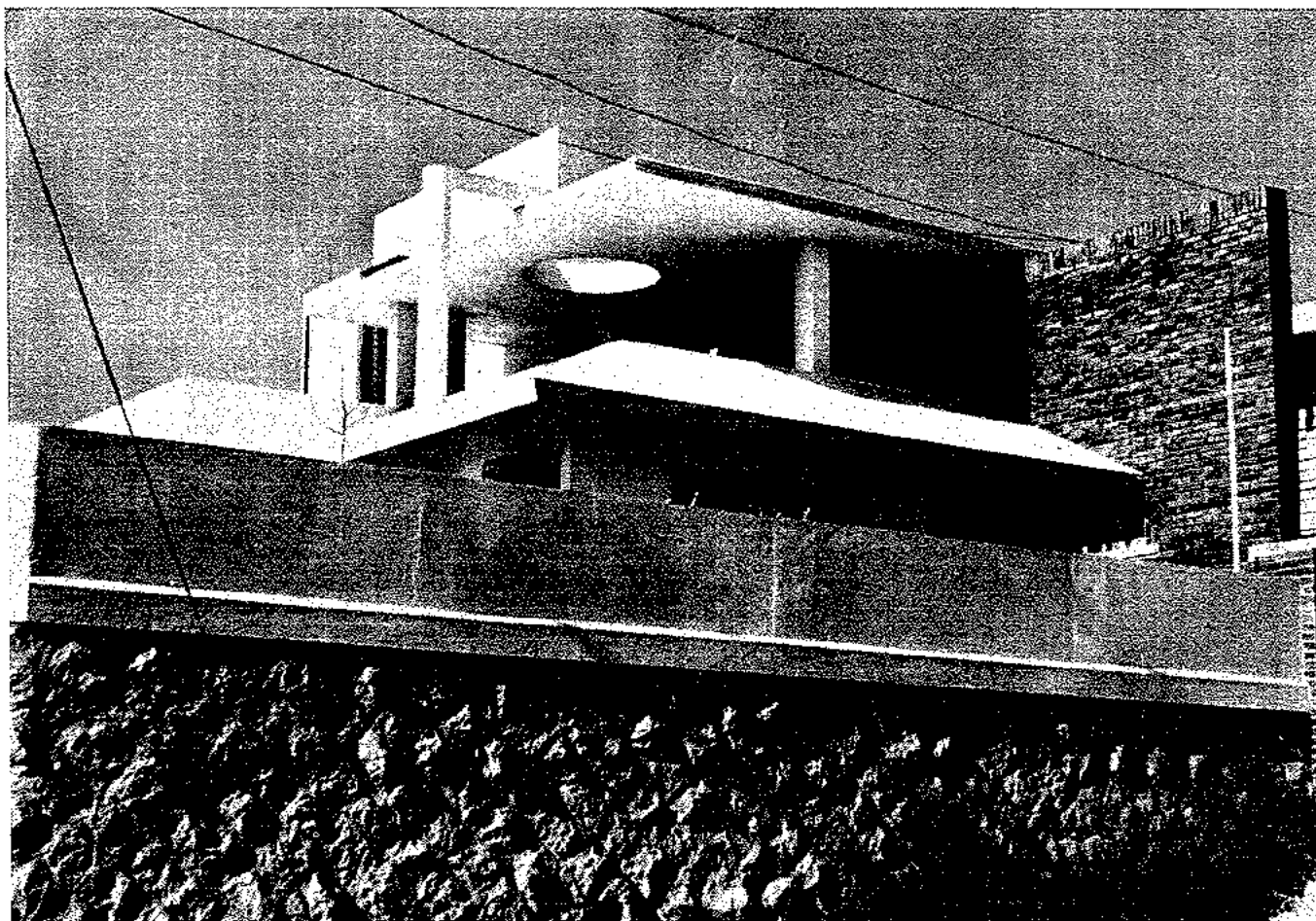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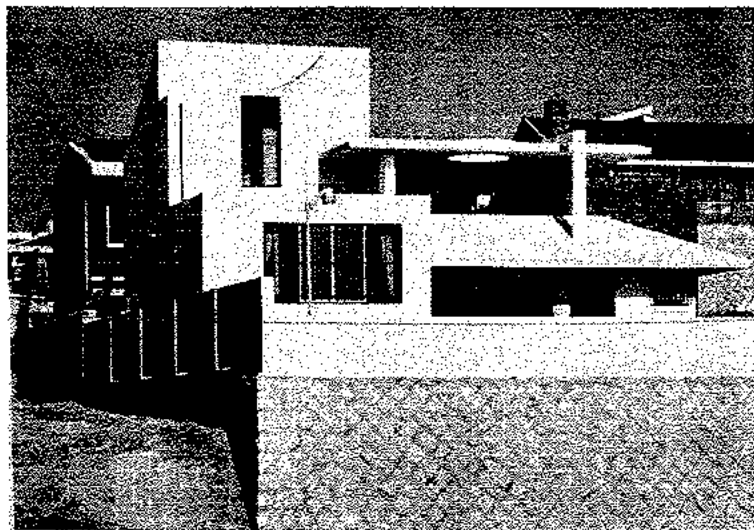
내부마감 : 수성 페인트 및 벽지

면 적 : 지하층 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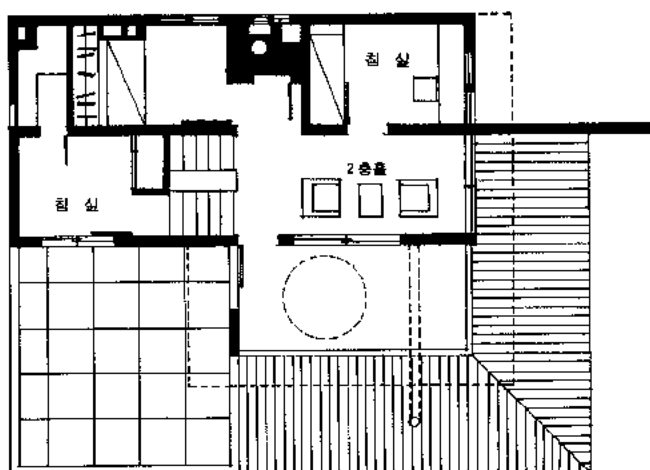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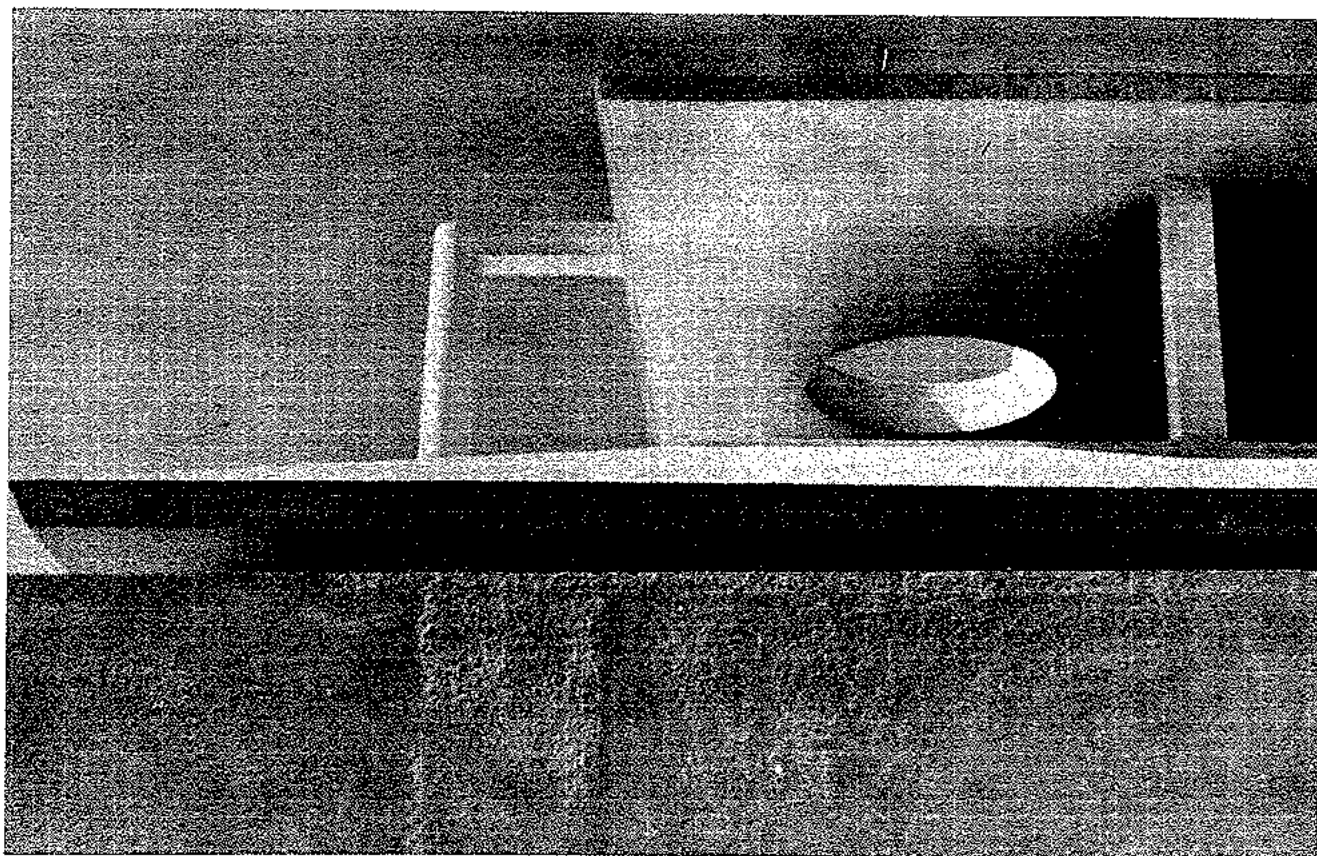
1 층 30.°평

2 층 1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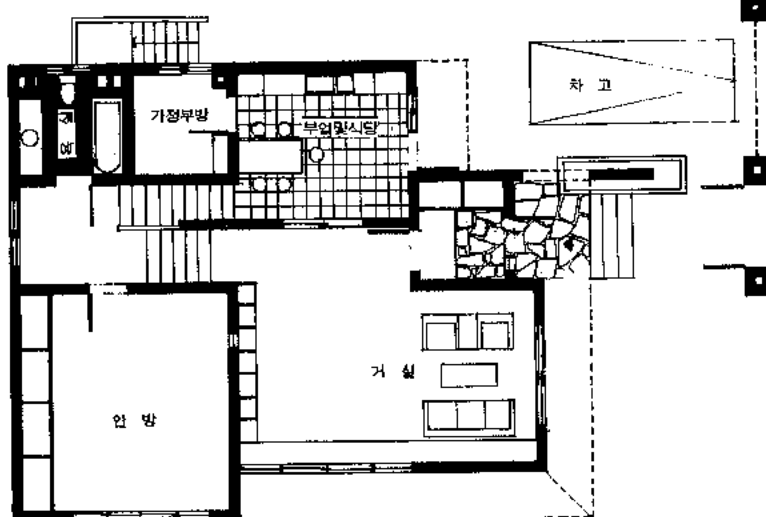
연면적 4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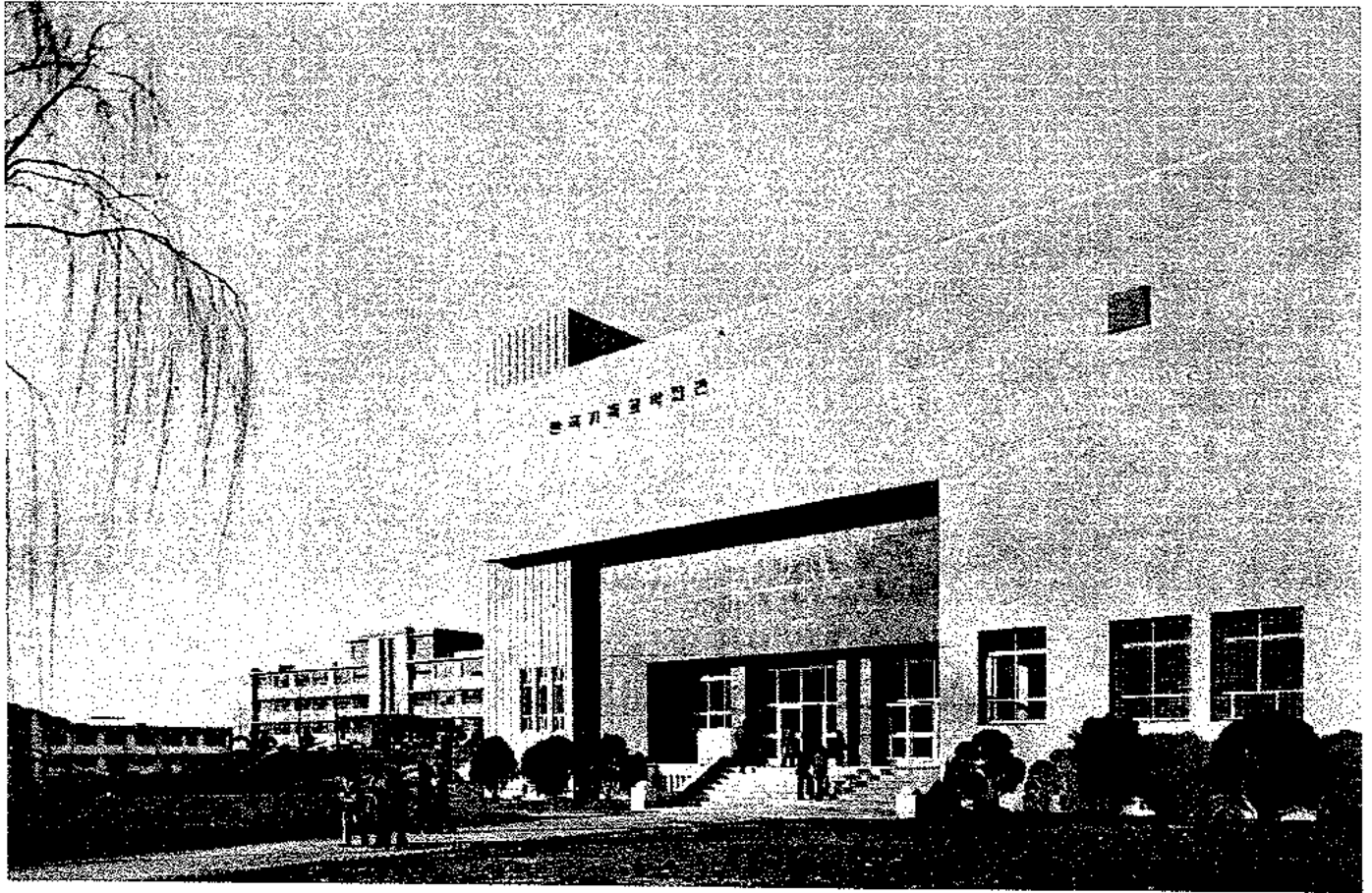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숭전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설 계 : 김 관 룡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김관룡 건축연구실

계획담당 : 권 상 덕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숭전대학교 서울캠퍼스내 교경

대지면적 : 2,265.8M<sup>2</sup>

건축면적 : 637.26M<sup>2</sup>

연 면 적 : 1,948.86M<sup>2</sup>

지하실 : 71.1M<sup>2</sup>

일 층 : 604.6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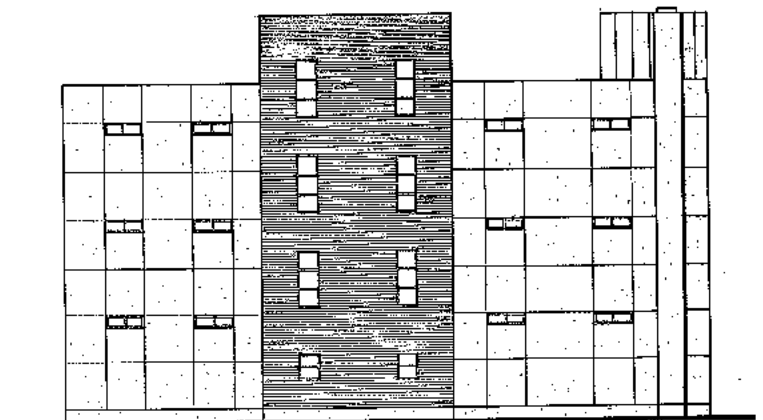
이 층 : 588.6M<sup>2</sup>

삼 층 : 637.26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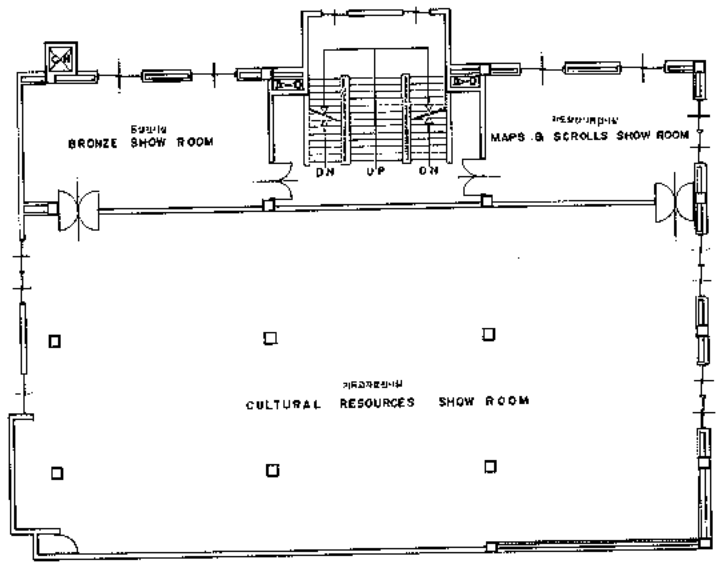
우 탐 : 47.4M<sup>2</sup>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스타브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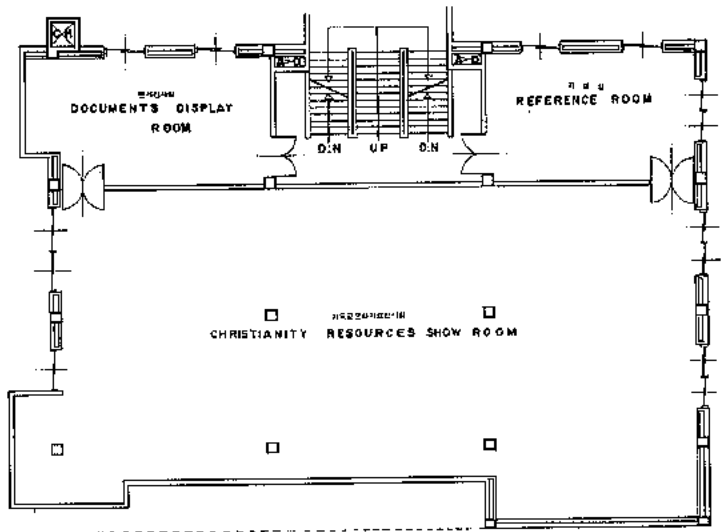
외 장 : 대리석 및 본타일 알루미늄 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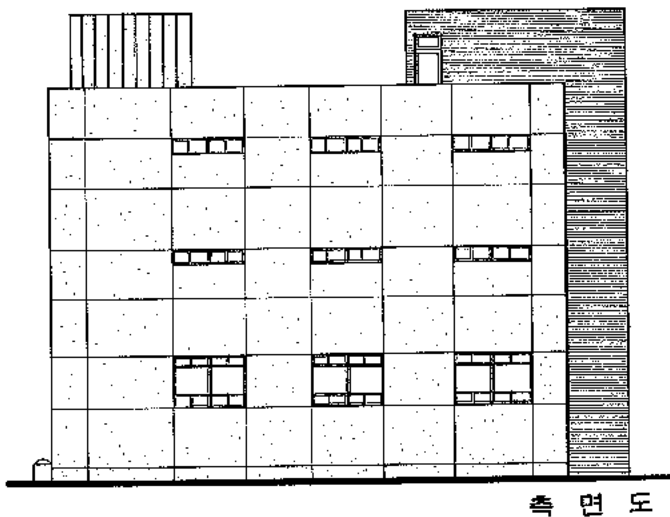
배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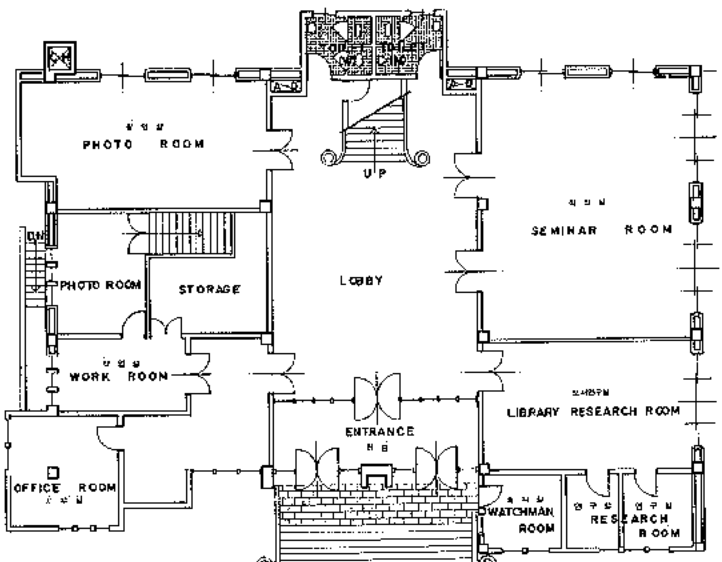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측면도



1층 평면도

# 사진으로 보는 제21회세계올림픽 몬트리올 경기장

## 올림픽 공원(Olympic Park)

Montreal에서 40년전 처음으로 올림픽에 대한 꿈을 간직한 이래 주요경기장과 전경기의 중심지로서 처음으로 Maisonneuve Park를 세웠다.

20 헥타의 사각형인 이 중요한 땅은 Montreal의 중심지로 부터 약 5km 떨어진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Maisonneuve Park와 46.5헥타의 골프장 등의 넓고 풍성한 푸른초원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위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전에 남겨지었다. 이후 계속해서 올림픽 공원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Maisonneuve 스포츠 센터와 Maurice Richard Arena는 이미 세워져서 활용중에 있으며 새로운 스타디움-마스트(mast)-플장의 복합체와 초현대적인 경기장이 공사중에 있다.

이곳에서 800미터 떨어진, 1976년 올림픽경기중8,000여명의 선수가 머무를 올림픽촌은 마지막 손질을 가고 있다.

## 올림픽 스타디움 (Olympic Stadium)

올림픽을 주최하는 도시는 선수와 경기진행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Montreal의 올림픽스타디움-마스트(mast)-플장의 이 복합체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달성시키고 있다.

새로운 스타디움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것이며 어떤 계절에도, 어떤 기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성을 띄고 있다. 텐트형으로 만든 지붕은 기후여건에 따라 개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4개의 대형 주목 기둥은 free standing이면서 지붕, 벽, 바닥면을 지지하게 설계 되어졌다. 이 각각은 축구장 보다도 큰 면적이며 각각의 sits는 정차 console에 배런스를 이루고있다.이 스타디움에는 어떤 경기에서든지 70,000여명의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하나도 없다.

올림픽경기후에 이 스타디움의 수용력은 55,000석인데 이것은 야구, 축구와 같은 프로경기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에 사용될 것이다.

## 수영센터 (Swimming Center)

올림픽마스트(mast)의 날개아래 위치한 새 수영센터는 올림픽의 모든 필수적인 설비를 위해 광대한 시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길이 50m 폭 25m의 Main풀과 50×15m의

training풀과 10m, 7.5m, 5m의 플랫폼홀과 3m, 1m 짜리 스프링 보드를 가진 25m의 다이빙풀이 있다.

수영, 다이빙, 수구등의 경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관람객 수용능력은 9,200명이다. 지정좌석이 500석, 임시좌석이 6,500석, 입석이 1,500석 이상이다. 이플장의의 복도, 레스토랑등도 있다.

올림픽이후 어린이를 위한 미니 플장과 수쿠버 다이빙을 위한 여러층의 수면을 만들 것이다.

## 싸이클링 경기장 (Velodrome)

이 경기장은 네 접합점을 가진 커다란 오목 조개껍질과 유사하다. 지붕은 어떤 기둥의 받침도 없이 이루어졌고 자연의 빛이 골고루 내부에 흘러들어오도록 창살모양의 아크릴판으로 하였다. 약 190m의 지붕지간의 아치형 리브는 모든 관중들이 관람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이하려고 중간에 지지 기둥을 세우지 않고 포스트텐션(post-tension)된 조립식의 콘크리트 아취틀로 건립되었다.

길이 285.714m, 폭 7.5m인 나무바닥판으로된 이경기장 트랙은 올림픽 싸이클링 트랙으로 이용될 것이다.

에어콘 구조의 용량은 경기에 따라 7,000에서10,000까지 다양하다. 싸이클링 경기에도 1,500명의 입석관람객을 포함해 7,200명의 관람객에게 맞추어져 있다.

관람객을 위한 시설로는 응접실, 스낵바, 레스토랑, 분수, 기념품점 등이 있다. 입구, 복도, 보도는 유통이 잘되도록 되어 있어 이 경기장에서는 4분만에 모든 관람객이 다 퇴장할 수 있다. 올림픽게임후 이 경주장은 회의나 사회단체 모임을 위해 뿐만 아니라 핸드볼, 농구, 배구, 복싱, 유도같은 실내경기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 조정경기 및 카누경기장을 위한 Olympic内灣

조정경기과 카누 경기를 하게되는 올림픽内灣은 최대의 성공적인 Expo67를 개최했던 Montreal의 江中央에 형성한 오아시스 섬인 Notre Dame섬에 위치하고 있다.

정확한 시방서에 의해 정밀한 정방향으로 설립된 内灣은 10,000 명의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의석과 15,000명에서 20,000명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경사진

잔디밭을 가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해 특별히 설비한 것중에는 집행부 빌딩, 관망대, 선수들의 숙소, 모터볼 두는 곳 등이 있다.

#### 양궁경기장(Archery Field)

올림픽촌으로부터 63km 떨어진 Joliette, Quebec 에 있는 새로운 올림픽 양궁 경기장은 설비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회장이라고 유명한 궁술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자연은 그 장소에 나무와 수풀이 호화스러운 환경을 제공해주며 올림픽 계획서를 능가하는 입구나 과녁 지역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Joliette 양궁클럽의 현존하는 코스를 보완하는 새로운 설비는 선수, 집행관리자, 기술자, 기자, 호스메스, 사무원들, 선수보조자들을 위한 완전한 빌딩모듈을 제공한다. 2,000명의 관람객을 위한 관람석이 있고 그아래는 레스토랑, 상점, 서비스 장소등이 있다.

#### 사격장(Shooting Range)

이상적인 사격장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큰 도움은 된다.

잔잔한 미풍과 주요 통과선으로 용이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배경막을 위한 탁트인 하늘과 평평한 평원을 사격선수들은 필요로 한다. 이 올림픽 사격장은 이러한 필수적인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Montreal 중심지로부터 46km 떨어진 이곳은 참가하는 사격선수들이 일렬로 서도록 되어 있으며 그물벽, 담, 머리 위로는 차양같은 벽으로 되어 있다.

1976년 올림픽을 위해 현존하는 클럽회관은 집행사무실 팀들의 방, 레스토랑, 주차장등의 설비를 보완한다. 공중포적 사격을 위해 야외석은 1400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라이플총, 피스톨, 이동사격 관람을 위한 입석석이 마련되어진다.

#### 요트 경기장(Yachting Center)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가능한 최대의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이 올림픽 주최지의 의무이다. 1976년 요트경기장으로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Kingston에서 요트경기가 이루어진다. 이곳은 Montreal 에서 290km 떨어진 곳이며 대부분의 북부 아메리카 지역이 바람이없을 때도 그곳엔 열풍의 촉박이 있었으며 일생 일 대의 장관을 보여주는 조망을 가진 이상적인 장소이다. 세계의 삼각형 모양의 요트경기 코스는 Ontario 호수에 있는 Wolfe섬과 Amherst섬 사이에 만들었다.

선수들과 임원을 위한 숙소는 Queen대학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

#### 경기장(Competition Site)

1976년 올림픽 게임을 위해 27개 종목의 경기장이 특별히 만들어 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또 올림픽內灣, 여러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는 Clau de Robillard센터와 Etienne Desmarreau센터등도 있다.

27개의 경기장중 21개는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확장·개선되었다. 예를들어 올림픽 요트 경기장, 승마경기장, 양궁대회장, 사격장 등이다. 모든 다른 현존하는 경기장들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Montreal Forum 과 같은 몇개의 경기장은 초현대적인 경기장이다.

모든 경기장은 1976년 올림픽 경기를 위해 특별히 단장하였으며 최선식 기구도 갖추어 놓았다.

#### 선수촌(Olympic Village)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춰 설계한 올림픽촌은 노서저주자들이 즐기는 모든 오락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선수촌 중심부에는 11,000명의 선수를 수용하는 데 최적조건으로 갖춘 980개의 단위모된 19층의 반 피라밋드 형의 건물이 있다. 그중 3/4이 남자 선수를 위하여, 1/4이 여자 선수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주방, 집행부, 의료시설, 통신시설은 사우나장, 서비스구역, 창고, 보급장과 더불어 피라밋드형 건물의 아래에 위치한다.

선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선수촌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20개의 상점과 수없이 많은 레크레이션 시설과 사고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미관을 완수하는 일인데 여러 대표들을 위한 풀장, 극장, 레스토랑, 다과점,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선수촌은 세계 선수들이 형제애와 상호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귄 수 있는 세계 젊은이들의 모임의 장소인 것이다.

■ 올림픽이 개최되는 Montreal市

주최도시 (Host City)

1976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Montreal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Expo 67 이래 이 도시는 지도상의 중요도시가 되었으며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 다다르자 계속되는 흥분과 활기는 이 국제적인 도시를 세계 제일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있다. Montreal은 따뜻하고 친절할 도시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도시에 온 것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곳은 新과 旧를, 현대의 소피스트주의와 불란서의 매력을, 불란서 문화와 영국문화를, 유럽식 전통주의와 미국식 생활 태도를 복합시킨 신기하고도 훌륭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저명한 도시계획가 Vincent Ponte는 "Montreal은 우리세대의 선도적인 도시"라고 표현하였다.

지하도시는 오피스 마천루, 철도역, 호텔, 아파트,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수백개의 상점, 밝고 조용한 지하철등으로 200 에이커를 차지한다.

또 Montreal은 식도락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수천개의 레스토랑중 3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도시의 또다른 큰 매력은 500에이커의 세계적 공원이며 주위에 놀이터가 있는 Mount Royal이다.

도심에서 700피트이상의 높이에서 보는 경관은 도시그자체와 그 주위의 교외 지역 St. Lawrence강 seaway, Man and His World의 비길바 없는 장관을 바라볼 수 있다.

Expo 67의 유적이며 캐나다의 위대한 세기적인 선물인 Man and His World에서는 Montreal시 주최의 정기적인 하기 문화 오락행사가 있다.

Montreal시의 매력적인 점은 열망과 호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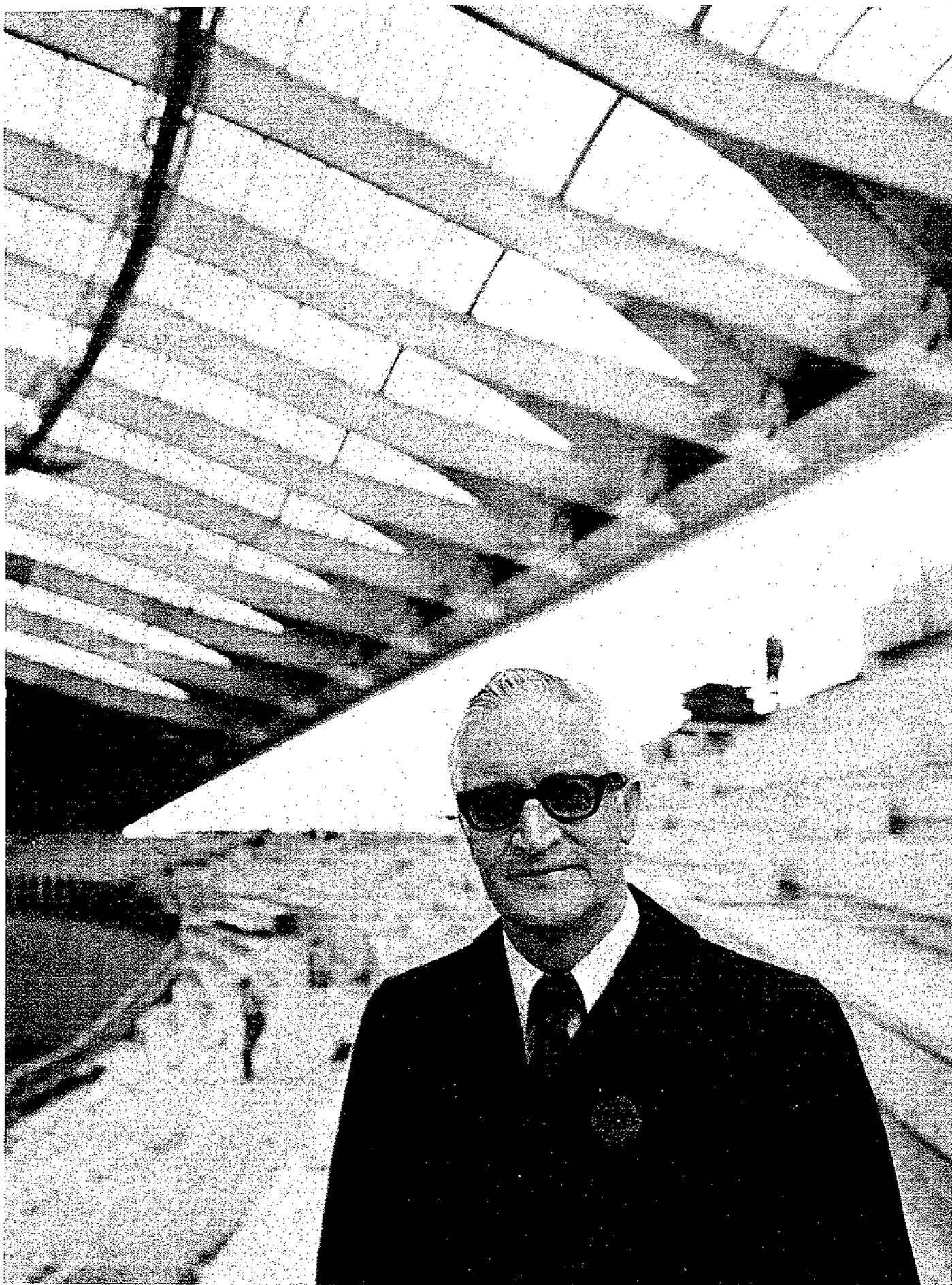
올림픽 경기후 이곳의 방문객들은 할것이 많고, 볼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곳은 여행하기에 좋은곳이며 살기에는 더욱더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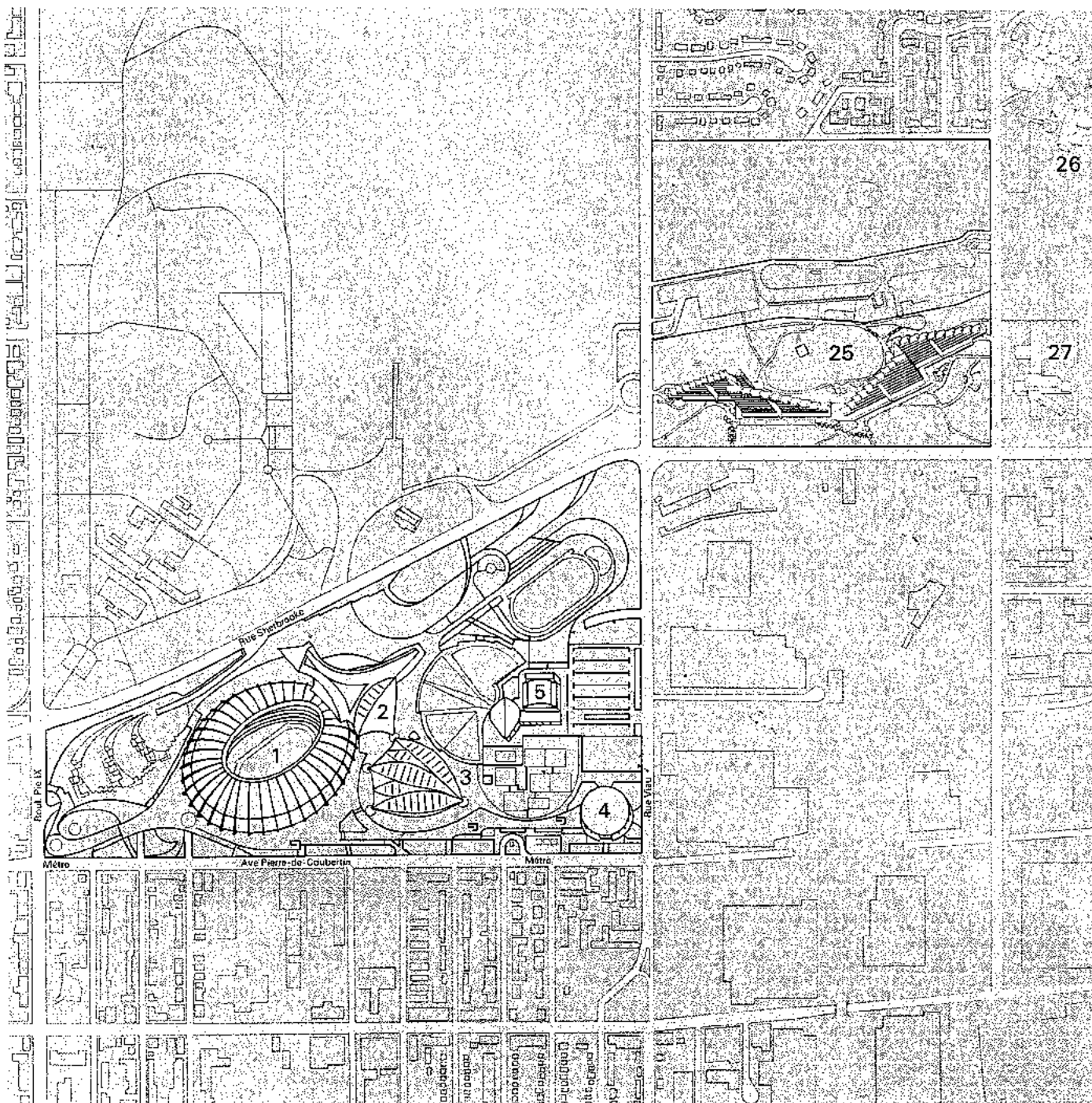
Amik

1976년 올림픽 경기 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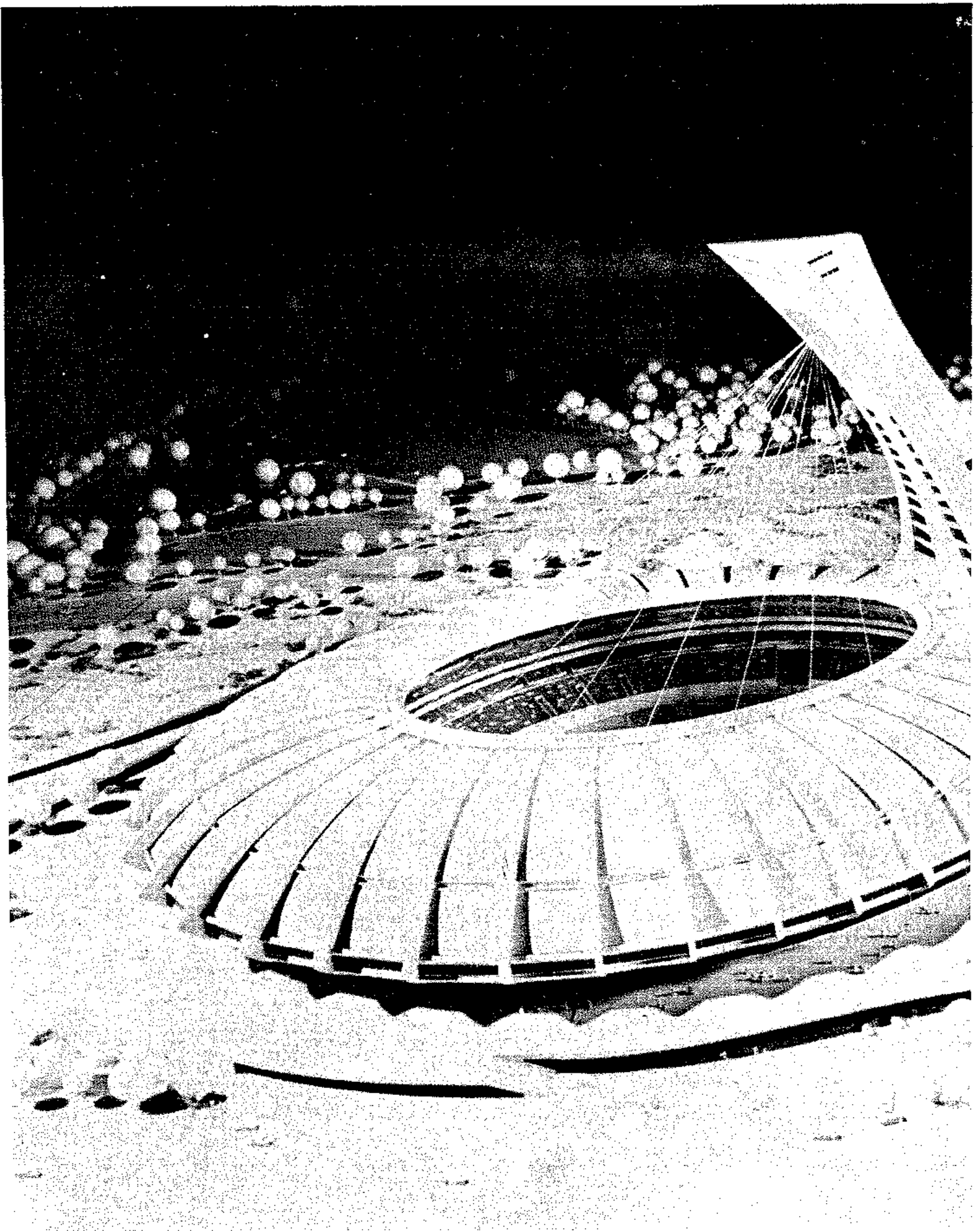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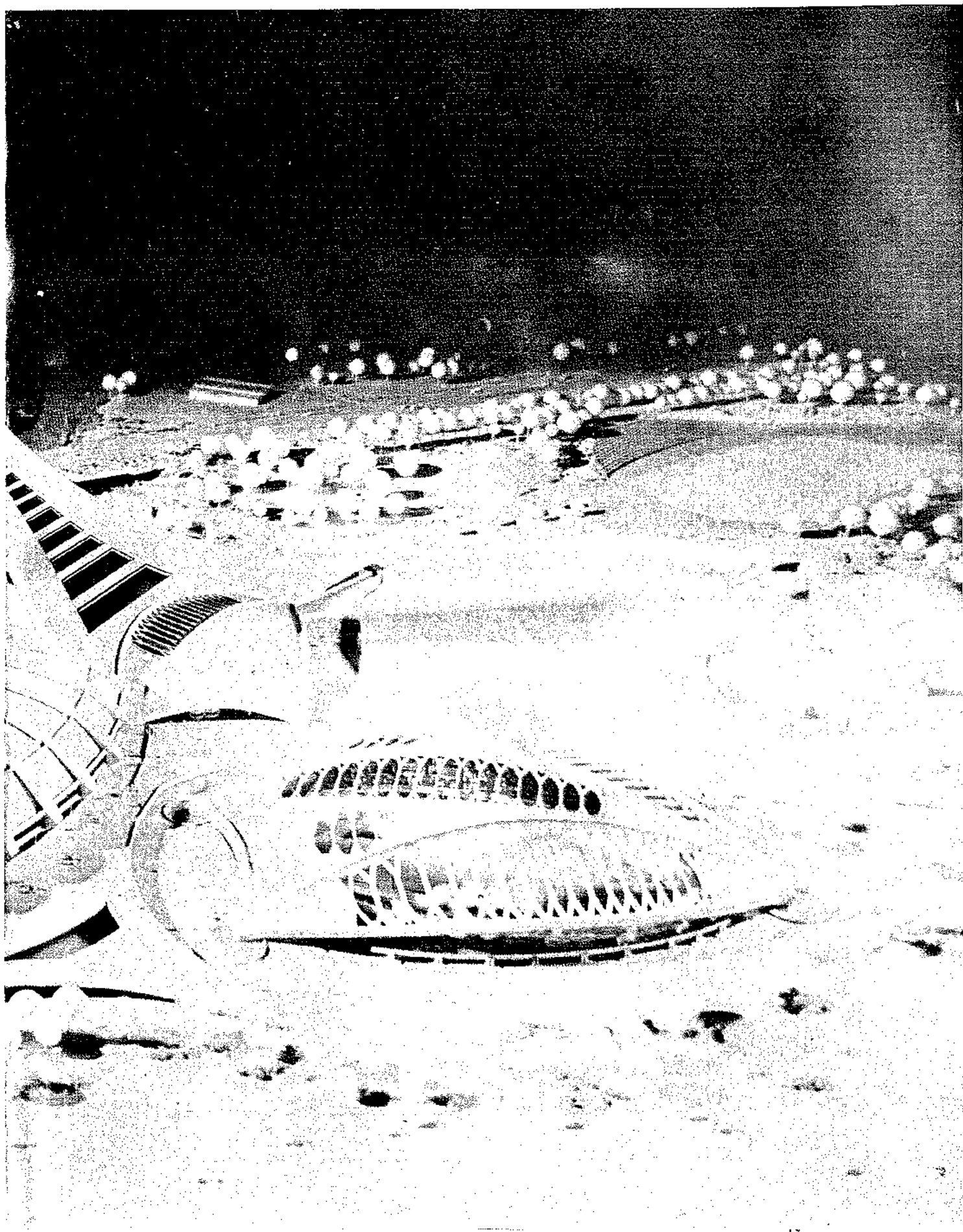
■ 제21회 세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Reger Rousseau  
38

- |                         |                      |
|-------------------------|----------------------|
| ① 스타디움                  | ⑤ Maisonneuve 스포츠 센터 |
| ② 풀장                    | ⑥ 선수촌                |
| ③ 사이클링경기장               | ⑦ Maisonneuve 병원     |
| ④ Maurice Richard Arena | ⑧ 올림픽의 국제 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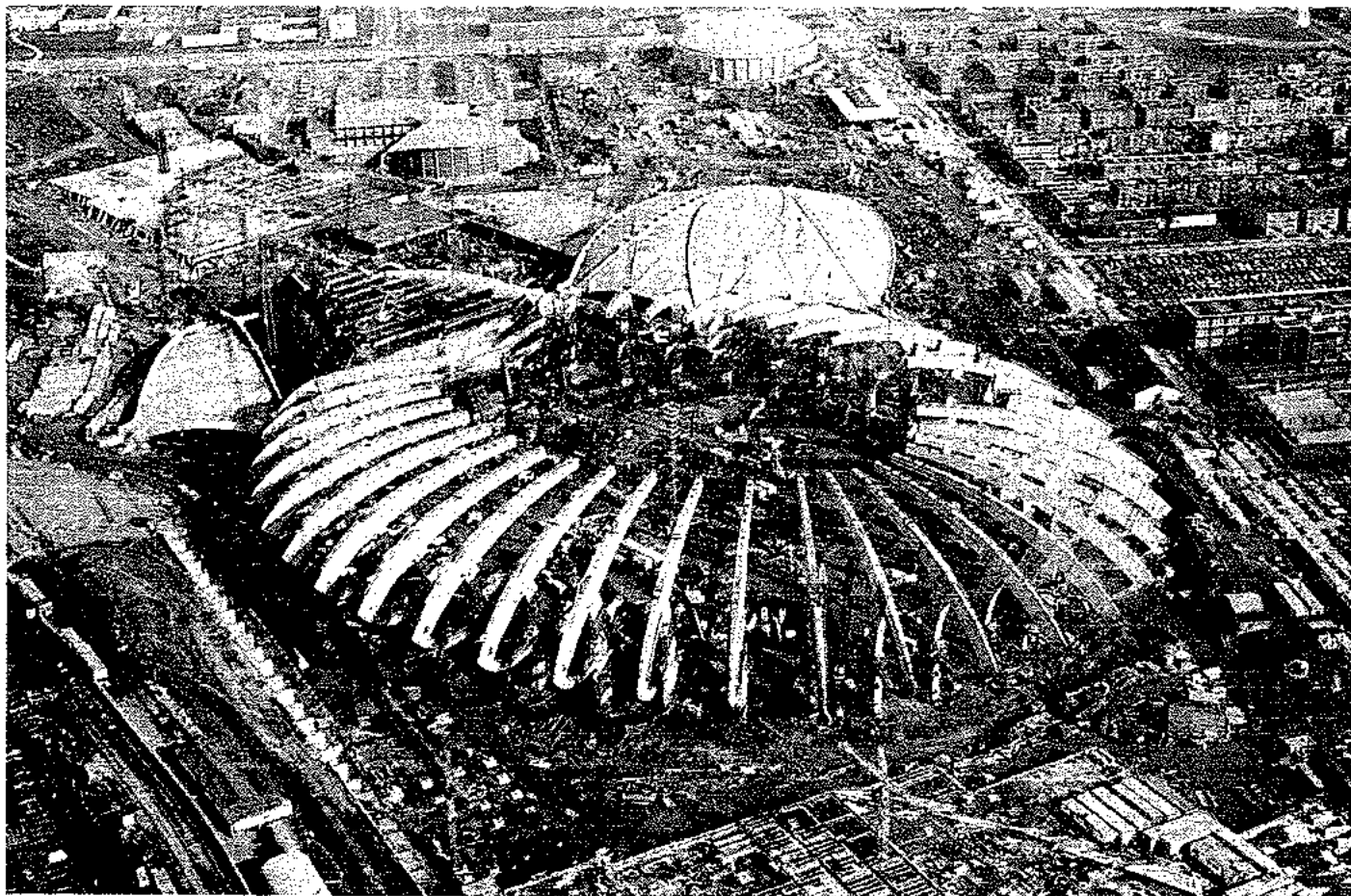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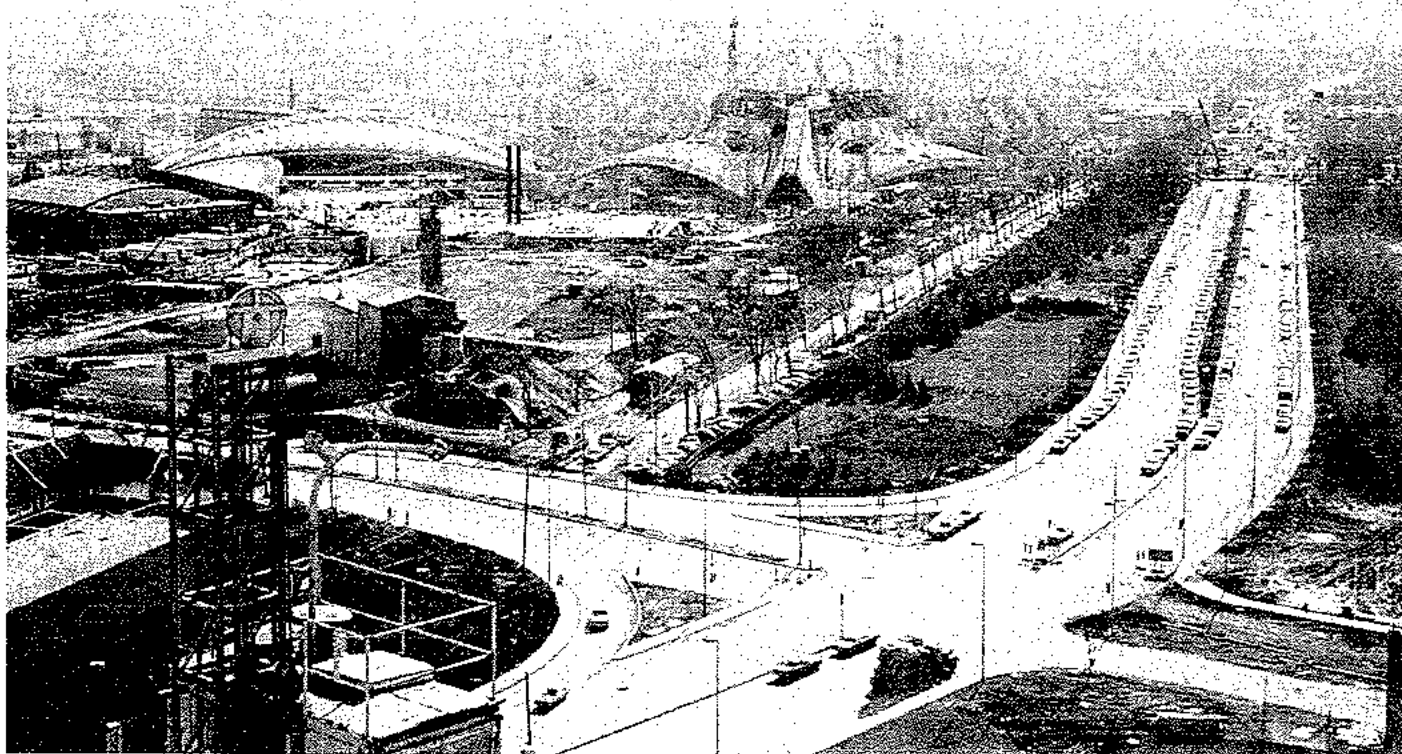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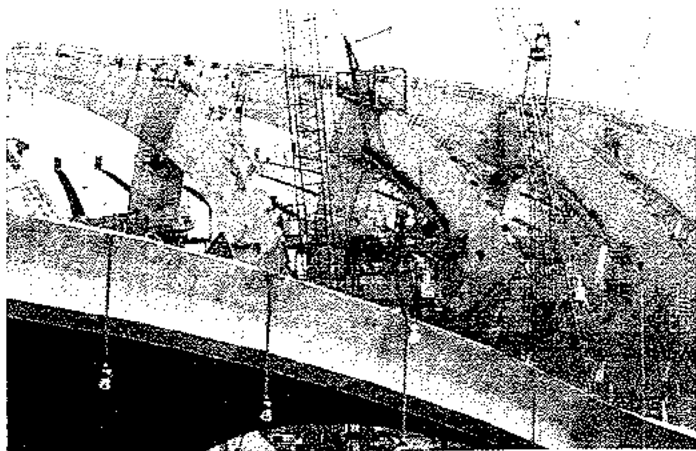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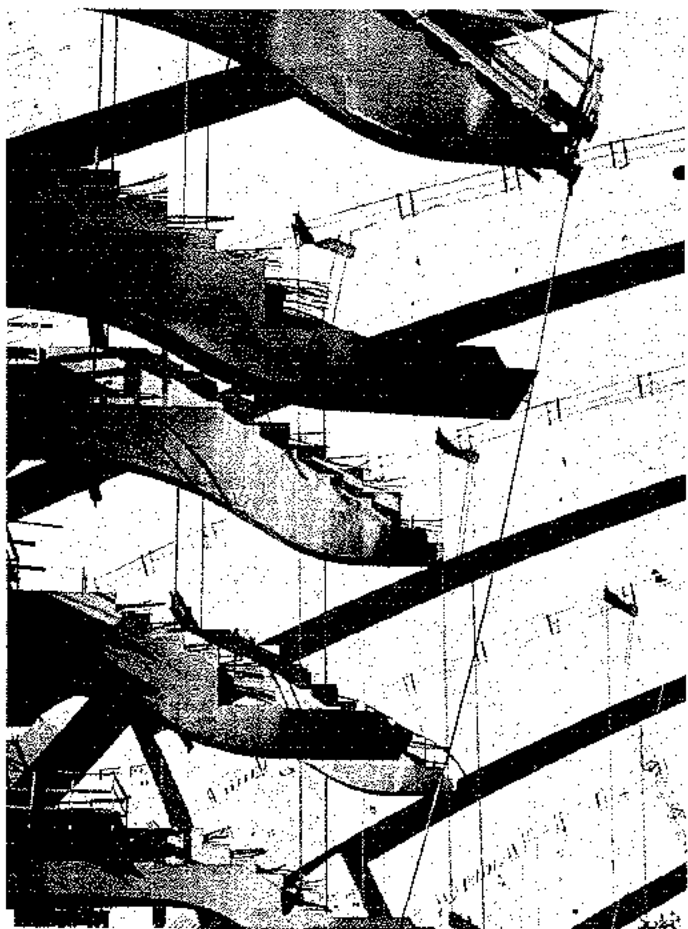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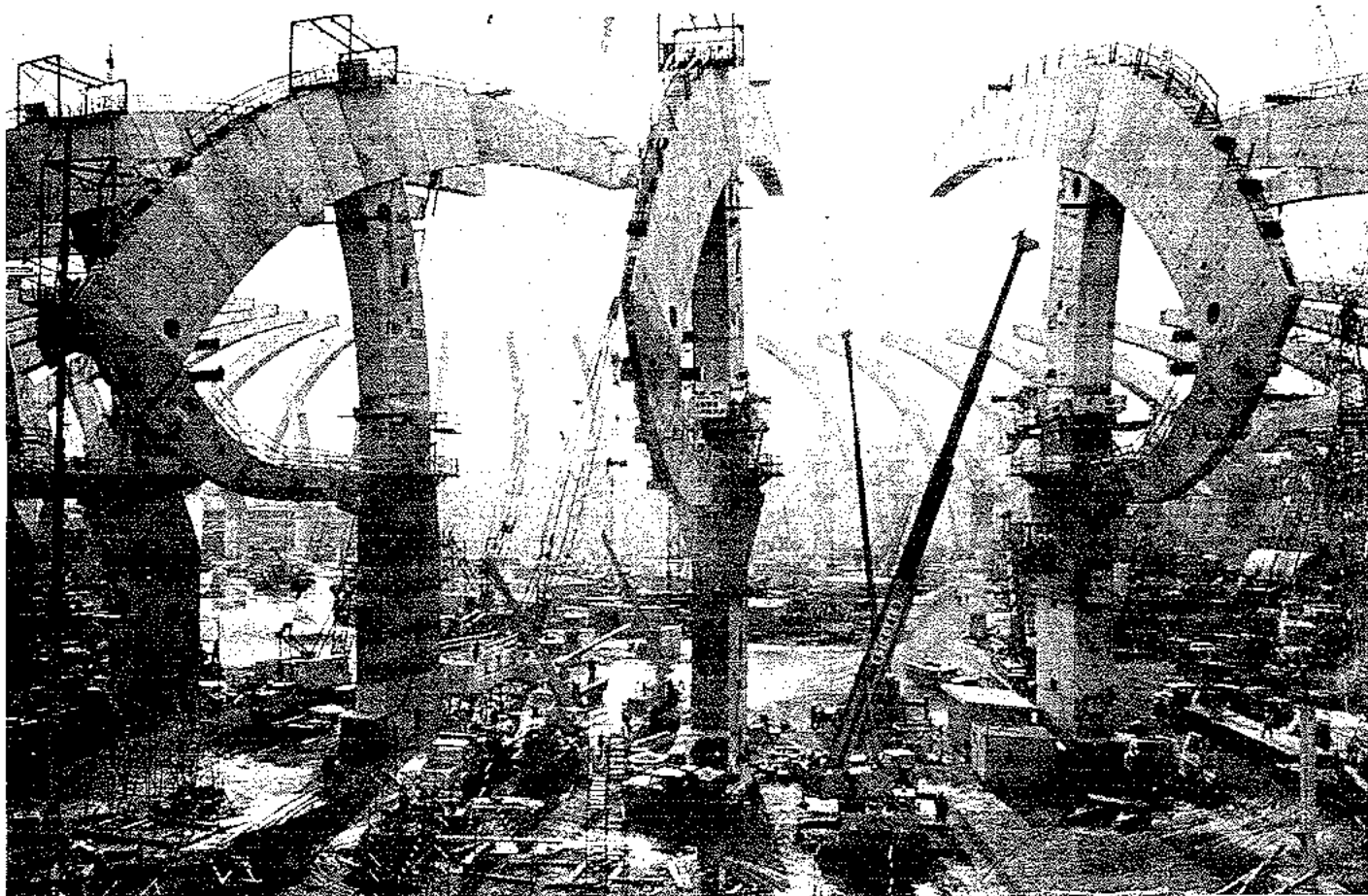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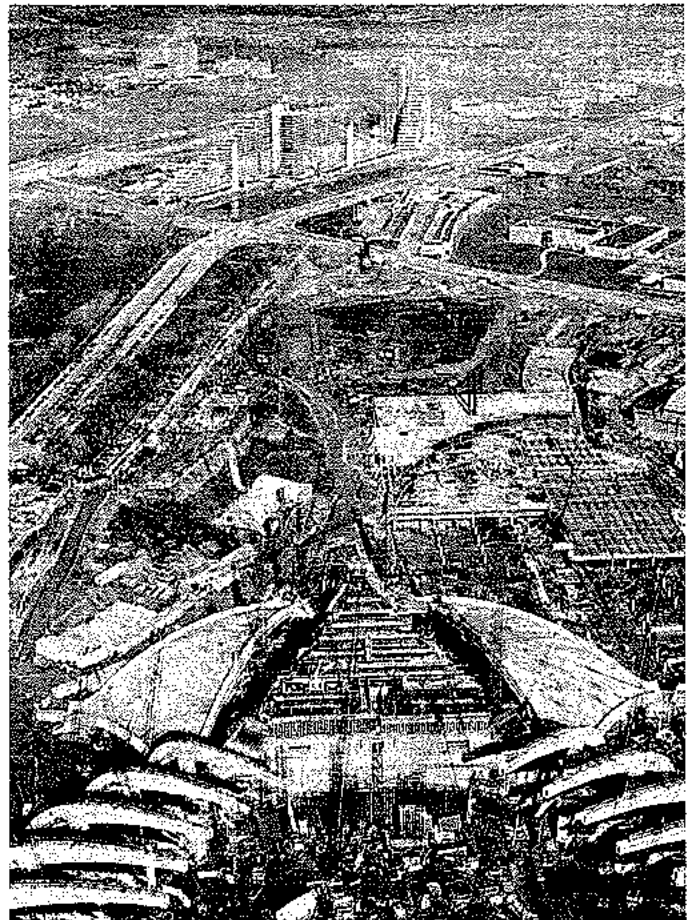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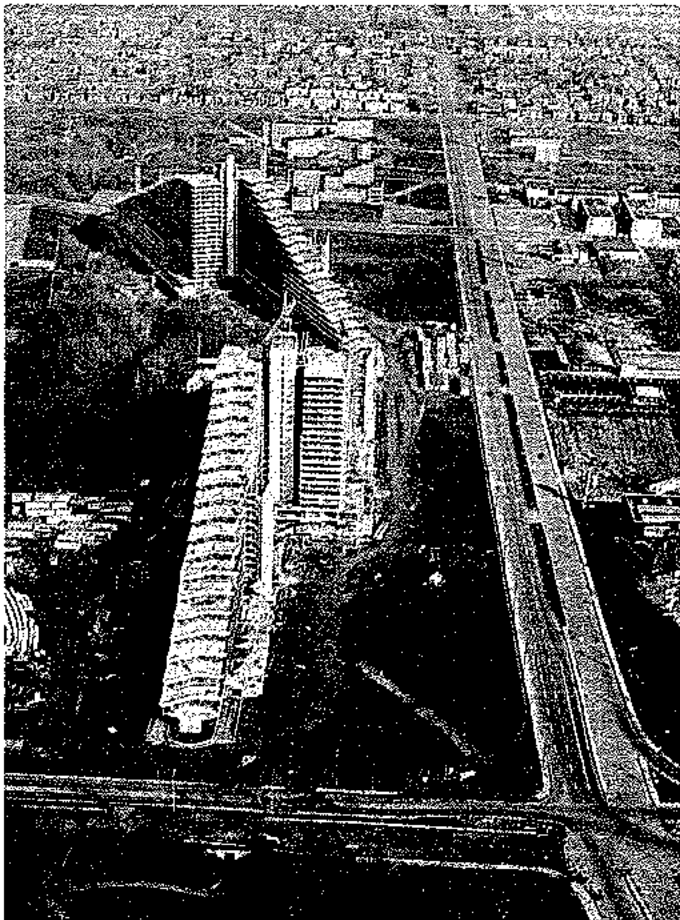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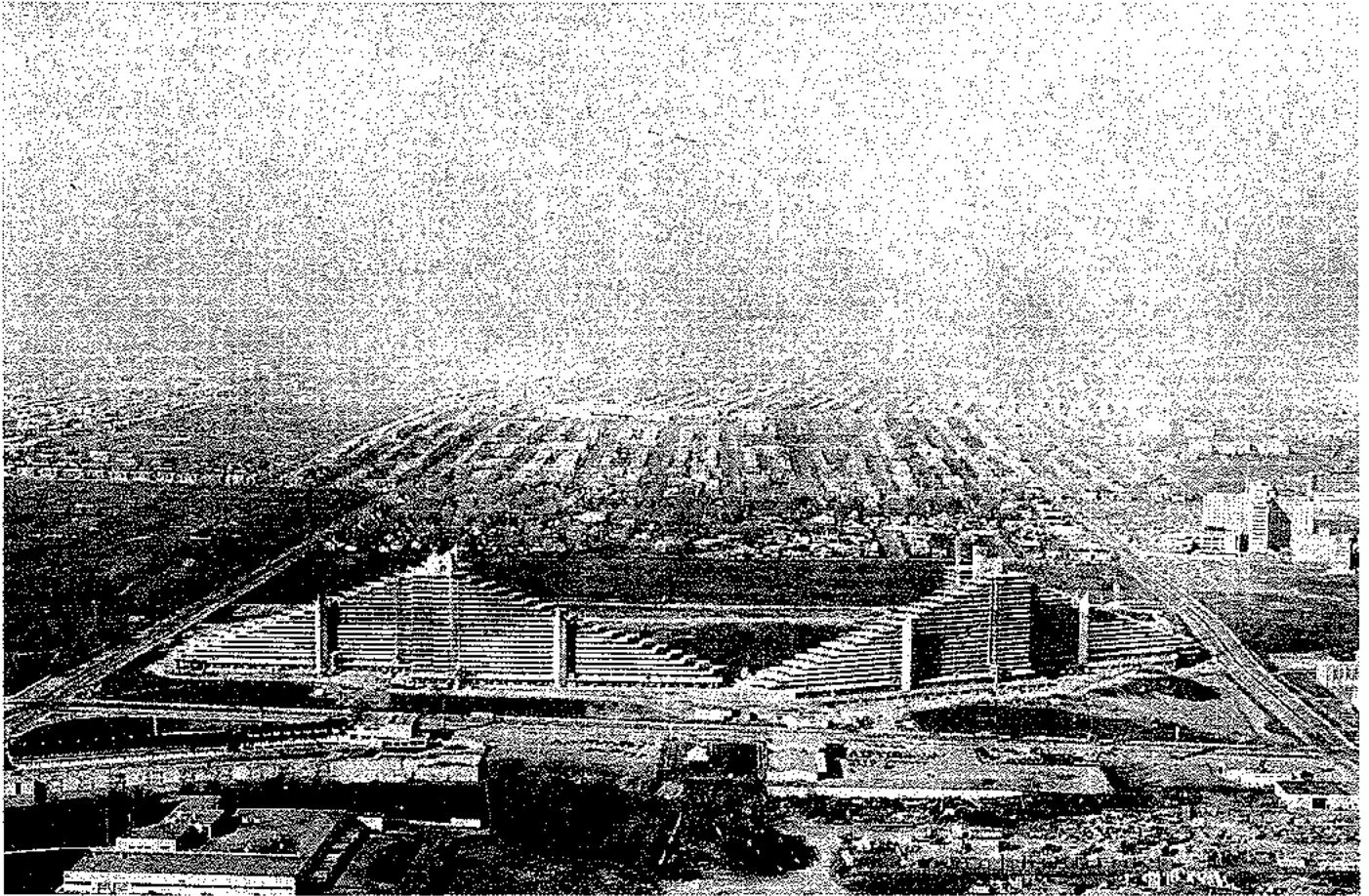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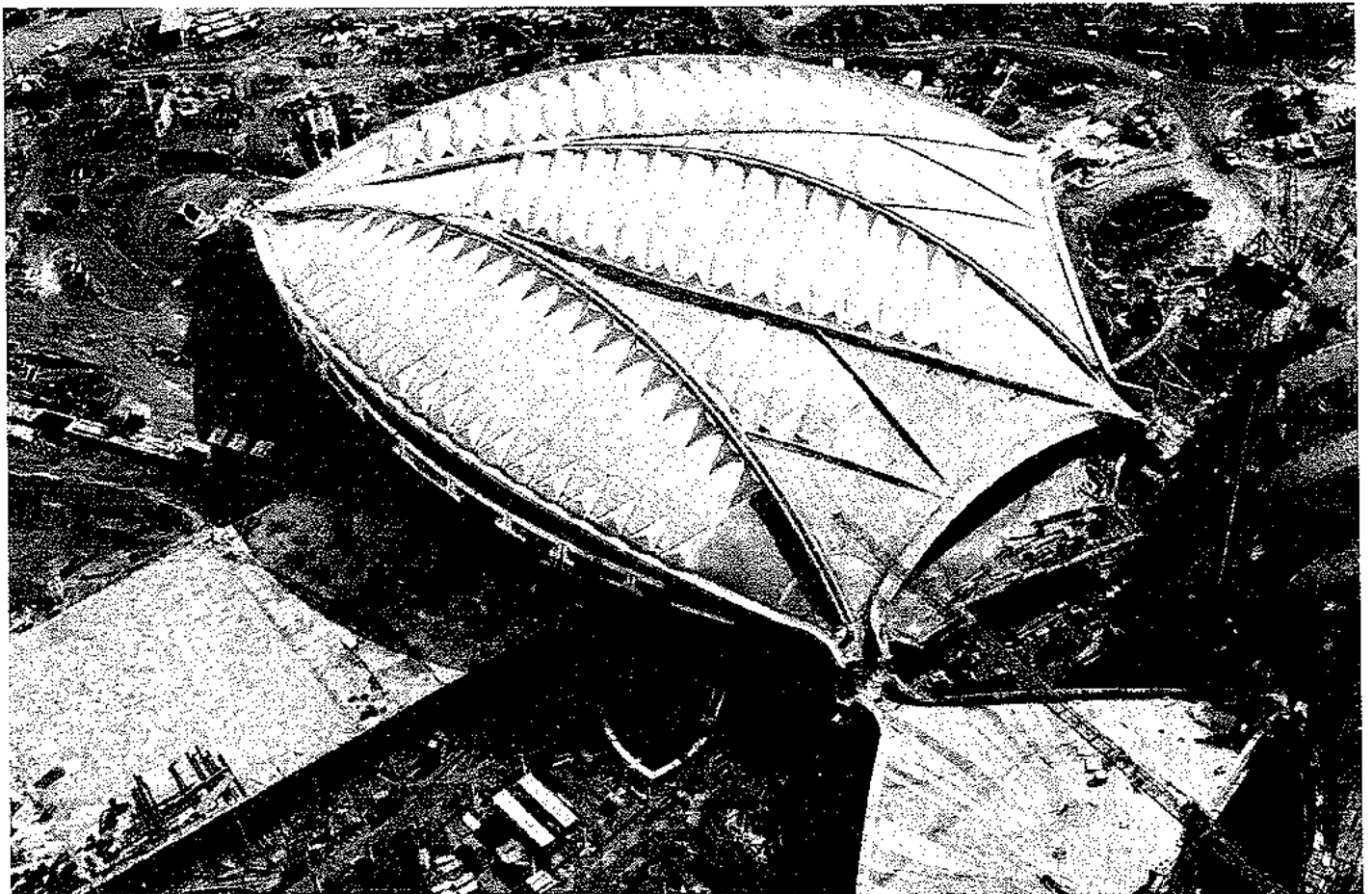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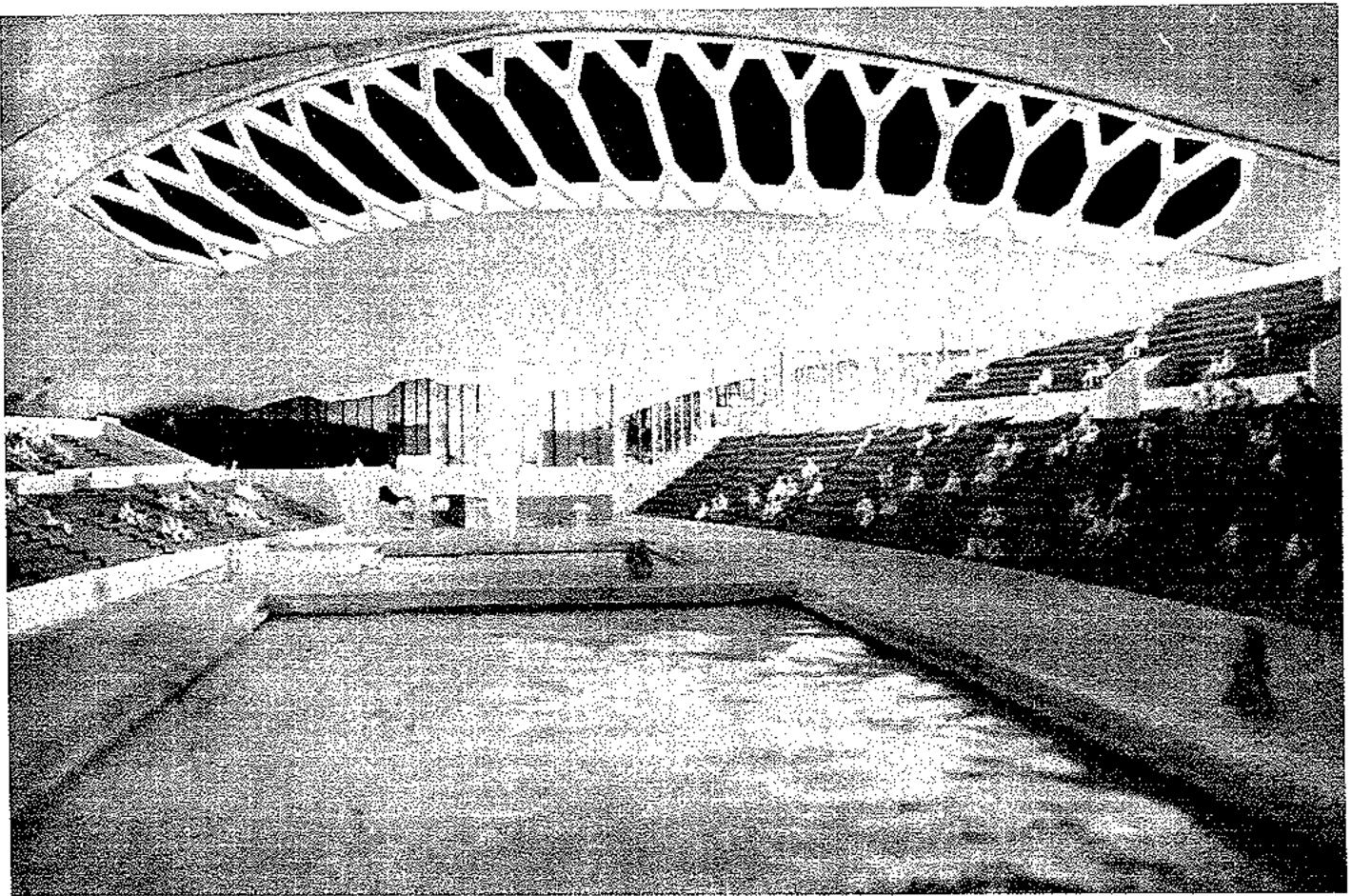
■ 공사 진행중에 있는 올림픽 공원인 Maisonneuv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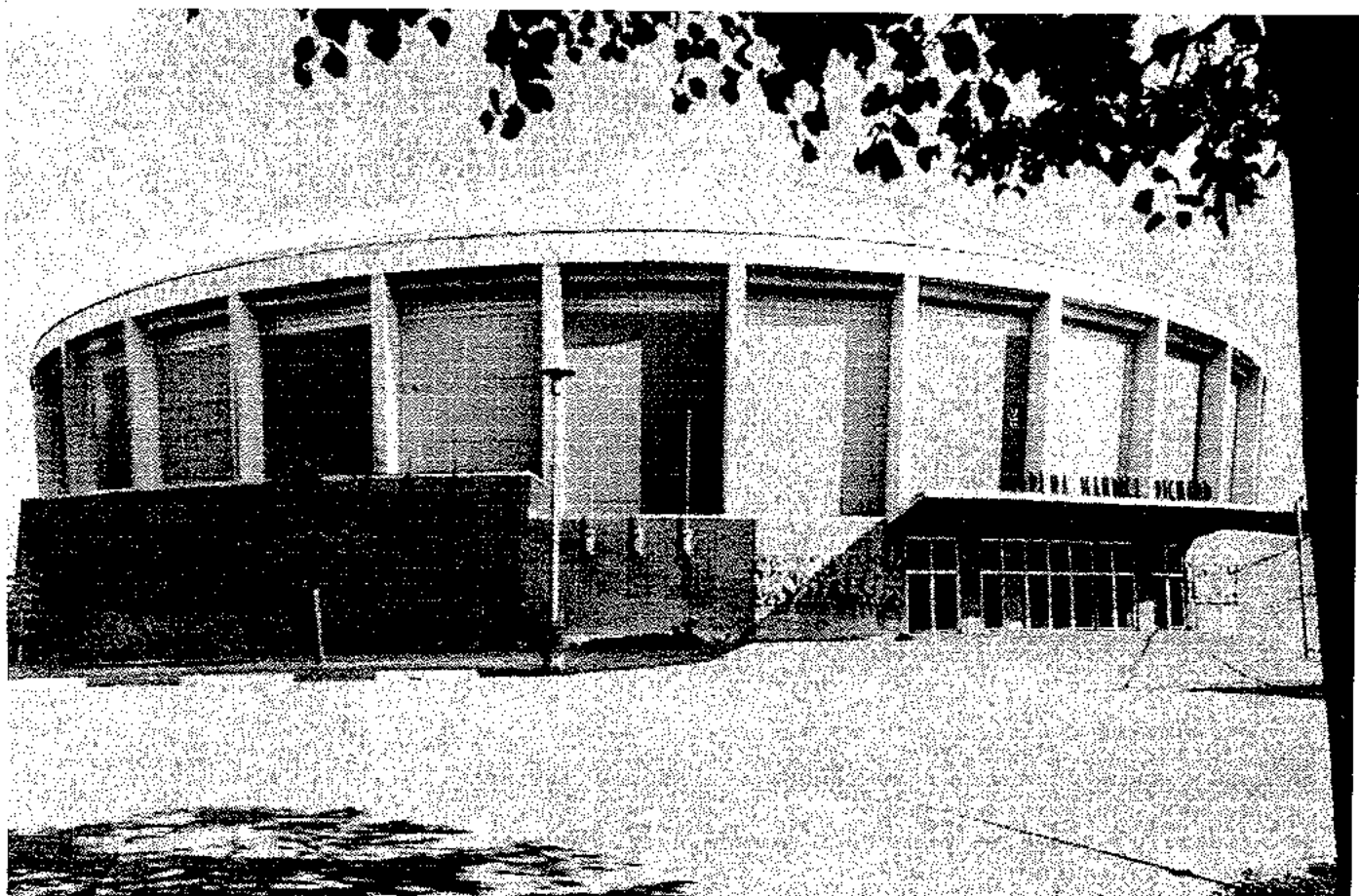


■ 올림픽 선수촌 <반 피라미트형의 건축물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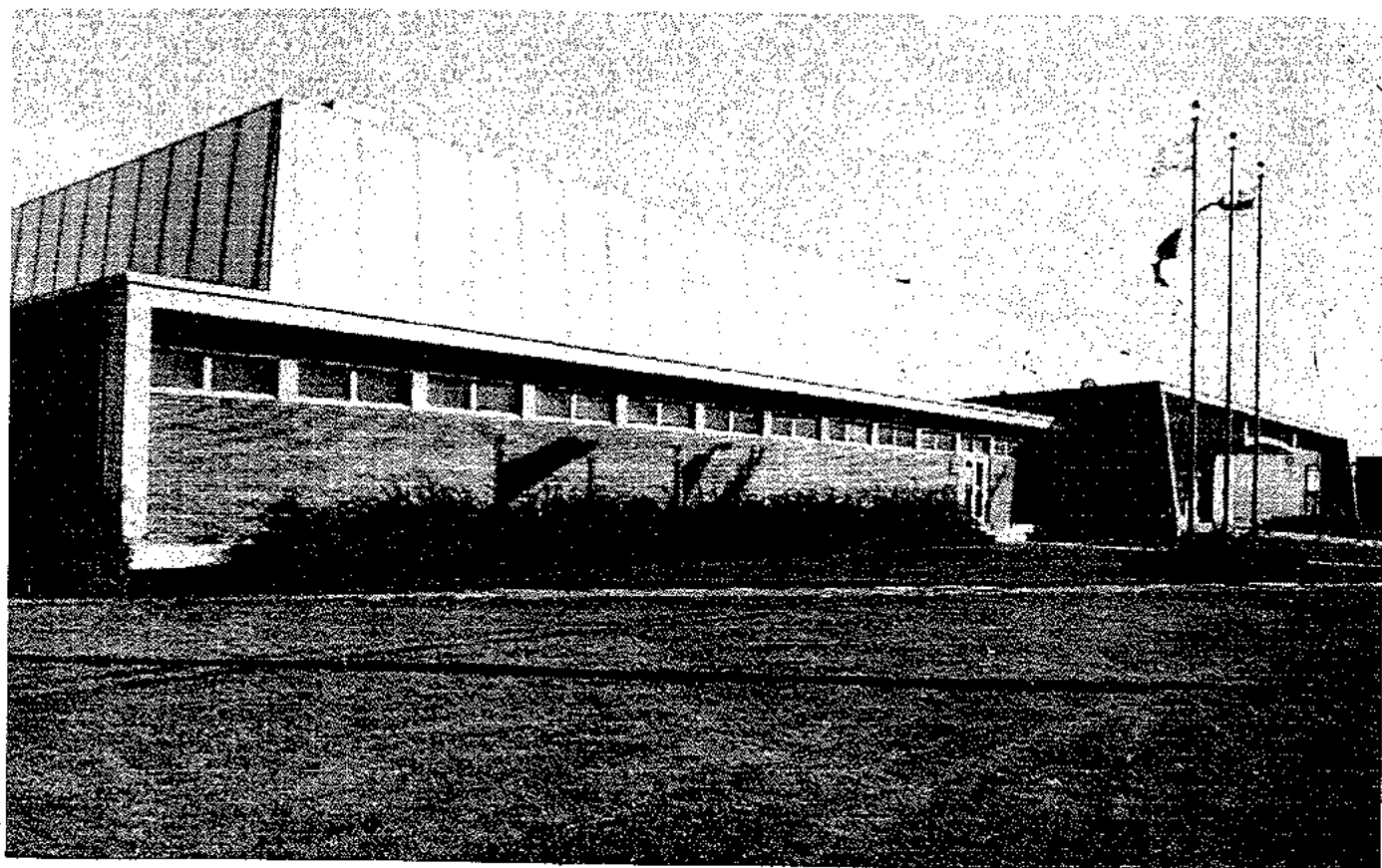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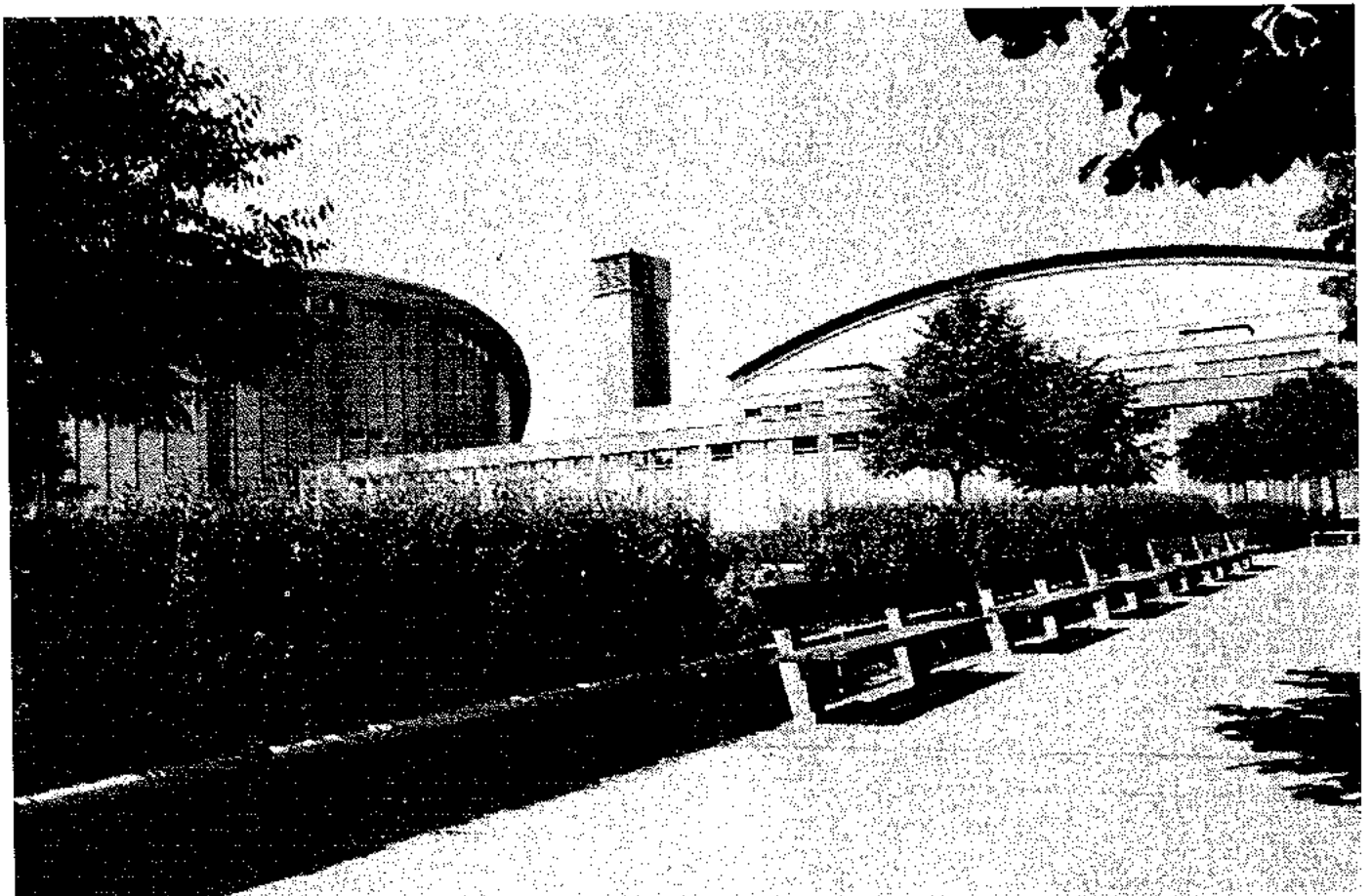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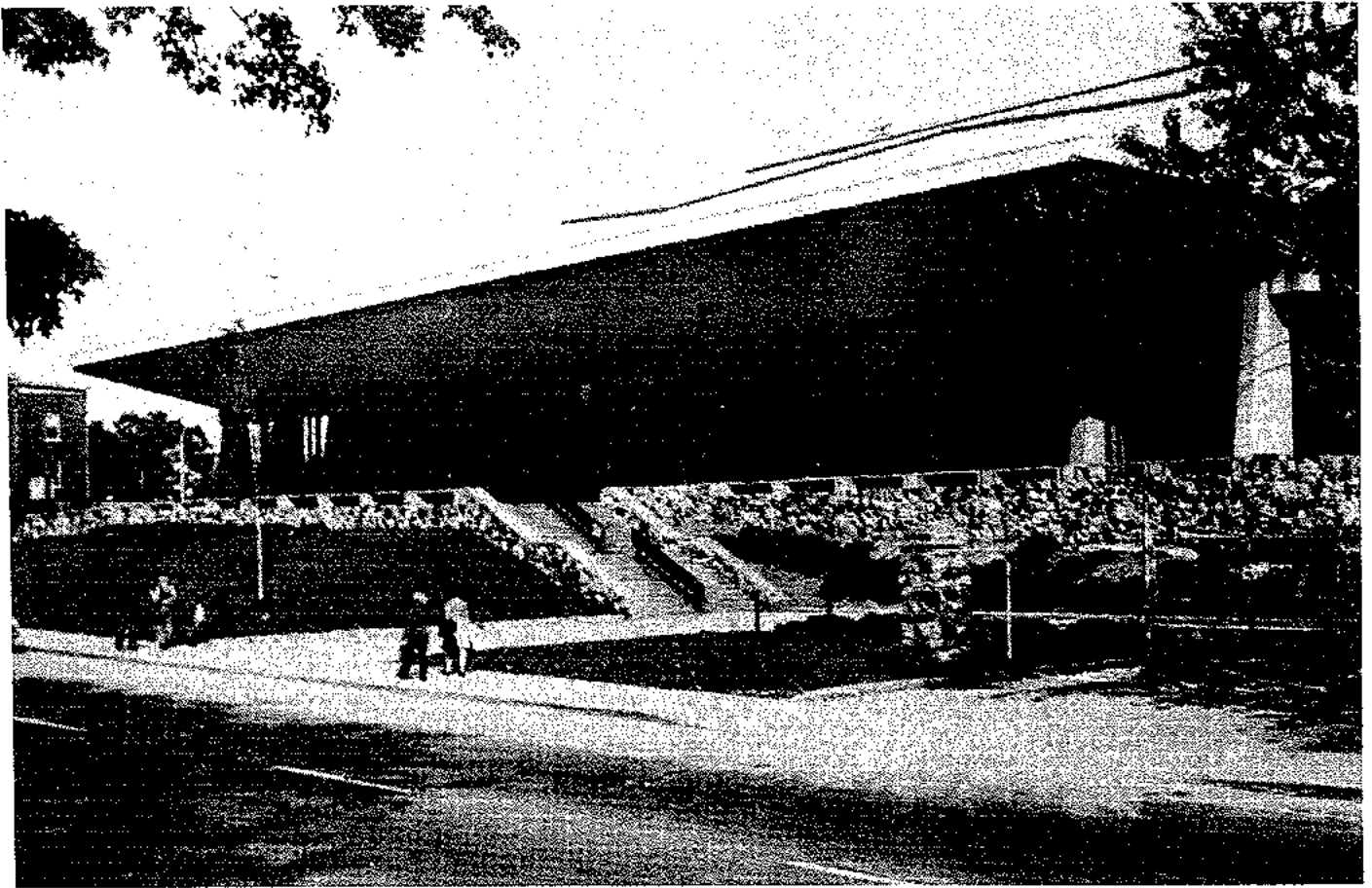




■ 레슬링경기가 개최되는 Maurice Richard Arena (上)  
 ■ 배구경기가 개최되는 Paul Sauve Centre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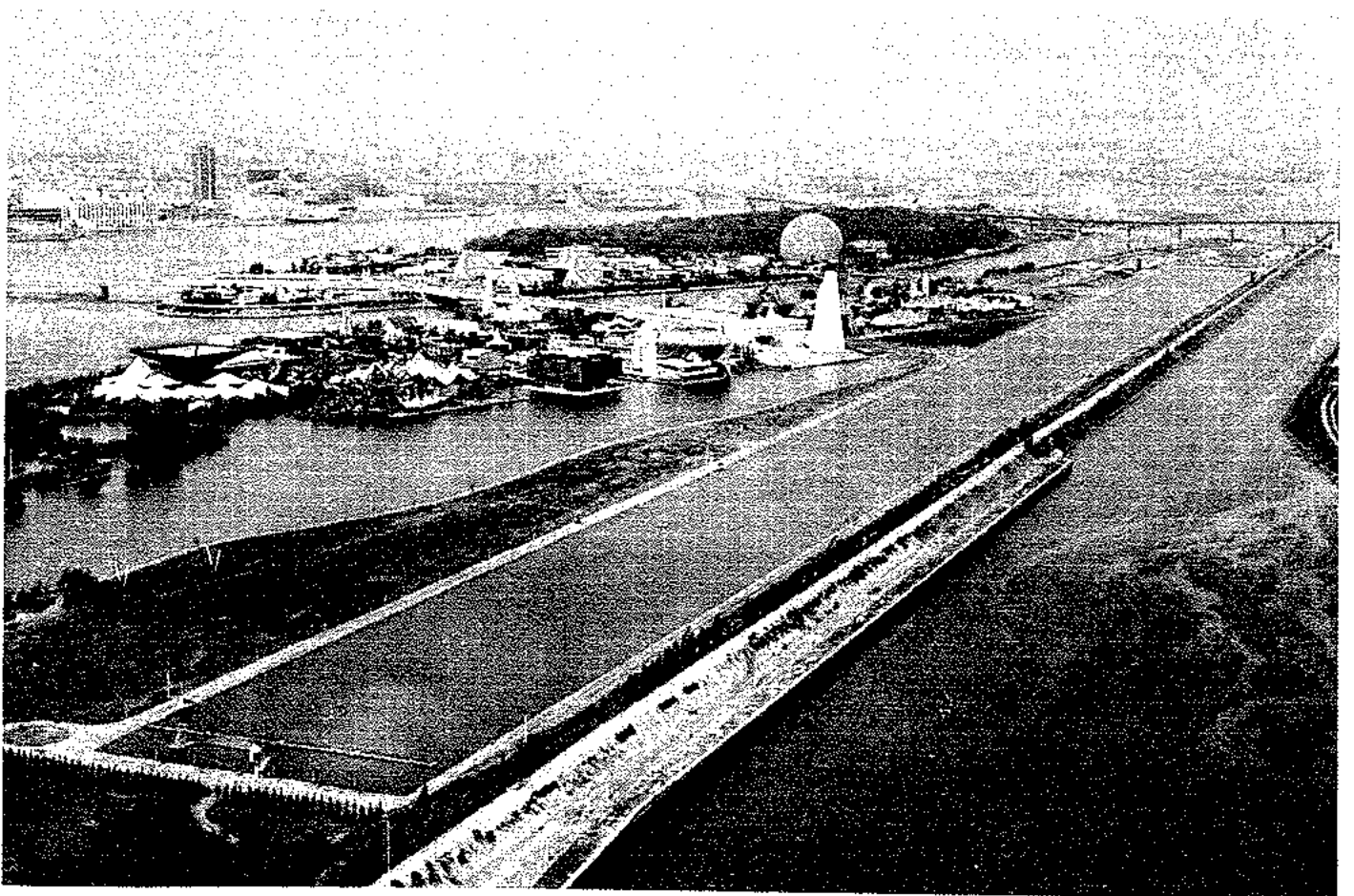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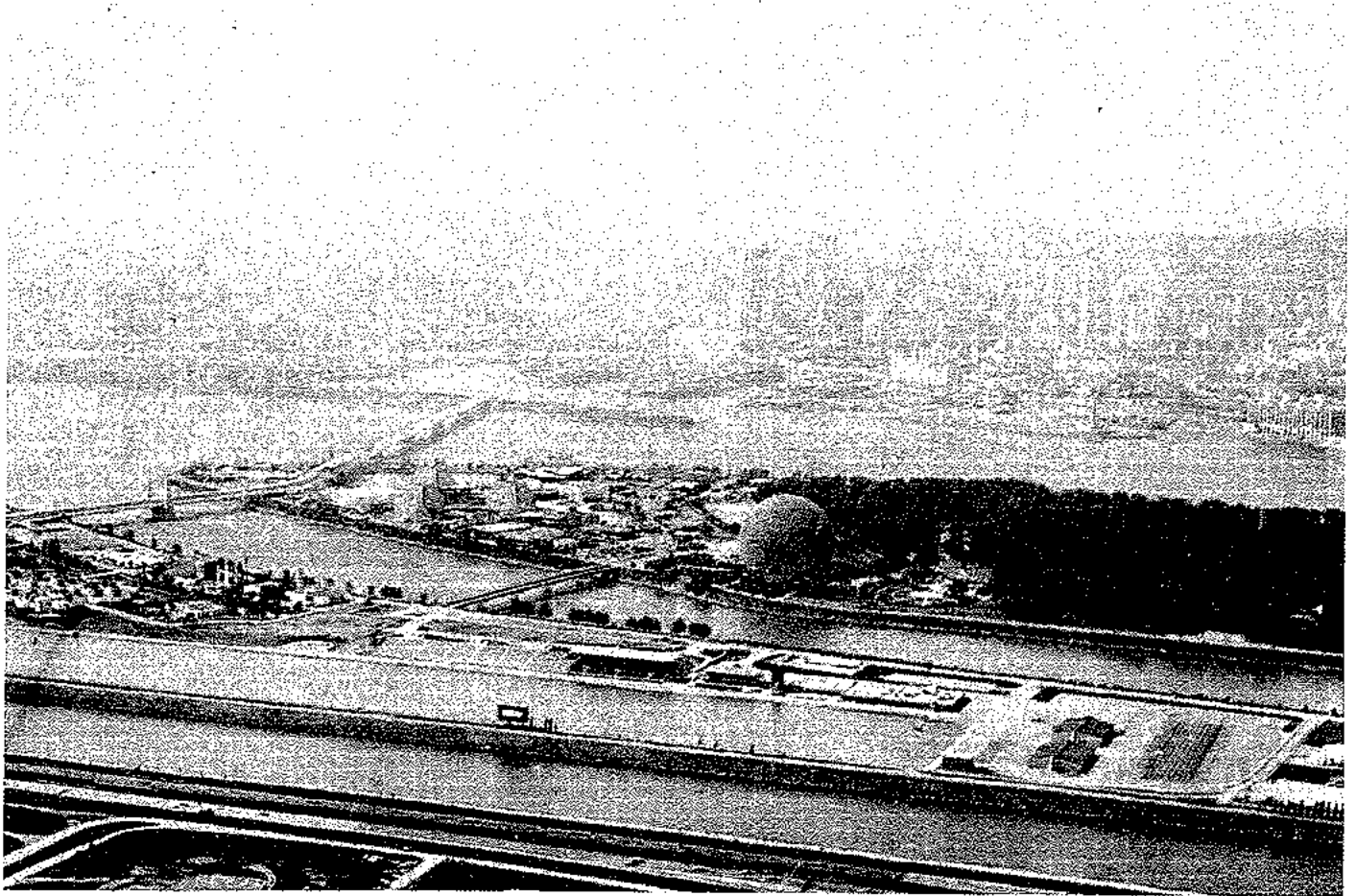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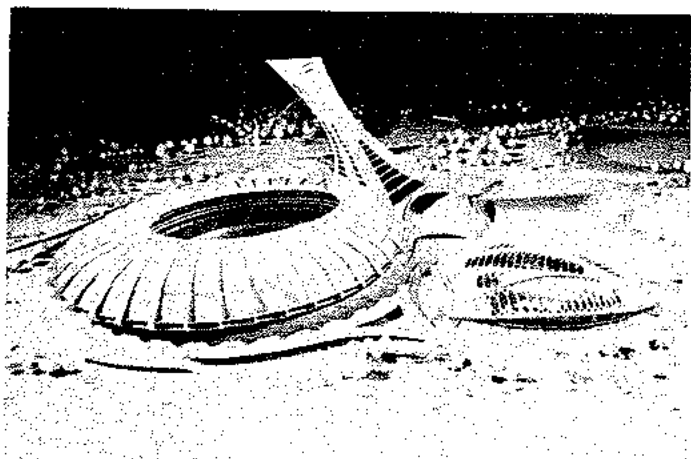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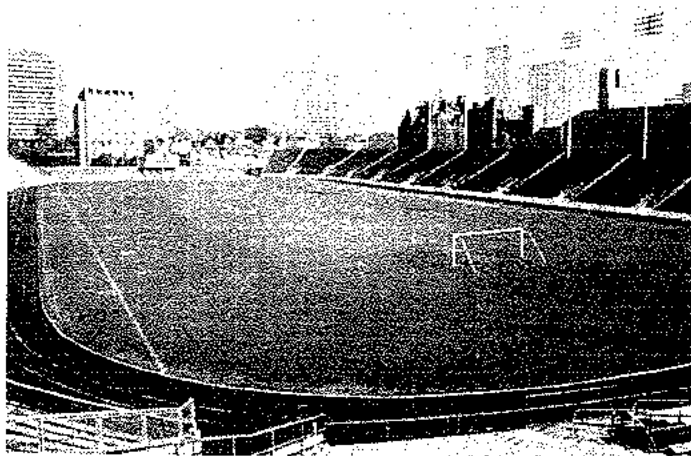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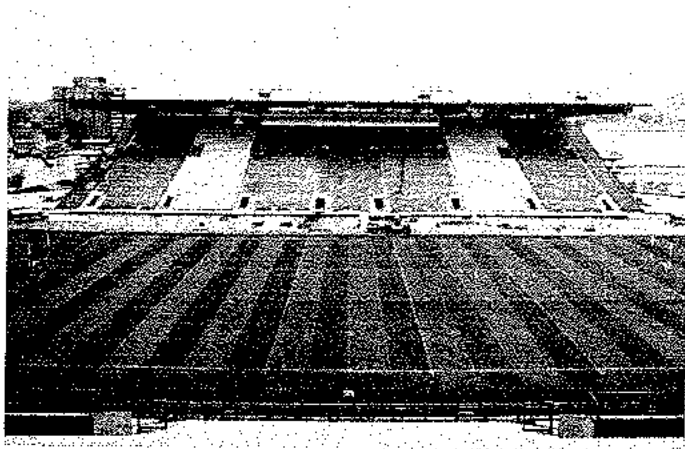
■ 오종경기가 개최되는 Montreal 대학의 실내경기장



■ 레슬링 경기가 개최되는 Maisonneuve Sport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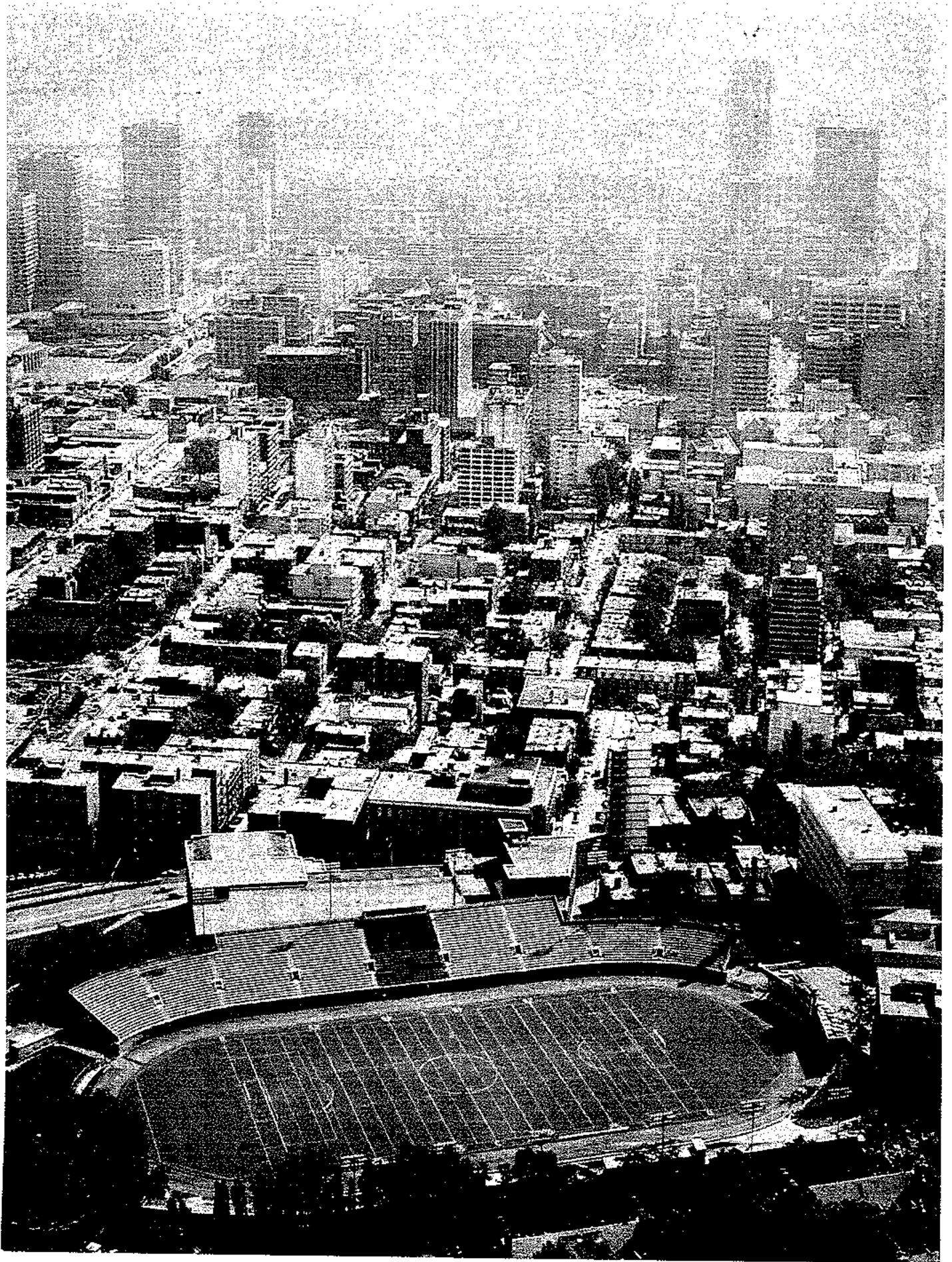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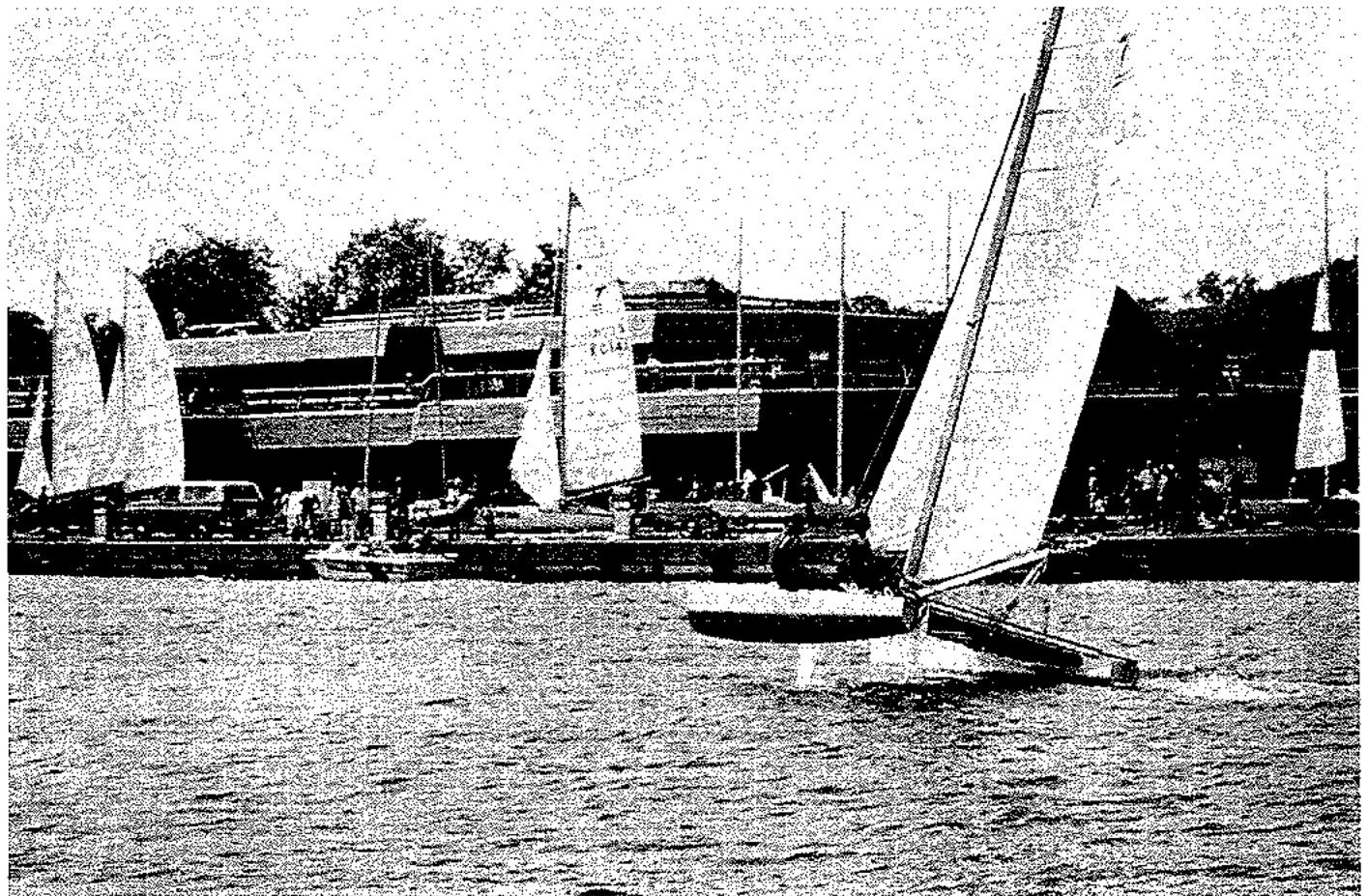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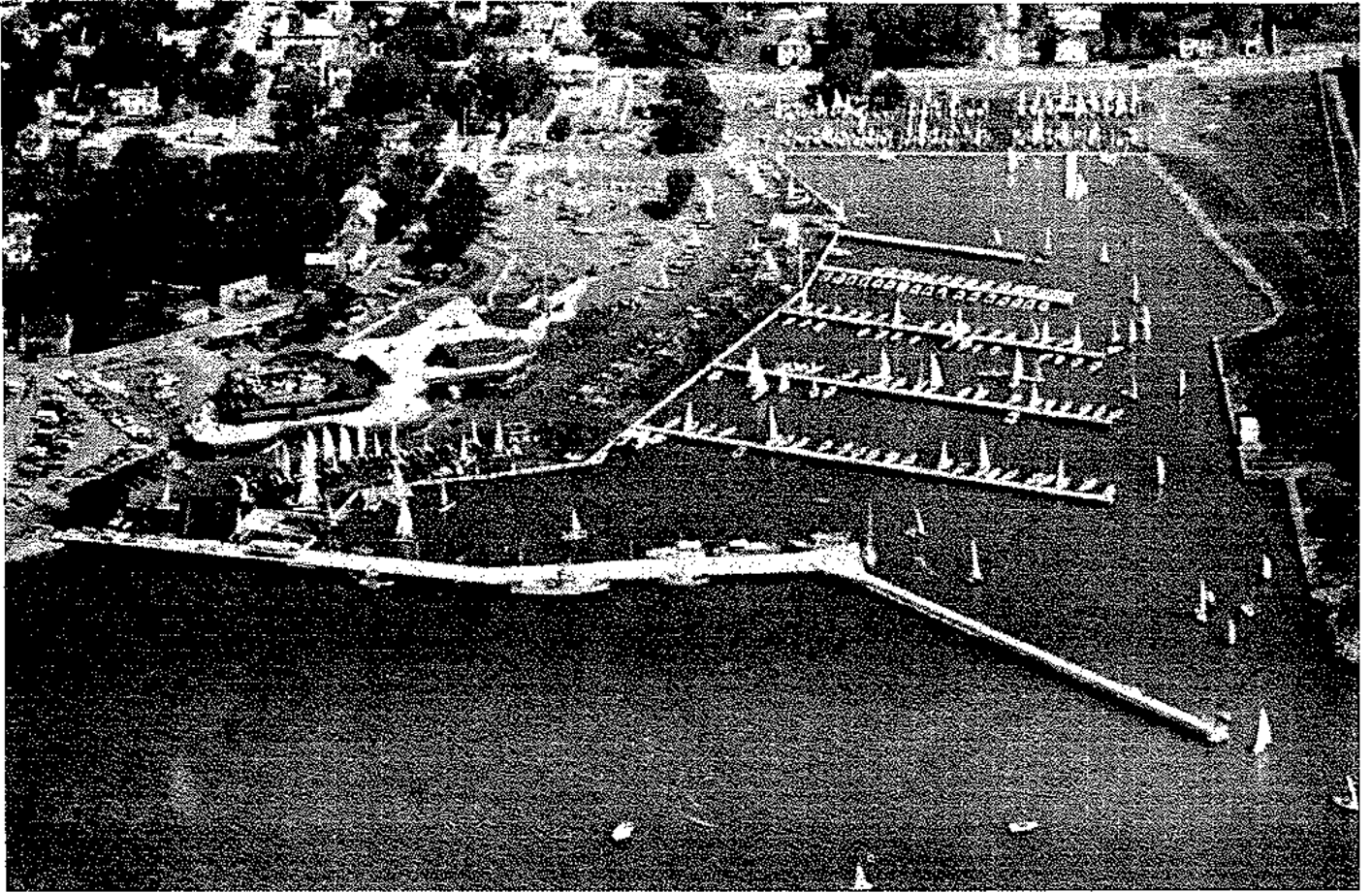


■ 축구경기장 Toronto의 Varsity스타디움(左)와  
Ottawa의 Lans Downe Park(右)

■ 양궁 경기장(上)과 사격장(下)







# 建築法 質疑応答 (第2回)

建設部建築課

解説：韓 奎 峯

建築法 및 同施行令에 關한 地方自治団体・建築主 또는 大韓建築士協會 會員의 質疑에 對하여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과 이에 關聯된 解説을 迅速하게 널리 알 려서 建築法을 올바르게 運用하고 建築主와 建築士에 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爲하여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釋 中 重要な 事項을 「建築士誌」에 連載한다.

편의상 建築法을 “法”으로, 同施行令을 “令”으로表 記한다.

## 13. 隣接한 垜地에 高低差가 있을 때의 日照權 規定 (質疑要旨)

南쪽에 있는 垜地가 北쪽垜地 보다 낮을 때에는 令 第167條의 規定대로 所定の 距離를 拂우지 아니하여 도 北쪽垜地上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日照에 支障이 없 을 것이며 北쪽에 있는 垜地가 낮은 경우에는 南쪽垜 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1/2 또는 1/4 以上の 距離를 垜 地境界線으로부터 拂운다 하더라도 北쪽垜地의 日照 權은 保護할 수 없을 것으로 判斷되는데 이에對한 有 權的 解釋은?

(質疑者：建築主)

## (回信内容)

建築125~9919(76. 5. 20)

南쪽垜地의 地表面이 北쪽垜地의 地表面보다 낮을 때에는 두垜地의 高低差의 1/2이 되는 位置에서 南쪽 垜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높이를 計算하여 그 높이에 따라 垜地境界線에서 拂어야하며

南쪽垜地의 地表面이 北쪽垜地의 地表面보다 높을 경우에는 두垜地의 高低差의 1/2이 되는 位置에서 南 쪽垜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높이를 計算하여 그 높이에 따라 垜地境界線에서 拂어야 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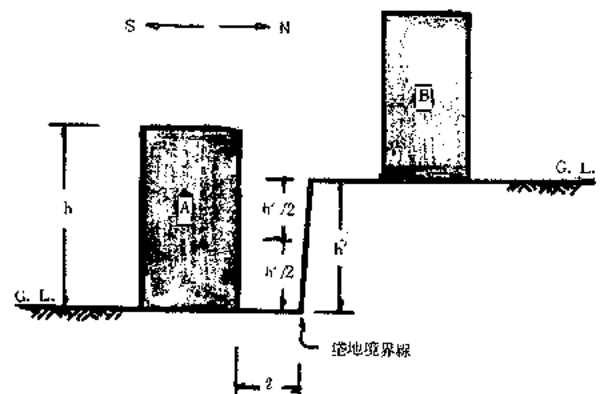
※ 回信公文의 内容中 “垜地의 高低 差에 따른 日 照權” 以外の 部分은 除外한다.

## (解 說)

令第167條와 同第3條第1項 第5号 “나” 目的 規定 에 關聯된 事項이다. 令第167條는 法第41條 第4項을 根據로 한 條文이며 令第3條(建築物의 높이算定方法)

第1項第5号 “나” 目에서

“法 第41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높이 의 算定에 있어서 建築物의 垜地의 地表面과 隣接 垜地의 地表面에 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地表面 의 平均水平面을 地表面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 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h \leq 2\ell$  (A의 높이가 8m 초과일 때)

$h \leq 4\ell$  (A의 높이가 8m 以下일 때) 가 아니라

$(h - \frac{h'}{2}) \leq 2\ell$  이거나

$(h - \frac{h'}{2}) \leq 4\ell$  이면

令第167條의 規定에 適合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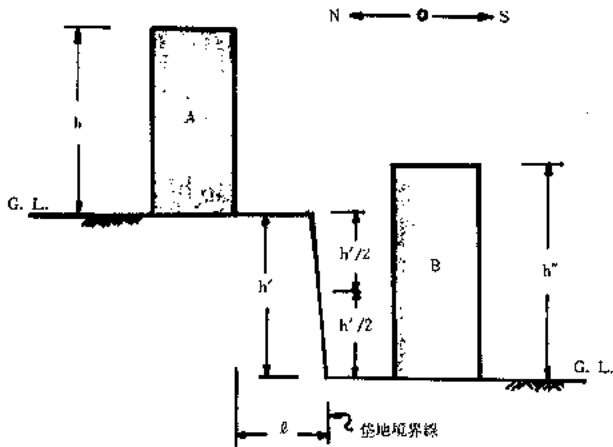
$h \leq 2\ell$  또는

$h \leq 4\ell$  가 아니라

$(h + \frac{h'}{2}) \leq 2\ell$  또는

$(h + \frac{h'}{2}) \leq 4\ell$  이어야

令第167條의 規定에 適合 한 것이다.



14. 用途地域에 不適合한 建築物을 다른 不適合한 建築物로 用途變更할 수 있는지의 可否

(質疑要旨)

① 住居地域內에서 適法 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한 農機具工場을 두부工場으로 用途變更할 수 있는가?

② 위와 같은 農機具工場(140m<sup>2</sup>)을 95 m<sup>2</sup>는 電動機들, 45 m<sup>2</sup>는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할 때에 用途變更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9940(76. 5. 20)

① 質疑①에 對하여

法 第48條의 規定에 依하면 用途變更은 建築物의 建築과 同一하게 보아 當該 用途地域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인지의 可否를 檢討하여 地域·地區의 指定目的에 適合한 用途로 建築物을 使用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工場建築物을 다른 用途(業種을 말함)의 工場으로 用途變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令 第142條 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用途로 用途變更을 할 수 없음

② 質疑②에 對하여

하나의 建築物 또는 同一 垵地안에 있는 2棟以上의 建築物을 電動機를 使用하는 100m<sup>2</sup>未滿의 工場과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하는 50m<sup>2</sup>未滿의 工場으로 区分하여 用途變更을 할 수 없음

工場建築制限規定을 住居地域과 商業地域으로 区分하면

㉔ 住居地域內에서 電動機를 使用하는 工場은 100 m<sup>2</sup>未滿,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할 때에는 50 m<sup>2</sup>未滿인 경우에 만 建築 또는 用途變更이 可能하며

㉕ 商業地域(※準住居地域에서도 商業地內와 같다. ( ) 안은 回信文에 包含된 것은 아님) 內에서는 原動機의 種類에 關係없이 150 m<sup>2</sup>未滿인 경우에 만 可能함

15. 不然 또는 難燃材料로 內裝마감을 하였을 때의 防火區劃面積

(質疑要旨)

令 第91條 但書의 規定에서 “스프링클라 其他 이와 類似한 自動式消化設備을 設置하였을 때로서 그 바닥面積의 2/3를 占한 바닥面積100 m<sup>2</sup>以內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 또는 防火門으로 區劃되어 있는 경우에는 室內에 面하는 部分의 마감을 不然 또는 準不然材料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令 第96條 第1項 第1号 但書의 規定에 依한 防火區劃面積(3,000 m<sup>2</sup>)을 4,500 m<sup>2</sup>로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9946(76. 5. 20)

令 第91條의 規定은 法 第23條의 2의 規定에 依據 特殊建築物(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 除外) 및 5層以上인 建築物의 內裝을 不然 또는 準不然材料로 하도록 하는 規定이며 防火區劃에 對한 規定은 아님으로 令 第96條와는 無關係입니다. 그럼으로 令 第96條 第1項 第1号 但書의 規定에 依한 設備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바닥面積3,000 m<sup>2</sup>以內마다 防火區劃을 하여야 합니다. 끝

(解 說)

令 第23條의 2는 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除外한 特殊建築物과 5層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할 때 防火上 支障이 없도록하기 爲한 室內의 特殊內裝에 關한 規定으로서 令 第96條(防火區劃의 基準)와는 關係가 없다.

特殊內裝마감에 關한 規定

| 対象建築物의 用途                            | 基準面積等                                                                             | 特殊마감을 할 部分                                               | 마감材料                 |
|--------------------------------------|-----------------------------------------------------------------------------------|----------------------------------------------------------|----------------------|
| ㉔ 극장·영화관·연예장·觀覽場·公會堂·集會場 其他와 類似한 建築物 | 客席 또는 集會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 <sup>2</sup> 以上, 但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400m <sup>2</sup> 以上 | ① 居室의 壁(높이1.2m 以上の 部分)·반자(반자돌림대 및 창대 등은 除外)              | ③ 不然材料·準不然材料 또는 難燃材料 |
|                                      |                                                                                   | ② 居室로부터 地上에 通하는 主된 復道·階段 其他 通路의 壁 및 반자(반자돌림대 및 창대 등은 除外) | ④ 不然材料 또는 準不然材料      |

|                                                                                                                       |                                                                 |                           |       |
|-----------------------------------------------------------------------------------------------------------------------|-----------------------------------------------------------------|---------------------------|-------|
| ①<br>百貨店・病院・호텔・旅館・아파트・寄宿舍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                                                                               | 3層以上の 層의 該當用途에 쓰이는 바닥面積의 合計가 200㎡ 以上, 但 主要構造 部가 耐火構造인것은 300㎡ 以上 | ①과 같음                     | ③과 같음 |
|                                                                                                                       |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
| ※ ㉔ 및 ㉕의 경우에도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로서 居室의 바닥面積(스프링크라・自動消防設備을 設置한 때에는 그 바닥面積의 2/3를 除外) 100㎡ 以内마다 耐火構造의 壁・壁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한 경우에는 例外임 |                                                                 |                           |       |
| ㉔ 및 ㉕                                                                                                                 | 居室을 地下層 또는 地下工作物에 設置한 때(面積에 關係없이)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
| ㉔<br>車庫・自動車修理工場・注油所・危險物貯藏庫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                                                                              | (規模에 關係없이)                                                      | 該當用途에 쓰이는 部分 및 通路의 壁 및 반자 | ④와 같음 |
| ㉔<br>㉔・㉕ 및 ㉕ 以外の 建築物                                                                                                  | 5層以上の  바닥面積의 合計가 500㎡ 以上                                        | 居室의 壁 및 반자                | ③과 같음 |
|                                                                                                                       |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

※ ㉔의 경우에는 5層以上の 該當部分에만 不燃・準不燃 또는 難燃材料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建築物 全体의 該當部分에 適用한다.

#### 16. 空地面積의 最少限度 基準에 適合하게 할수 없는 特殊性

##### (質疑要旨)

商業地域内に 있는 8 道路에 接한 空地(147㎡)가 空地의 最少面積(200㎡)에 未達되어 隣近空地를 購入하려고 하나 그 空地가 178㎡로 역시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될 뿐만아니라 空地主가 買賣에 應하지 않아 空地의 追加確保를 할 수 없을때 147㎡의 空地에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 (回信内容)

建築 125~9854(76. 5. 19)

令 第159條의 規定에 依한 商業地域内の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된 空地는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의거 隣 空地와 같이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 建築할 수 있으나, 貴質疑와 같이 隣接한 空地가 하나 뿐이고 그 空地도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고 令 第142條 第11項 第1號의 規定을 適用하여야 建築할 수 있는 178㎡의 空地라면 貴所有인 147㎡ 空地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1號 및 同附則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음.

##### (解 說)

令 第142條 第11項 第1號에서 規定한 “隣接空地에 既存建築物이 있거나 其他 空地의 特殊性”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許可庁이 事例別로 決定할 事項이나 一般의 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周辺에 道路・建築物 및 建築이 禁止된 空地 등으로 둘러싸여 空地가 없을 때

② 隣接한 空地와 高低差가 있어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다고 判斷될 때.

③ 隣接空地主가 買賣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隣接空地도 令 第142條 第11項 第1號를 適用하여야 建築할 수 있는 空地일때

④ 隣接空地를 賣入하므로서 그 隣接空地가 令 第159條의 規定에 不適合하게 될 때

⑤ 隣接空地가 空地이나 이미 建築許可가 된 空地일때

위와같은 경우에는 建築하고자하는 空地가 令 第159條의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의 7/10以上이면 建築許可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7. 停車場用의 空地에 接한 道路의 幅

##### (質疑要旨)

幅 12m 및 4m인 道路에 接한 空地에 延面積 1,000㎡ 以上の 事務室用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때 建築法施行規則에서 定한 “停車場의 通路의 幅 5m 以上(出入口가 1個일때)으로 하여야 한다”는 規定에 불구하고 幅 4m 道路를 停車場의 進入道路로 하여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 (回信内容)

建築 125~10007(76. 5. 21)

令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停車場의 通路等の 基準은 아직 建築法 施行規則으로 制定 公布되지 않았으나 “停車場의 出入口가 1個뿐일때 通路의 幅은 5m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고 施行規則에 規定한다 하더라도 이는 停車場内の 通路에 關한 規定이나, 法 第27條 第2項의 規定에 車庫의 空地에 接하는 道路는 大統領 令으로 定하도록하고 令 第139條 第1號에서 “空地는 6m 以上 道路에 6m 以上 接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貴質疑와 같은 경우 建築이 不可能 합니다.

##### (解 說)

令 第27條 第2項에서 “特殊建築物(火葬場・屠殺場・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除外한다)이나 3層以上 또는 延面積 1,000㎡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는 空地와 車庫用의 空地가 隣接하는 道路의 幅・그 空地가 道路에 接



| 規模 또는 用途                                                              | 垆地에 接하는 道路의 幅                                                                | 垆地가 道路에 接하는  길이          |
|-----------------------------------------------------------------------|------------------------------------------------------------------------------|--------------------------|
| 正面積1,000m <sup>2</sup> 以上の 建築物                                        | 6m以上                                                                         | 6m 以上<br>또는4m以上<br>을 2個所 |
| 百貨店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로 그 販売場의 바닥面積合計가 3,000m <sup>2</sup> 以上인 建築物 | 垆地の 2面 以上이 道路 또는 空地(建築이 禁止된 空地를 말함)에 接하거나 垆地둘레  길의 1/2 以上이 道路 또는 空地에 接하여야 함. |                          |

하는 길이는 大統領 令으로 定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고 令 第139條에서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施行規則에서 定하는 停車場의 通路의 幅에 關係없이 停車場用의 垆地는 令 第139條 第2項의 規定에 適合하여야 한다.

#### 18. 農産物 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 用途地域 (質疑要旨)

生産綠地地域内に 糧穀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全羅南道)

##### (回信内容)

建築 444,1-10008(76. 5.21)

(令 第149條 第8項(別表9)에 規定한 “農業用 建築物”에는 糧穀保管倉庫가 包含되므로 生産綠地地域内에서 建築할 수 있음. 끝.

##### (解 說)

大統領令 第8090号(76. 4. 15) 改正建築法施行令 制定當時 当該地域에서 生産되는 農産物을 保管하기 爲한 倉庫는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에 建築할 수 있게 하려는 趣旨였다.

農産物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 用途地域.

- ① 邑・面都市計劃区域内의 住居地域
- ② 準住居地域
- ③ 商業地域
- ④ 工業地域
- ⑤ 準工業地域
- ⑥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

#### 19. 建築線과 道路사이의 垆地面積 (質疑要旨)

垆地面積의 最少限度에는 未達되지만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를 適用하여 建築할 수 있는 145.2m<sup>2</sup>의 垆地(商業地域에 8m 道路에 接한 垆地임)의 側面에 事實上 使用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道路가 있을때 이 막다른 도로의 所要幅(3m)의 1/2 만큼 道路中心線으로부터

더 띄어서 建築하여야 함으로 6.75 m<sup>2</sup>가 道路에 들어가고 垆地는 138.45 m<sup>2</sup>가 남는다. 이와같이 불 되는 경우에 同垆地上에 建築할 수 없는가? (質疑者 建築主)

##### (回信内容)

建築 125~10213(76. 5.24)

質疑上의 막다른 道路가 실제로 使用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廢道되기 前에는 令 第138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所要幅의 1/2만큼 막다른 道路의 中心線에서 후퇴하여 建築하여야 함으로 貴所有의 垆地는 令 第159條 또는 第142條 第11項 第1号에 適合하지 아니하여 建築할 수 없습니다.

##### (解 說)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에 依하여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할 수 있는 垆地가 令 第2條 第1項 第1号 및 第138條의 規定때문에, 더우기 1.55 m<sup>2</sup>가 모자라서 建築할 수 가 없는 애처로운 例이다.

法 第30條 第1項 但書에서

① 幅4m 以下の 道路(建築法에 적합한 道路를 뜻하는것은 아님)에 接한 垆地는 그 道路의 中心線에서 2m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하여야 하며

② 막다른 道路에 接한 垆地는 그 막다른 道路의 길이에 따라 令 第138條에서 規定하는 当該 所要幅의 1/2만큼 막다른 道路의 中心線에서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③ 道路의 모퉁이에 있는 垆地는 令 第140條의 2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라 建築線을 定하도록 規定하였다. 이와같이 法 第3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定해진 建築線과 道路와의 사이에 있는 垆地의 面積은 令 第159條의 規定에 依한 垆地面積에 算入하지 않도록 規定(令 第3條 第1号)하고 있다.

나시말해서 道路와 建築線에關한 規定(法 第2條 第15号・法 第30條・令 第3條 第1号・令 第111條・令 第138條 및 令 第140條의 2)으로 因하여 垆地面積의 最少限度 또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에 不適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것이다.

#### 20. 既存建築物이 있는 垆地の 分割 (質疑要旨)

共同所有인 垆地 100.3坪에 74年10月 建築許可를 받아 共同所有者 2人이 各各 1棟式 建築하였는데 垆地의 分割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 125~10212(76. 5. 24)

共同所有인 100.3坪上에 共同所有者 各者가 別棟의 建築物을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75. 12. 31以前에 建築한 경우에는 法律 第2852号(75. 12. 31) 建築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據 令 第159條의 規定에 關係 없이 土地의 分割을 할 수 있습니다. 끝

21. 令 第 167條 第 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建築 (質疑要旨)

① 基準未達되는 垜地로서 令 附則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할때 4層以上の 建築物만이 建築이 許可되는 지의 如否.

② 所有者가 各各 다른 2個의 垜地에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때 各各 所有者別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 지

③ 2個의 垜地에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경우 地下層을 各垜地別로 区分하여 地下層設置基準에 適合하게 地下層을 設置할 수 있는지의 如否.

④ 2個의 垜地面積의 合計가 垜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나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에 該當될때 建築이 可能한지의 如否.

(質疑者: 建築士協會)

(回信内容)

建築 125~10571(76. 5. 28)

① 質疑①에 對하여

令 附則 第4項의 規定은 建築物의 層數에 關係없이 適用하는것임.

② 質疑②에 對하여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에는 各垜地의 所有者는 各各 따로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으나 市長·郡守가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서 外觀이 都市美觀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建築委員會가 設置된 市·郡은 建築委員會에서 事前 審議)하여야 許可하는 것이므로 各垜地의 所有者는 同時에 建築許可를 申請하여야 함.

③ 質疑③에 對하여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하는 경우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防火壁으로 区劃되고 建築主가 다른 別個의 建築物이므로 各各 그 正面積에 따라 令 第113條의 規定을 適用하는것임.

④ 質疑④에 對하여

商業地域內에 있는 두필지의 인접한 空垜地 周途에 郎存建築物 등이 있어 두垜地의 合計面積이 200m<sup>2</sup> 以上으로 하기가 不可하나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에 적합할 경우에는.

⑤ 두垜地의 所有者가 共同建築主로서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를 적용하여 하나의 建築物로 建築하거나.

⑥ 隣接既存建築物이 있는 垜地와 合하여 200m<sup>2</sup> 以上이 되면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據 建築할 수 있습니다.

(解 說)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2個 以上の 連接한 垜地에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서 美的인 調和를 이루게 하고 “外觀上 零細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도록”하려는 垜地面積의 最少限序 規定의 目的을 達成하면 同規定의 目的하는바는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垜地境界線 附近의 壁·기둥·보를 共用으로 하여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 되었다 하더라도 法第39條의 2의 規定에 적법한 別個의 垜地에 各各 다른 建築主가 建築한 것임으로

建蔽率과 容積率은 各各의 垜地의 面積과 그 垜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建築面積 및 延面積에 對하여.

地下層의 設置基準을 적용함에도 隣接한 建築物과는 關係없이 自己建築物의 延面積에 따라 令 第113條의 規定을 適用하면 될 것이다.

※ 令 第142條 第11項 第2号에서 “垜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는 垜地라 하더라도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하는 各 垜地는 法 第39條의 2의 規定에 適合한 垜地로 規定”하였으며 令 附則 第4項에서도 “令 第142條 第11項을 準用” 한다고 明確하게 規定하였다.

22. 公布日로 부터 施行하는 法令의 施行日

(質疑要旨)

改下建築法施行令 公布(1973. 9. 1)以前인

8. 30日字로 住宅 및 旅館用途의 建築許可 申請書를 接受하여 1973. 8. 31 결재를 필하였으나 文書 統制日字(許可日字)가 73. 9. 3이며 74. 1. 30에 竣工檢査를 필한 建築物에 對하여 宿泊業營業許可를 할 수 있는지의 如否.

(質疑者: 서울特別市)

(回信内容)

建築 4441~11073(76. 6. 4)

① 大統領令 第6834号(73. 9. 1) 建築法施行令이 公布 施行되기 以前인 73. 8. 31에 建築許可에 對한 결재를 필하고 73. 9. 3 施行하여 73. 1. 30 許可上 用途인 旅館으로 竣工檢査를 필한 建築物은 建築許可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竣工檢査를 필하였으므로 現在까지는

旅館用途의 適法한 建築物이라 할 수 있음.

② 貴質疑와 같은경우 旅館營業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法院 判例 70누76(70. 7. 21) 과 70누26(70. 10. 23)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解 說)

法令의 附則에 施行日을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고 하였을때 公布한 날로부터 官報가 印刷 되어 配布될때까지는 時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時差가 생길 경우에 許可庁이 改正된 內容을 모르고 改正된 法令에 適合하지 아니한 建築許可를 하였을 때 이 建築許可가 適法한 建築許可냐에 대하여는 官報가 實際에 있어서 発行 普及된 日字를 施行日로 하여야 할 것이다(參考: 回信文의 大法院 判例 또는 金道利 著 一般行政法論(上))

그리고 質疑上의 建築物은 許可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竣工檢査를 필한 建築物임으로 適法하게 建築한 旅館用途의 建築物이며 改正된 施行令에서 “住居地域 內에 旅館의 建築을 不許하고 있다”하더라도 旅館營業許可는 할 수 있을 것이다.

23. 自然綠地 地域에서의 待避所 建築

(質疑要旨)

自然綠地地域에 있는 既存工場에 友共待避所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11095(76. 6. 4)

建築當時의 法令에 適法하게 建築된 既存建築物이 있는 垜地안이거나 令 第142條 第8項의 規定에 適合한 建築物을 建築하는 垜地안에 友共待避所를 建築하는 경우라면 自然綠地地域內에서 그 建築이 可能 합니다.

(解 說)

어느 地域·地區이건 간에 그 地域·地區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나 現在의 用途制限에 不適合하다 하더라도 그 建築當時의 規定에 適法한 建築物이 있는 垜地안에서는 容積率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地下에 反共待避所를 建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地下待避所가 地面面 위로 올라온 높이가 1m를 초과할 때에는 建蔽率에 算入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4. 새마을 會館의 建築

(質疑要旨)

(註) 새마을 會館은 特殊建築物로서 建築許可事項이므로 設計費를 引下 調整하여 달라는 등의 內務部長官의 協助 要請事項임.

內務部의 協助要請內容

① 새마을會館과 새마을 共同倉庫의 標準設計圖 作成 普及.

② 設計費의 引下 調整

(回信內容)

建築 444. 1~10225(76. 5. 24)

① 새마을 會館은 法 第2條 第3號의 規定에 依한 特殊建築物이 아님으로 法 第5條 第1項 第1號에는 該當되지 아니하며 建築하려는 場所가 法 第5條 第1項 第4號에서 定한 地域·地區·區域內가 아니고 同條 第1項 第2號 내지 第3號에 該當되지 아니하면 建築許可對象이 아닙니다.

② 法 第53條의 6의 規定에 依하면 建築士法 第5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標準設計圖書는 住宅에 限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建築士法 第5條 및 第22條를 適用하지 아니하는 새마을會館의 標準設計圖 作成이 不可합니다.

(解 說)

새마을 會館은 常時 集會場의 用途로 使用하는 建築物이 아니라 마을事務室 予備軍事務室等 多用途의 建築物임으로 法 第2條 第3號에 規定한 集會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會館은 法 第5條 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該當되지 아니하면 都市計劃區域·會 第4條 第1項 各號에 該當되는 區域이나 地域 및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依한 工業地域·聚落地域이 아닌 場所에서 建築할 때에는 許可없이 建築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共同倉庫인 경우는 特殊建築物 이기 때문에 都市計劃區域이나 建築許可對象地가 아닌 場所에서 建築한다 하더라도 그 延面積이 100㎡ 이상이면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하여야 한다.

25. 主用途의 建築物이 用途制限 規定에 不適合할때 附屬 建物 (適合한)의 増築

(質疑要旨)

用途地域에 不適合한 建築物이 있는 垜地안에 當該 用途地域에 適合한 用途의 附屬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때 그 建築이 可能한가?

(質疑者 建築士)

(回信內容)

建築 125~11265(76. 6. 7)

令 第142條의 規定에 依據 用途制限에 不適合한 既存建築物에 附屬된 附屬建築物이 同 地域의 用途制限에 適合한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主된 建築物(用途地域에 不適合한 것)과 同一垜地內에 있는 用途上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면 増築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건설부제172호

1976. 6. 21.

## 목 차

- 제1조 (건축허가 신청등)
- 제2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 제3조 (중축신고등)
- 제4조 (위법 사항의 보고)
- 제5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 제6조 (가사용 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
- 제6조의2 (건축허가 대장의 서식)
- 제7조 (중간검사)
- 제8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상태보고)
- 제9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제10조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 제11조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 제12조 (위험물의 저장·처리 시설)
- 제13조 (위법 건축물에 대한 표지)
-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등의 보고)
- 제15조 (신분 증명서의 서식)
- 제16조 (가설 건축물)
-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 허가신청 등)
- 제18조 (건축허가 표지의 설치)
- 제19조 (주차장의 통로 등)
- 제20조 (배연 설비)
- 제21조 (헬리콥터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 제23조 (공장의 식수 등)

## — 부 칙 —

제1조 (건축허가 신청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와 다음표의 (1) 난에 기재하는 도서(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배치도에 한한다.) 및 (2) 난 내지(2) 난 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난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울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건축물의종별            | 도서의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1) | 건축허가를받아야 할 모든 건축물 | 부근안내도       | 임의 | 방위, 도로 및 목표가되는 지물                                                                                                                                           |
|     |                   | 배치도         | 임의 | 1. 축척 및 방위<br>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경계선<br>3.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br>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br>5. 담·옹벽·우물·오물·정화조·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
|     |                   | 토지굴착부분정리계획도 | 임의 | 1. 축척<br>2. 토지의 굴착부분의정리 계획                                                                                                                                  |

|     |                                       |                     |                                     |                                                                                                                                                                                                     |
|-----|---------------------------------------|---------------------|-------------------------------------|-----------------------------------------------------------------------------------------------------------------------------------------------------------------------------------------------------|
|     |                                       | 각층평면도               | 1/50<br>내지<br>1/300                 | 1. 축척 및 방위<br>2. 각실의 용도<br>3. 벽의위치, 재료 및 두께<br>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br>5. 각통계단 또는 피난 계단의 위치 및 폭<br>6. 복도의 위치 및 폭<br>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 기계실, 기계배치와 승강장의 위치 및 폭.<br>8. 기타 승강기·에스카레이타의 위치 기계실 및 기계배치.         |
|     |                                       | 오물정화조의구조, 2면이상의 입면도 | 1/30<br>1/50<br>1/50<br>내지<br>1/300 | 오물정화조의 평면상세·종횡 단면상세<br>1. 축척<br>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구조.<br>3. 굴뚝의 옥상돌출부<br>4. 국기계양대                                                                                                            |
| (2) | 법제 5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면이상의 단면도 및 부분상세도   | 1/20 또는 1/30                        | 1. 축척<br>2. 지실의 바닥높이·건축물의 높이·각층의 반자 높이.<br>3. 벽의 재료 및 높이<br>4.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의 부분 상세<br>5.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br>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br>7. 계단 또는 경사로의 부분상세<br>8. 불임들의 두께 및 접합 방법<br>9. 연소의 부분상세<br>10. 단의 단면상세 |
| (3) | 영제 23 조 제 5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구조도                 | 1/50<br>내지<br>1/200                 | 1. 축척<br>2.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배기 평면<br>3.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br>4. 철골재의 결합부분 상세<br>5. 철근콘크리트의 라멘상세 구조내력상 주                                                                                               |

|     |                          |                    |                                    |                                                                                                                                                                             |
|-----|--------------------------|--------------------|------------------------------------|-----------------------------------------------------------------------------------------------------------------------------------------------------------------------------|
|     |                          | 구조제산서              |                                    | 정요한 부분의응력 산정 및 단면 산정과경                                                                                                                                                      |
| (4) | 영제 13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비상조명장치 배선도         | 1/50<br>내지<br>1/300                | 1. 축척<br>2. 비상전원의 위치 및 배선                                                                                                                                                   |
| (5) | 영제 13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배관배선도<br><br>부분상세도 | 1/50<br>내지<br>1/300<br><br>1/30 이상 | 배관 배선 및 접지시설<br><br>1. 인입관로상세 및 인입 판단면<br>2. 단자함의 규격, 배관상세 및 단자반 상세<br>3. 플 박스 및 탁트의 상세                                                                                     |
| (6) | 영제 9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실 내 마 감 료          |                                    | 반자 및 벽의 마감재                                                                                                                                                                 |
| (7) | 영제 13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비상용승강기 상세도         | 1/50 이상                            |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상세                                                                                                                                                         |
| (8) |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설비도              | 임의                                 | 승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 기타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구조                                                                                                                                          |
| (9) | 소방관서장의를 요하는 건축물          | 소 방 설 비 도          | 임의                                 | 옥내 소화전설비·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물연성가스·소화설비·중발액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차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상세 |

| 구분   | 건축물의<br>종<br>별                                  | 도서의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10) | 영제11조<br>제 3 항<br>에해당하<br>는건축물                  | 해리포트설<br>치도 | 임의                  | 1. 축척·위치·평면·<br>단면 및 표지 등,<br>2. 부근의 건축물 또<br>는 구조물의 높이를표<br>시한 현황  |
| (11) | 영제168<br>조의 3 에<br>해당하는<br>건축물                  | 식수등의계<br>획도 | 임의                  | 1. 축척<br>2. 식수평면계획·식<br>수 면적 계산표<br>3. 수종·수형·수목의<br>규격<br>4. 식수공정계획 |
| (12) | 법제22조<br>의 2 의규<br>정에의해<br>여주차장<br>을설치하<br>는건축물 | 주차장<br>평면도  | 1/50-<br>1/300<br>— | 1. 축척·위치<br>2. 주차장 평면<br>3. 도로·통로 및 출<br>입구의 위치와 폭.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 되어야 할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26조 제 3 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제 1 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조(건축시행서등의 서식)** ① 영 제 6 조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 1 호서식 또는 별지 제 1 - 2 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분에 소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 영 제 6 조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의 통지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건축불허가 통지서로 한다.

**제 3 조(증축신고등)** ① 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및 영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개축)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 1 항의 건축(증축·개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개축) 신고증을 잘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

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 조제 1 항 및 영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 5 호 서식에 또는 별지 제 5 - 2 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6 호서식 또는 별지 제 6 - 2 호서식에 의한 준공 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 7 조제 2 항 및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7 호서식 또는 별지 제 7 - 2 호서식과 같다.

**제 6 조(가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 조 제 3 항 단서 및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요청은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 9 호서식과 같다.

**제 6 조의 2 (건축허가대 의 서식)**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장은 별지 제 9 - 2 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중간검사)** ① 법 제 7 조의 2 및 영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 1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 법 제 7 조의 3 제 2 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매 2 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1 급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층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 후의 마감재로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입면도·단면도

제9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1조제 1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1조 각항에 제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10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법 제 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착부분은 그 경사도가 굴착유형 및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제기하는 비율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돌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할 것. 다만, 시장·군수는 손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축을 쌓게 하거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굴착유형 | 토 질              | 경사도     |
|------|------------------|---------|
| 절 토  | 연암 및 이와 유사한 토질   | 1 : 0.5 |
|      | 모래 및 이와 유사한 토질   | 1 : 1.5 |
|      | 모래진흙 및 이와 유사한 토질 | 1 : 1   |
|      | 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 1 : 1.5 |
| 성 토  | 모든 토질에 공통        | 1 : 1.5 |

2. 제 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석축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제기하는 기준 이하일 것.

| 석축높이<br>구분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 멧쌓기 절토     | 1 : 0.25 | 1 : 0.30 | -        |
| 성토         | 1 : 0.30 | 1 : 0.35 | -        |
| 칼쌓기 절토     | 1 : 0.20 | 1 : 0.25 | 1 : 0.30 |
| 성토         | 1 : 0.25 | 1 : 0.30 | 1 : 0.35 |

3.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통돌 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제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단위 : 센티미터)

| 석축높이<br>구분 | 1미터이상<br>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 멧 쌓 기      | 25               | 35    | 35    |
| 칼 쌓 기      | 25               | 30    | 35    |

나. 석축의 뒤통돌부분의 두께

(단위 : 센티미터)

| 석축높이<br>구분 | 1미터이상<br>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 성토         | 상부두께 20          | 20    | 20    |
|            | 하부두께 30          | 45    | 60    |
| 절토         | 상하부 두께 30        |       |       |

4.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 건물측 외벽면에서 석축 연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에 제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 1 층    | 2 층  | 3 층 이상 |
|----------|--------|------|--------|
| 떨어져 할 거리 | 1.5 미터 | 2 미터 | 3 미터   |

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철관·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버림콘크리트 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물탈시공을 함으로서 시장·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6.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 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줄눈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 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굴착 부분면적의 5분의 1이상인 면적의 단을 지을 것.

다만, 시장·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경사도·보강구조물의 안정성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한 수로부분을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디부치기로 환경정리 (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 제 1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도시멘트관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계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부분
5. 전선·배전판·스위치·콘센트·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샷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슬레이트관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① 영 제142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2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동표에 제기하는 수량의 2배 (석유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인 수량의 물품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저장시설을 말한다.

② 동일 대지안에서 2종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수량의 산정기준에 관여하는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 법 제42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 제 2 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 15호 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홍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

② 법 제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등)** ①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에 제기하는 공작물 (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축조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에 제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의 종류    | 표시 하여야 할 사항                                       |
|-----------|---------------------------------------------------|
| 부근안내도및배치도 | 1. 축적·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br>2. 대지경계선과 그 안의 공작물의 위치 |
| 입 면 도     | 1. 축척<br>2. 공작물의 높이·재료의 종별 및 치수                   |
| 단 면 도     | 1. 축척<br>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
| 구 조 상 세 도 | 1. 축척<br>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
| 구 조 계 산 서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산정 및 단면산정과정                      |

②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에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 및 도서중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것은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서의 부분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의 설치)**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장의 통로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기준 면적 이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 부분의 장·단변중 1변 이상이 통로(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통로의 폭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제기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미터)

| 주차형식    | 통로            | 비           |
|---------|---------------|-------------|
|         | 출입구가 2개 이상일 때 | 출입구가 1개 일 때 |
| 평행주차    | 3.5           | 5.0         |
| 직각주차    | 7.6           | 7.6         |
| 45도대향주차 | 4.7           | 5.0         |
| 60도대향주차 | 6.0           | 6.0         |
| 교차주차    | 4.7           | 5.0         |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의 배연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 부속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할 것.
2.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되,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배연구 및 풍도는 불연재로 하고, 화재 발생시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외기 또는 굴뚝(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4. 배연구에는 비상전원이 설비된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수동기동 장치로 하거나 연감장치에 의한 자동기동 장치로 할 것.
6. 맴파를 설치할 때에는 배연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장치로 하되,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1조 (해리콤팩트 이착륙 시설 설치 기준)**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명구출을 위한 해리콤팩트 이착륙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 부터 변경 12미터 이내에는 해리콤팩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난간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H"표지를 백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 1.5센티미터 두께의 백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4. 착륙대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 등을 착륙대 주변에 6개 이상 설치하되 해리콤팩트의 착이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표에 제기하는 기준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실면적의<br>합계<br>구분  | 3,300평방미터 미만 | 3,300평방미터 이상<br>6,600평방미터 미만 | 6,600평방미터 이상                |
|--------------------|--------------|------------------------------|-----------------------------|
| 집회장·전시장·호텔·병원·백화점. | 1            | 3                            | 배 3,3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증가 |
| 여관 사무실             | 1            | 2                            |                             |
| 기 타                | 1            | 1                            |                             |

**제23조 (공장의 식수등)** 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내에 공장(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로 부터 대지경계선 및 건축석까지의 거리가 영 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요 거리에 미달되어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지경계선에 접한 폭 2미터 이상의 부분과 건축선에 접한 폭 4미터 이상의 부분에는 대상수림을 형성하되, 50퍼센트 이상을 교목류로 식수 할 것.

2. 제1차의 대상수림을 형성한 면적이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교목류, 관목류 및 보조식재로서 군집 수림을 형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종은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해의 유형에 적합하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고밀도의 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 (정본)                                                                                               |                 | 전 속 허 가 신 청 서          |                  | 처리기간   |   |
|----------------------------------------------------------------------------------------------------|-----------------|------------------------|------------------|--------|---|
|                                                                                                    |                 |                        |                  | 5일     |   |
| 전 속 주                                                                                              | ①성 명            |                        | ②주면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설 제 자                                                                                              | ④성 명            |                        | ⑤자 격 ( ) 급건축사등록제 |        |   |
|                                                                                                    | ⑥주 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
| 공사 감독자                                                                                             | ⑦성 명            |                        | ⑧자 격 ( ) 급건축사등록제 |        |   |
|                                                                                                    | ⑨주 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
| 공사 시공사                                                                                             | ⑩성명 또는 상        |                        | ⑪자 격 건설업 면허      |        |   |
|                                                                                                    | ⑫주 소            | 전화                     |                  |        |   |
| 대 지 조 건                                                                                            | ⑬위 치            |                        |                  |        |   |
|                                                                                                    | ⑭지 역            |                        | ⑮지 구             |        |   |
|                                                                                                    | ⑯면 적            |                        | ⑰공사종별            |        |   |
|                                                                                                    | ⑱전 도로 폭         |                        | ⑲도로에 접하는길이       |        |   |
| ⑳용 도                                                                                               | 주 용 도           |                        | 기 타 용 도          |        |   |
|                                                                                                    |                 |                        |                  |        |   |
| 면 적                                                                                                | 구분              | ①신청구분                  | ②신청이외부분          | ③합 계   |   |
|                                                                                                    | ④전 속 면 적        |                        |                  | ⑤전 제 울 |   |
|                                                                                                    | ⑦면 면 적          |                        |                  | ⑧용 적 울 |   |
|                                                                                                    | ⑨확공예정일          | 년 월 일                  | ⑩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신 청 건 축 물                                                                                          | ⑪용 도            |                        |                  |        |   |
|                                                                                                    | ⑫공 사 종 별        | ⑬주거용인경우 세대 수           |                  |        |   |
|                                                                                                    | ⑭구 조            | ⑮지 붕 재 료               |                  |        |   |
|                                                                                                    | ⑯외 벽 재 료        | ⑰처 마 재 료               |                  |        |   |
|                                                                                                    | 구 분             | 종 별                    | 층                | 층      | 층 |
|                                                                                                    |                 | ⑱신 청 부 분               |                  |        |   |
|                                                                                                    |                 | ⑲신청이외부분                |                  |        |   |
|                                                                                                    | 동               | ④합 계                   |                  |        |   |
|                                                                                                    |                 | ①기둥저수(목조, 철근콘크리트조에 한함) |                  |        |   |
|                                                                                                    |                 | ②외가 계간의 거리(목조에 한함)     |                  |        |   |
| ③층 높 이 (조적조에 한함)                                                                                   |                 |                        |                  |        |   |
| 개 요                                                                                                | ④거 실 반 자 높 이    |                        |                  |        |   |
|                                                                                                    | ⑤최 고 높 이        |                        |                  |        |   |
| 제 호                                                                                                | ⑥최 고 처 마 높 이    |                        |                  |        |   |
|                                                                                                    | ⑦1층 거 실 바 닥 높 이 |                        |                  |        |   |
| 건축설비                                                                                               | ⑧번 소            | 비상용 승강기                | ⑨대 수             |        |   |
|                                                                                                    | ⑩난 방            |                        | ⑪승강장의 면          |        |   |
|                                                                                                    | ⑫비상조명장치         |                        | ⑬기 타             |        |   |
| 1.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br>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br>년 월 일<br>(시장·군수) 귀하 |                 |                        |                  |        |   |

(첨부서류)

-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의 경우에 한한다.)
  - 설계도서 1부
- (주 의)
- 신청건축물이 2동 이상인 때에는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를 등(1동의 연면적 10m<sup>2</sup>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마다 따로 작성 첨부하시오.
  -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기재한 것에 의거 구분하고 사용원동기의 출력(마력)을 기입하시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가 머정일 때에는 기입하지 마시오.
  - 공사시공자란은 도급공사일 때에만 기입하시오.

(별지 제 1 호서식)

| (부본)                                                                      |                 | 전 속 허 가 서              |                  | 년 월 일  |   |
|---------------------------------------------------------------------------|-----------------|------------------------|------------------|--------|---|
|                                                                           |                 |                        |                  | 제 호    |   |
|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                 |                        |                  |        |   |
| (시장·군수)                                                                   |                 |                        |                  | ①      |   |
| 전 속 주                                                                     | ①성 명            |                        | ②주면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전화                     |                  |        |   |
| 설 제 자                                                                     | ④성 명            |                        | ⑤자 격 ( ) 급건축사등록제 |        |   |
|                                                                           | ⑥주 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
| 공사 감독자                                                                    | ⑦성 명            |                        | ⑧자 격 ( ) 급건축사등록제 |        |   |
|                                                                           | ⑨주 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
| 공사 시공사                                                                    | ⑩성명 또는 상        |                        | ⑪자 격 건설업(면허) 제   |        |   |
|                                                                           | ⑫주 소            | 전화                     |                  |        |   |
| 대 지 조 건                                                                   | ⑬위 치            |                        |                  |        |   |
|                                                                           | ⑭지 역            |                        | ⑮지 구             |        |   |
|                                                                           | ⑯면 적            |                        | ⑰공사종별            |        |   |
|                                                                           | ⑱전 도로 폭         |                        | ⑲도로에 접하는길이       |        |   |
| ⑳용 도                                                                      | 주 요 용 도         |                        | 기 타 용 도          |        |   |
|                                                                           |                 |                        |                  |        |   |
| 면 적                                                                       | 구 분             | ①신청부분                  | ②신청이외부분          | ③합 계   |   |
|                                                                           | ④전 속 면 적        |                        |                  | ⑤용 적 울 |   |
|                                                                           | ⑦면 면 적          |                        |                  | ⑧용 적 울 |   |
|                                                                           | ⑨확공예정일          | 년 월 일                  | ⑩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신 청 건 축 물                                                                 | ⑪용 도            |                        |                  |        |   |
|                                                                           | ⑫공 사 종 별        | ⑬지 붕 재 료               |                  |        |   |
|                                                                           | ⑭구 조            | ⑮외 벽 재 료               |                  |        |   |
|                                                                           | ⑯구 조            | ⑰처 마 재 료               |                  |        |   |
|                                                                           | 구 분             | 종 별                    | 층                | 층      | 층 |
|                                                                           |                 | ⑱신 청 부 분               |                  |        |   |
|                                                                           |                 | ⑲신청이외부분                |                  |        |   |
|                                                                           | 동               | ④합 계                   |                  |        |   |
|                                                                           |                 | ①기둥저수(목조, 철근콘크리트조에 한함) |                  |        |   |
|                                                                           |                 | ②외가 계간의 거리(목조에 한함)     |                  |        |   |
| ③층 높 이 (조적조에 한함)                                                          |                 |                        |                  |        |   |
| 개 요                                                                       | ④거 실 반 자 높 이    |                        |                  |        |   |
|                                                                           | ⑤최 고 높 이        |                        |                  |        |   |
| 제 호                                                                       | ⑥최 고 처 마 높 이    |                        |                  |        |   |
|                                                                           | ⑦1층 거 실 바 닥 높 이 |                        |                  |        |   |
| 건축설비                                                                      | ⑧번 소            | 비상용 승강기                | ⑨대 수             |        |   |
|                                                                           | ⑩난 방            |                        | ⑪승강장의 면          |        |   |
|                                                                           | ⑫비상조명장치         |                        | ⑬기 타             |        |   |

|                  |                        |     |         |  |  |  |  |  |
|------------------|------------------------|-----|---------|--|--|--|--|--|
| 개<br>요<br>제<br>호 | ④기둥치수(목조 철근 콘크리트조에 한함) |     |         |  |  |  |  |  |
|                  | ⑤화강, 제간의 거리 (목조에 한함)   |     |         |  |  |  |  |  |
|                  | ⑥층높이(조적조에 한함)          |     |         |  |  |  |  |  |
|                  | ⑦거실의 반자 높이             |     |         |  |  |  |  |  |
|                  | ⑧려 고 높 이               |     |         |  |  |  |  |  |
|                  | ⑨최 고 처 마 높 이           |     |         |  |  |  |  |  |
| 전<br>속<br>설<br>비 | ⑩1 층 바 닥 높 이           |     |         |  |  |  |  |  |
|                  | ⑪번 소                   | 비상용 | ⑫대 수    |  |  |  |  |  |
|                  | ⑬난 방                   | 승강기 | ⑭승강장의 적 |  |  |  |  |  |
| ⑮비상 조명 장치        |                        |     | ⑯기 타    |  |  |  |  |  |

주의: 5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보고를 위하여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합니다.

7803-1-1(2-1)A(2)  
1973. 9. 6 승인

190mm×268mm  
(배상지 50g/m<sup>2</sup>)

(별지 제 1~2 호서식)

|                                                                                                 |                               |          |          |       |      |  |  |
|-------------------------------------------------------------------------------------------------|-------------------------------|----------|----------|-------|------|--|--|
| (부본)                                                                                            |                               |          |          | 건축허가서 |      |  |  |
| (주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br>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br>(해당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       |      |  |  |
| 제 호                                                                                             |                               |          |          |       |      |  |  |
|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                               |          |          |       |      |  |  |
| (읍·면장) 인                                                                                        |                               |          |          |       |      |  |  |
| 건 속 주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③주 소                          |          |          |       |      |  |  |
| ④용 도                                                                                            |                               |          |          |       |      |  |  |
| ⑤공사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내수선, 용도변경 |          |          |       |      |  |  |
| ⑥구 조                                                                                            |                               |          |          |       |      |  |  |
| 대 자                                                                                             | ⑦위 치                          |          | ⑧면 적     |       |      |  |  |
|                                                                                                 | ⑨신청구분                         |          | ⑩신청이외의부분 |       | ⑪합 계 |  |  |
| ⑫작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⑬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      |  |  |

(별지 제 1~2 호서식)

|                                                                                              |                           |          |         |         |  |  |  |      |  |
|----------------------------------------------------------------------------------------------|---------------------------|----------|---------|---------|--|--|--|------|--|
| (부본)                                                                                         |                           |          |         | 건축허가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  |  |  | 일    |  |
| (주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br>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br>(해당지구에선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         |  |  |  |      |  |
| 건 속 주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 소                      |          |         |         |  |  |  |      |  |
| ④용 도                                                                                         |                           |          |         |         |  |  |  |      |  |
| ⑤공사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내수선, 용도변경 |          |         |         |  |  |  |      |  |
| ⑥구 조                                                                                         |                           |          |         |         |  |  |  |      |  |
| 대 자                                                                                          | ⑦위 치                      |          | ⑧면 적    |         |  |  |  |      |  |
| 건축면적                                                                                         | ⑨신청부분                     | ⑩신청이외의부분 | ⑪합 계    |         |  |  |  |      |  |
| ⑫작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⑬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  |  |  |      |  |
| 1.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br>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습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자                                                                                          |                           |          |         |         |  |  |  |      |  |
| (읍·면장) 귀하                                                                                    |                           |          |         |         |  |  |  |      |  |
|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br>3. 배치도 1부.                                         |                           |          |         |         |  |  |  |      |  |

[별지 제 2 호서식]

|                                                                                                                           |  |  |  |       |  |
|---------------------------------------------------------------------------------------------------------------------------|--|--|--|-------|--|
| 건축불허가통지서                                                                                                                  |  |  |  | 년 월 일 |  |
|                                                                                                                           |  |  |  | 제 호   |  |
| 건축주 성 명<br>주민등록번호<br>주 소                                                                                                  |  |  |  |       |  |
| 건축주 귀하                                                                                                                    |  |  |  |       |  |
| 발첩 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제<br>획은 다음 이유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br>관한 건축법, 동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br>으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  |  |  |       |  |
| 시장·군수                                                                                                                     |  |  |  | 인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03-1-2A(1)  
1973. 9. 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 건축(중축·개축)신고서                                                                                                                          |       |              |                |
|---------------------------------------------------------------------------------------------------------------------------------------|-------|--------------|----------------|
| 건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④대지위치                                                                                                                                 |       |              |                |
| ⑤지역                                                                                                                                   |       | ⑥지구          |                |
| ⑦주용도                                                                                                                                  |       | ⑧공사종별 중축, 개축 |                |
| ⑨인적                                                                                                                                   | 구분    | ⑩신청부분        | ⑪신청이외부분 (기존부분) |
|                                                                                                                                       | ⑫건축면적 | ⑬합계          |                |
| ⑭연년적                                                                                                                                  |       |              |                |
| ⑮건축예울                                                                                                                                 |       | ⑯층수          |                |
| ⑰구조                                                                                                                                   |       | ⑱대지면적        |                |
| ⑲착공예정일                                                                                                                                |       | 년 월 일        | ⑳준공예정일         |
| <p>건축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신청자 귀하 ㉑</p> |       |              |                |

[별지 제4호서식]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                  |             |
|-------------------------------------------------------------------------------------------------------------------------------------------------------------------------------------------------------------------------------------------------|----------|------------------|-------------|
| 건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공사감리자                                                                                                                                                                                                                                           | ④성명      |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번호 |             |
|                                                                                                                                                                                                                                                 | ⑥주소      |                  |             |
| 공사시공사                                                                                                                                                                                                                                           | ⑦상명 또는 호 | ⑧주민등록번호          |             |
|                                                                                                                                                                                                                                                 | ⑨주소      | 전화               |             |
| ⑩대지위치                                                                                                                                                                                                                                           |          |                  |             |
| ⑪허가번호                                                                                                                                                                                                                                           |          | ⑫허가년월일           | 년 월 일       |
| ⑬용도                                                                                                                                                                                                                                             |          | ⑭구조              |             |
| ⑮대지면적                                                                                                                                                                                                                                           |          | ⑯층수              | 지상( ) 지하( ) |
| ⑰착공년월일                                                                                                                                                                                                                                          |          | ⑱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 ⑲건축면적                                                                                                                                                                                                                                           |          | ⑳연면적             |             |
| ⑳발령일자                                                                                                                                                                                                                                           |          | 년 월 일            |             |
| ㉑내용                                                                                                                                                                                                                                             |          | (이면 기재)          |             |
| ㉒일자                                                                                                                                                                                                                                             |          | 년 월 일            |             |
| ㉓내용                                                                                                                                                                                                                                             |          | (이면 기재)          |             |
| <p>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일 권고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아 건축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자 급 건축사 ㉔</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          |                  |             |

[별지 제5호서식]

| 가재상주의                                                                                                                                                      |                                                                                                                                                             |             | 처리기관      |
|------------------------------------------------------------------------------------------------------------------------------------------------------------|-------------------------------------------------------------------------------------------------------------------------------------------------------------|-------------|-----------|
| <p>1. ※ 난은 기재하지 마시오.</p> <p>2. 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는 해당기호(숫자)에 ○표 하시오.</p>                                                          |                                                                                                                                                             |             | 측기        |
| 1. 착공신고서                                                                                                                                                   |                                                                                                                                                             | ※ 접수처리확인    |           |
|                                                                                                                                                            |                                                                                                                                                             | 알려번호        |           |
|                                                                                                                                                            |                                                                                                                                                             | 성명 (인) (직함) |           |
| ①건축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②공사감리자                                                                                                                                                     | 성명                                                                                                                                                          | 자격          |           |
|                                                                                                                                                            | 주소                                                                                                                                                          | 전화          |           |
| ③공사시공사                                                                                                                                                     | 성명 및 상호                                                                                                                                                     | 자격          | 건설업면허 세 호 |
|                                                                                                                                                            | 주소                                                                                                                                                          | 전화          |           |
| ④허가번호                                                                                                                                                      | ⑤허가일자                                                                                                                                                       |             |           |
| ⑥공사 예정 기간                                                                                                                                                  | ⑦허가일자                                                                                                                                                       |             |           |
| ⑧건축장소                                                                                                                                                      | (시·도) (시·구·군) (동·리) ㉑                                                                                                                                       |             |           |
| ⑨지역                                                                                                                                                        | 0. 녹지지역 1. 우거전용지역 2. 우거지역 3. 준거지역 4. 상업지역 5. 공업지역 6. 준공업지역 7. 전용공업지역 8. 비공업지역 9. 미도시계획지역                                                                    |             |           |
| ⑩지구                                                                                                                                                        | 01. 종로지구 02. 미관지구 03. 고도지구 04. 교육 및 연구지구 05. 업무지구 06. 입향지구 07. 공지지구 08. 보존지구 09. 주차장정비지구 10. 공랑지구 11. 자연환경보존지역 12. 특정가구경비지구 13. 방화지구 14. 비정규지구 15. 미도시 계획지구 |             |           |
| ⑪건축주                                                                                                                                                       |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6. 개인 7. 기타                                                                                                      |             |           |
| ⑫공사종별                                                                                                                                                      | 1. 신축 2. 중축 3. 개축 4. 기타                                                                                                                                     |             |           |
| ⑬주요용도                                                                                                                                                      | 용건축물(구체적으로 기입) ㉒                                                                                                                                            |             |           |
| ⑭건축공사 의결유                                                                                                                                                  | ⑮대지면적                                                                                                                                                       | ㉓평방미터       | ⑯건축면적     |
|                                                                                                                                                            |                                                                                                                                                             |             | ㉔평방미터     |
| <p>건축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                                                                                                                                                             |             |           |
| 구비서류                                                                                                                                                       |                                                                                                                                                             | 수수로         |           |
| 등장건축내용                                                                                                                                                     |                                                                                                                                                             | 없음          |           |

| 건축(중축, 개축) 신고증                                                                                                                     |     |         |        |
|------------------------------------------------------------------------------------------------------------------------------------|-----|---------|--------|
| 제 호                                                                                                                                |     |         |        |
| 건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④대지위치                                                                                                                              |     |         |        |
| ⑤지역                                                                                                                                |     | ⑥지구     |        |
| ⑦대지면적                                                                                                                              |     | ⑧중·개축면적 |        |
| ⑨공사종별                                                                                                                              |     | ⑩건축예울   |        |
| ⑪구조                                                                                                                                |     | ⑫층수     |        |
| ⑬착공예정일                                                                                                                             |     | 년 월 일   | ⑭준공예정일 |
| <p>건축법시행규칙 제3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 군수) ㉑</p> |     |         |        |

7803-1-11A(1)  
1973. 9.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 기재상주의

- 용도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불완전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는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
- ⑫이하의 난은 작품상, 근대상에 주택 또는 주택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기입 하시오. 제
- 전항에 따라 기재하는 경우에 ⑫이하의 난은 이용 구분별로 해당하는 난에만 기재 하시오.  
(예: 자택이면 자택난의 ⑫⑬⑭ 난만 기재)
- 소숫점 이하를 반올림 하시오.

### 2. 동당건축내용

|               |                                           |                                                      |       |                        |       |
|---------------|-------------------------------------------|------------------------------------------------------|-------|------------------------|-------|
| ①용도           | ※ <input type="text"/>                    |                                                      |       |                        |       |
| ②구분           | ③구조                                       | 1. 철골조 2. 철골·철근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조<br>4. 조적조 5. 목조 6. 기타 |       |                        |       |
|               | ④벽체                                       | 1. 시멘트벽돌 2. 적벽돌 3. 콘크리트벽돌 4. 철근콘크리트 5. 기타            |       |                        |       |
|               | ⑤지붕                                       | 1. 스라브 2. 기와 3. 스페트 4. 기타                            |       |                        |       |
| ⑥건축부분의 연면적    | <input type="text"/> 평방미터                 |                                                      |       |                        |       |
|               | <input type="text"/> 천 원                  |                                                      |       |                        |       |
| 층수            | ⑦지상                                       | <input type="text"/> 층                               | ⑧지하   | <input type="text"/> 층 |       |
|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함 |                                           |                                                      |       |                        |       |
| ⑨공사자금         | 1. 국민주택자금 2. 민영주택자금 3. 주택공사자금 4. 개인 5. 기타 |                                                      |       |                        |       |
| ⑩주택외종류        | 1. 전용 2. 1종병용 3. 2종병용                     |                                                      |       |                        |       |
| ⑪주택의형태        | 1. 단독 2. 연립 3. 아파트 4.                     |                                                      |       |                        |       |
| ⑫이용구분         | 1. 자택                                     | 2. 급여                                                | 3. 분양 | 4. 임대                  | 5. 기타 |
| ⑬주택의호수        |                                           |                                                      |       |                        |       |
| ⑭주거전용 바닥면적의합계 |                                           |                                                      |       |                        |       |
| ⑮주택 1호당면적     |                                           |                                                      |       |                        |       |

### [별지 제 6호서식]

| 준공(동별준공) 신고서 |            |                    |       |
|--------------|------------|--------------------|-------|
| 전 출 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설 계 자        | ④성명        |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       |
|              | ⑥주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공사감리자        | ⑦성명        | ⑧자격 ( ) 급건축사등록 제 호 |       |
|              | ⑨주소 및 사무소명 | 전화                 |       |
| 공사시공자        | ⑩성명 또는 상   | ⑪자격 건설업면허제 호       |       |
|              | ⑫주소        | 전화                 |       |
| ⑬대지위치        |            |                    |       |
| ⑭허가번호        | ⑮허가일자      | 월                  | 년 일   |
| ⑯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⑰준공일자              | 년 월 일 |
| ⑱지 역         | ⑲지 구       |                    |       |
| ⑳대지면적        | ㉑층 수       |                    |       |
| ㉒용 도         | ㉓구 조       |                    |       |
| ㉔최고높이        | ㉕처마높이      |                    |       |

### [별지 제 5-2호서식] <신설 74.8.17 건설령146>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간<br/>2일</div> <p style="text-align: center;"><b>착 공 신 고 서</b></p> <p style="text-align: center;">취락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p>              |        |         |
| 진 출 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대지위치                                                                                                                                                                           |        |         |
| ⑤대지면적                                                                                                                                                                           | ⑥건축면적  |         |
| ⑦허가번호                                                                                                                                                                           | ⑧허가일자  |         |
| ⑨착공년월일                                                                                                                                                                          | ⑩준공예정일 |         |
| <p>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span style="float: right;">㉑</span></p> <p>(시장, 군수) 귀하</p>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없 음                                                                                                                                                                             | 없 음    |         |

(주 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7803-1-6(2-2)A 190m/m × 263m/m 신문용지 54g/m<sup>2</sup>  
1974. 5. 7 승인

| 건축물<br>내역 | ①명칭                                                                                                                                                                                                                                                   | ②신청부분       | ③신청이의부분 | ④합 계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신 청       | ⑤연면적                                                                                                                                                                                                                                                  |             |         |      |         |   |   |   |   |         |      |  |  |  |  |
|           | ⑥건축면적                                                                                                                                                                                                                                                 |             |         |      |         |   |   |   |   |         |      |  |  |  |  |
| 전 출 주     | ⑦공사종별                                                                                                                                                                                                                                                 | ⑧주거용인 경우세대수 |         |      |         |   |   |   |   |         |      |  |  |  |  |
|           | ⑨구 조                                                                                                                                                                                                                                                  | ⑩의벽재료       |         |      |         |   |   |   |   |         |      |  |  |  |  |
| 신 청       | ⑪지붕재료                                                                                                                                                                                                                                                 | ⑫처마재료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층 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층</th> <th>1</th> <th>2</th> <th>3</th> <th>4</th> <th>계 ( ) 층</th> </tr> <tr> <td>⑬구 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         |      | 층       | 1 | 2 | 3 | 4 | 계 ( ) 층 | ⑬구 분 |  |  |  |  |
| 층         | 1                                                                                                                                                                                                                                                     | 2           | 3       | 4    | 계 ( ) 층 |   |   |   |   |         |      |  |  |  |  |
| ⑬구 분      |                                                                                                                                                                                                                                                       |             |         |      |         |   |   |   |   |         |      |  |  |  |  |
| 축 분       | ⑭신청부분                                                                                                                                                                                                                                                 |             |         |      |         |   |   |   |   |         |      |  |  |  |  |
|           | ⑮신청이의부분                                                                                                                                                                                                                                               |             |         |      |         |   |   |   |   |         |      |  |  |  |  |
| 동 별       | ⑯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요       | ⑰용 도                                                                                                                                                                                                                                                  |             |         |      |         |   |   |   |   |         |      |  |  |  |  |
|           | ⑱거실의 내장재료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④④ 통로의 내장재료의 종류         |  |        |             |  |
|                                                        | ④⑤ 거실의 반자 높이            |  |        |             |  |
|                                                        | ④⑥ 최대 방화구획의 면적          |  |        |             |  |
|                                                        | ④⑦ 피난 계단의 종류            |  |        |             |  |
|                                                        | ④⑧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폭 |  |        |             |  |
| 건축설비                                                   | ④⑨ 최고 높이                |  |        |             |  |
|                                                        | ④⑩ 변 소                  |  | 비 상 용  | ④⑪ 대 수      |  |
|                                                        | ④⑫ 냉 · 난 방              |  | 승 강 기  | ④⑬ 승강장의 적 변 |  |
|                                                        | ④⑭ 비 상 용 조영장치           |  | ④⑮ 기 타 |             |  |
|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br>년 월 일<br>신고인 ④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

7803-1-4A(1)  
1973. 9. 6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 6-2호식] <신설 74-8-17 건설령 146>

|                                                         |                                    |                             |
|---------------------------------------------------------|------------------------------------|-----------------------------|
| 준 공 신 고 시                                               |                                    | 처리기간<br>1일(서울시)<br>2일(시, 군) |
| (취락지·내에서의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                                    |                             |
| 건축주                                                     | ①성명<br>③주소                         | ②주민등록번호                     |
| 용도                                                      | 주거, 부속건축물, 잡설, 측사, 퇴비사             |                             |
| 공사종별                                                    | 신축, 중축, 개축, 개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                             |
| 구조                                                      |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 대지위치                                                    |                                    |                             |
| 대지면적                                                    | ⑨건축면적                              |                             |
| 허가번호                                                    | ⑩허가일자                              | 년 월 일                       |
| 착공년월일                                                   | ⑪준공일자                              | 년 월 일                       |
| 설계자                                                     | ⑫설계명                               | ⑬주민등록번호                     |
|                                                         | ⑭주소 및 사무소명                         |                             |
|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br>년 월 일<br>신고인 ④ |                                    |                             |
| (시장·군수) 귀하                                              |                                    |                             |
|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                             |
| 없음                                                      |                                    |                             |

(주 의)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 ④⑤⑥란은 해당란에 ○표 하시오.
- 설계자란은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공시하는 부분의 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것에 한하여 기입하시오.

7803-1-4(2-2)A  
1974. 5. 7 승인

150mm/m × 265m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 7 호식]

|                                                           |                      |                        |           |
|-----------------------------------------------------------|----------------------|------------------------|-----------|
| 준공(등별준공) 검사필증                                             |                      | 제 호                    |           |
| 건축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                      |                        |           |
| 년 월 일<br>(시장·군수)                                          |                      |                        |           |
| 건축주                                                       | ①성명<br>③주소           | ②주민등록번호<br>전화          |           |
| 설계자                                                       | ④성명<br>⑤주소           | ⑥자격 ( )급 건축사등록번호       |           |
| 공사감리자                                                     | ⑦성명<br>⑧주소           | ⑨자격 ( )급 건축사등록번호<br>전화 |           |
| 공사시공자                                                     | ⑩성명 또는 상호<br>⑪주소     | ⑫자격<br>건설업 면허 제        |           |
| ⑬대지위치<br>⑭허가번호<br>⑮지 역<br>⑯대지면적<br>⑰층 수<br>⑱층 하층의 수       |                      |                        |           |
| 가명칭                                                       | 구분 신청부분              | 신청이외부분(기타)             |           |
| ⑲건축면적                                                     | ⑳층 수                 | ㉑주차장면적                 |           |
| ㉒연면적                                                      | ㉓용적률                 | ㉔잔폐물                   |           |
| ㉕용도                                                       | 주 용 도                | 기 타 용 도                |           |
| 정 건 축 물 등 별 개 요                                           | ㉖공사종별                | ㉗주거용인 경우 세대 수          |           |
|                                                           | ㉘구조                  | ㉙외벽재료                  |           |
|                                                           | ㉚지붕재료                | ㉛처마재료                  |           |
|                                                           | ㉜구분                  | 층 별 층 층 층 층 층 제 ( )층   |           |
| 바닥면적                                                      | ㉝신축부분                |                        |           |
|                                                           | ㉞신축이외부분              |                        |           |
|                                                           | ㉟합계                  |                        |           |
|                                                           | ㊱용도                  |                        |           |
| 동 별 개 요                                                   | ㊲거실의 내장재료의 류         |                        |           |
|                                                           | ㊳통로의 내장재료의 류         |                        |           |
|                                                           | ㊴최대 방화구획의 면적         |                        |           |
|                                                           | ㊵거실의 반자 높이           |                        |           |
| 제 호                                                       | ㊶건축물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폭 |                        |           |
|                                                           | ㊷피난 계단의 종류           |                        |           |
|                                                           | ㊸최고 높이               |                        |           |
|                                                           | ㊹변 소                 | 비 상 용                  | ㊺대 수      |
| 건축설비                                                      | ㊻냉 난 방               | 비 상 용 승 강 기            | ㊼승강장의 적 변 |
|                                                           | ㊽비 상 용 조 영 장 치       | ㊾기 타                   |           |
| 검사년월일                                                     |                      |                        |           |
| 검사원직위명명                                                   |                      |                        |           |

7803-1-5A(1)  
1973. 9. 6 승인

190mm × 268mm  
(백상지 60g/m<sup>2</sup>)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74.8.17 건설령146)

| 준공검사필증                                                                              |                                   |
|-------------------------------------------------------------------------------------|-----------------------------------|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축)<br>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                                   |
| (시장·군수) ①                                                                           |                                   |
| 건축주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④용도                                                                                 |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측사, 퇴비사            |
| ⑤공사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용도변경 |
| ⑥구조                                                                                 |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
| ⑦대지위치                                                                               |                                   |
| ⑧대지면적                                                                               | ⑨건축면적                             |
| ⑩허가번호                                                                               | ⑪허가일자 년 월 일                       |
| ⑫착공년월일                                                                              | ⑬준공일지 년 월 일                       |
| ⑭검사년월일                                                                              | 년 월 일                             |
| ⑮검사원직위성명                                                                            |                                   |
| ⑯성명                                                                                 | ⑰주민등록번호                           |
| ⑱주소 및 사무소명                                                                          |                                   |

7803-1-5(2-2)A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1974. 5.7 승인

[별지 제9호서식]

| 가사용승인서                                                                                             |                  | 제호      |  |
|----------------------------------------------------------------------------------------------------|------------------|---------|--|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축)<br>건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축물을 전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까지 가사용을 승인함.  |                  |         |  |
| (시장·군수) ①                                                                                          |                  |         |  |
| 건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④허가번호                                                                                              | ⑤허가일자            | 년 월 일   |  |
| ⑥대지위치                                                                                              |                  |         |  |
| ⑦주용도                                                                                               | ⑧공사종별            |         |  |
| ⑨가사용승수                                                                                             | 지상( ) 지하( )      | ⑩구조     |  |
| ⑪가사용바닥면적                                                                                           | ⑫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⑬사용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         |  |
| ⑭검사년월일                                                                                             | 년 월 일            |         |  |
| ⑮검사원직위성명                                                                                           |                  |         |  |
| 주의 1. 이 승인서는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시오.<br>2. 이 승인서를 받은후 건축공사중 위법사항이 생기면 취소됩니다.<br>3. 이 승인서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                  |         |  |

7803-1-17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 가사용승인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3일          |
| 건축주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공사감리자                            | ④성명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번호 | 전화          |
|                                  | ⑥주소 및 사무소명           |             |
| 공사시공사                            | ⑦성명 또는 상호 ⑧자격        | 건설업(면허)호    |
|                                  | ⑨주소                  | 전화          |
| ⑩대지위치                            |                      |             |
| ⑪허가번호                            | ⑫허가일자                | 년 월 일       |
| ⑬대지면적                            | ⑭건축면적                |             |
| ⑮주요용도                            | ⑯구조                  |             |
| ⑰착공년월일                           | ⑱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⑲공사현황                            |                      |             |
| ⑳구분                              | 허가내역                 | 가사용신청내역     |
| ㉑층수                              | 지상( ) 지하( )          | 지상( ) 지하( ) |
| ㉒연면적                             |                      |             |
| ㉓사용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             |
| 건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신청인 ㉔                      |                      |             |
| (시장·군수) 귀하                       |                      |             |
| 주의: 공사현황은 층별로 구체적인 공정을 기입하시오.    |                      |             |

1803-1-16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9-2호서식]

건축허가대장

| 허가번호   | 제호                      | 대장번호 계 호                |                           |
|--------|-------------------------|-------------------------|---------------------------|
| ①허가년월일 | 19 년 월 일                | ②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        |                         | ③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 건축주    | ④성명 ⑤주소                 | ⑥주민등록번호                 |                           |
| 설계자    | ⑦성명 ⑧주소 또는 사무소명         | ⑨건축사 면허번호               | 제 호                       |
| 공사감리자  | ⑩성명 ⑪주소 또는 사무소명         | ⑫건축사 면허번호               | 제 호                       |
| 공사시공사  | ⑬성명 ⑭주소 또는 상호           | ⑮주민등록번호                 | 제 호                       |
|        | ⑯주소 또는 상호               | ⑰건설업 면허번호               | 제 호                       |
| 배치조건   | ⑱위 치                    | ⑲지 역                    | 지 역                       |
| 용도     | ⑳주 용 도                  | ㉑기타용도                   |                           |
| 구분     | ㉒건축면적 (M <sup>2</sup> ) | ㉓바닥면적 (M <sup>2</sup> ) |                           |
| 기초부분   | ㉔기초면적 (M <sup>2</sup> ) | ㉕기초깊이 (M)               |                           |
| ㉖구 조   | ㉗전체층수 (%) ㉘용지율 (%)      | ㉙건축물높이 (M)              | ㉚주차장 면적 (m <sup>2</sup> ) |
|        | ㉛기초중의 흙                 | ㉜최고높이                   | ㉝무 네                      |
| ㉞담 당   | 리 가                     | 과 장                     | 계 장                       |
| 공무처    | 인                       | 인                       | 인                         |
| 준공     | 인                       | 인                       | 인                         |

중·개축및등도변경등허가변경사항

| 구 분                                    | 1 차 령 가           | 2 차 령 가     | 3 차 령 가     |
|----------------------------------------|-------------------|-------------|-------------|
| ① 전 속 주                                |                   |             |             |
| ② 허가 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③ 허가년월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설 계 자                                  | ④성 명<br>⑤사무소명     |             |             |
| 공사감리자                                  | ⑥성 명<br>⑦사무소명     |             |             |
| 공사시공자                                  | ⑧성 명<br>⑨상 호      |             |             |
| 용 도                                    | ⑩주 용 도<br>⑪기타용도   |             |             |
| ⑫ 건축면적 (M <sup>2</sup> )               | 허가부분<br>계         |             |             |
| ⑬ 연 면 적 (M <sup>2</sup> )              | 허가부분<br>계         |             |             |
| ⑭ 전라율 (%) (기준포함)                       |                   |             |             |
| ⑮ 용적율 (%) (기준포함)                       |                   |             |             |
| ⑯ 수차장면적<br>(기준포함)<br>(M <sup>2</sup> ) | 육 내<br>육 외<br>계   |             |             |
| ⑰ 건물높이 M <sup>2</sup>                  |                   |             |             |
| ⑱ 준공년월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⑳ 담 방<br>방 부 름                         | 과 광<br>계 상<br>담 당 | 인<br>인<br>인 | 인<br>인<br>인 |

[별지 제11호서식]

| 중 간 검 사 령 증 제 호                                                                              |                  |                   |
|----------------------------------------------------------------------------------------------|------------------|-------------------|
| 건축법 제 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 공사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①                                                                                    |                  |                   |
| 전 속 주                                                                                        | ②성 명<br>③주 소     | ④주민등록<br>번호<br>전화 |
| ⑤대 지 위 치                                                                                     |                  |                   |
| 용 허 가 번 호                                                                                    | ⑥허 가 일 지         | 년 월 일             |
| 지 역                                                                                          | ⑦지 구             |                   |
| ⑧대 지 면 적                                                                                     | ⑨건축면적            |                   |
| ⑩연 면 적                                                                                       | ⑪공사종별            |                   |
| ⑫용 수 지 상 ( ) 지하 ( )                                                                          | ⑬구 조             |                   |
| ⑭주 용 도                                                                                       | ⑮건 폐 용           |                   |
| 중간검사내역                                                                                       | (기초부분)<br>(상부부분) |                   |
| ⑯검사년월일                                                                                       | 년 월 일            |                   |
| ⑰검사원직위·성명                                                                                    |                  |                   |
| 7803-1-18A 190mm×268mm.<br>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 <sup>2</sup> )                           |                  |                   |

第28編 建設 第5章 都市・住宅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74-8-17 건설령146>

[별지 제10호서식]

| 중 간 검 사 령 증 제 호                                                    |                        |                            |
|--------------------------------------------------------------------|------------------------|----------------------------|
| 전 속 주                                                              | ①성 명<br>③주 소           | ④주민등록<br>번호<br>전화          |
| 공사감리자                                                              | ⑥성 명<br>⑦주 소 및<br>사무소명 |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br>번호<br>전화 |
| 공사시공자                                                              | ⑧성 명<br>⑨주 소           | ⑩자격 건설업면허제 호<br>전화         |
| ⑪중간검사내역일                                                           | 년 월 일                  |                            |
| ⑫허 가 번 호                                                           | ⑬허 가 일 지               | 년 월 일                      |
| ⑭대 지 위 치                                                           | ⑮지 역·지 구               |                            |
| ⑯대 지 면 적                                                           | ⑰건축면적                  |                            |
| ⑱용 수 지 상 ( ) 지하 ( )                                                | ⑲연 면 적                 |                            |
| ⑳공사종별                                                              | ㉑주 용 도                 |                            |
| ㉒구 조                                                               | ㉓건 폐 용                 |                            |
| ㉔공사기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차)     |                            |
| 중간 검사 내역                                                           | ㉕기초부분<br>㉖상부부분         |                            |
| 건축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br>년 월 일<br>(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①   |                        |                            |
| 7803-1-18A 190mm×268mm.<br>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 <sup>2</sup> ) |                        |                            |

건축물유지관리상대보고서

|                  |                        |                       |
|------------------|------------------------|-----------------------|
| 건축주·관리자 또는 소유자   | ①성 명<br>③주 소           | ②주민등록<br>번호           |
| 검점건축사            | ④성 명<br>⑥주 소 및<br>사무소명 | ⑤자 격 급건축사 등록 제 호      |
| ⑦대 지 위 치         |                        |                       |
| ⑧준 공 검 사 령 증 제 호 | ⑨년 월 일                 | ⑩전 회 보 고 일 자 (제 회 보고) |
| ⑪지 역             | ⑫지 구                   |                       |
| ⑬대 지 면 적         | ⑭용 수                   | ⑮지 하 층 수              |
| ⑯건축면적            | ⑰주 차 장 적               |                       |
| ⑱연 면 적           | ⑲건 폐 용                 | ⑳용 적 륜                |
| ㉑주 용 도           | ㉒용 수                   |                       |
| ㉓구 조             | ㉔벽체재료                  |                       |
| ㉕지 붕 계 재료        | ㉖마 제 료                 |                       |
| ㉗구 분 중 별         | 충 충 충 충 충              | 계 ( ) 충               |
| ㉘바 닦 면 적         |                        |                       |
| ㉙용 수 설 의 내 장 류   |                        |                       |
| ㉚지 제 의 중 류       |                        |                       |



|                                                                                                                                                                                                                                                |                            |  |  |  |  |  |
|------------------------------------------------------------------------------------------------------------------------------------------------------------------------------------------------------------------------------------------------|----------------------------|--|--|--|--|--|
| 종<br>별<br>개<br>요<br>제<br>호                                                                                                                                                                                                                     | ①통로의 내장류                   |  |  |  |  |  |
|                                                                                                                                                                                                                                                | ②거실의 반자                    |  |  |  |  |  |
|                                                                                                                                                                                                                                                | ③취침방화                      |  |  |  |  |  |
|                                                                                                                                                                                                                                                | ④난방계단                      |  |  |  |  |  |
|                                                                                                                                                                                                                                                | ⑤건축물의 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통로의 폭 |  |  |  |  |  |
|                                                                                                                                                                                                                                                | ⑥최고 높이                     |  |  |  |  |  |
|                                                                                                                                                                                                                                                | ⑦판리 기                      |  |  |  |  |  |
|                                                                                                                                                                                                                                                | ⑧난방, 난방                    |  |  |  |  |  |
|                                                                                                                                                                                                                                                | ⑨비상용조명장치                   |  |  |  |  |  |
|                                                                                                                                                                                                                                                | ⑩비상용조명장치                   |  |  |  |  |  |
| ⑪준공검사필증교부후수리 혹은 변경내역                                                                                                                                                                                                                           |                            |  |  |  |  |  |
| ⑫기타 변경 사항                                                                                                                                                                                                                                      |                            |  |  |  |  |  |
| 1. 건축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br>2. 이 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습니다.<br>(첨부서류)<br>1.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br>2. 배치도 1부<br>3. 각종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서의 각종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br>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통로부분의 변경전·변경후의 입면도·단면도 1부<br>년 월 일<br>(시장, 군수) 귀하 |                            |  |  |  |  |  |

7803-1-20A  
1973. 9.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14호서식)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보고서                                                          |             |         |               |
|-----------------------------------------------------------------------------|-------------|---------|---------------|
| 설 계 자                                                                       | ①성 명        | ②자 격    | ( ) 급건축사등록제 호 |
|                                                                             | ③주소및사무소명    | 전화      |               |
| 공사장리자                                                                       | ④성 명        | ⑤자 격    | ( ) 급건축사등록제 호 |
|                                                                             | ⑥주소및사무소명    | 전화      |               |
| 공사시공자                                                                       | ⑦성명또는실호     | ⑧자 격    | 직설업변허 제 호     |
|                                                                             | ⑨주 소        | 전화      |               |
| 건 속 주                                                                       | ⑩성 명        | ⑪주민등록번호 |               |
|                                                                             | ⑫주 소        | 전화      |               |
| ⑬대지위치                                                                       |             |         |               |
| ⑭허가번호                                                                       |             | ⑮허가일자   | 년 월 일         |
| ⑯거 역                                                                        |             | ⑰지 구    |               |
| ⑱대지면적                                                                       |             | ⑲건축면적   |               |
| ⑳구 조                                                                        |             | ㉑면 적    |               |
| ㉒층 수                                                                        | 지상( ) 지하( ) | ㉓주요용도   |               |
| ㉔공사종별                                                                       |             | ㉕진 채 유  |               |
| 위 범 사 항                                                                     | ㉖발행일자       | 년 월 일   |               |
|                                                                             | ㉗배 용        | (이면가게)  |               |
| 기 타 사 항                                                                     | ㉘적발일시       | 년 월 일   |               |
|                                                                             | ㉙적금일명       |         |               |
| 조 치 사 항                                                                     | ㉚일 자        | 년 월 일   |               |
|                                                                             | ㉛배 용        | (이면가게)  |               |
| 건축법 제42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및 관련설계자등을<br>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br>년 월 일<br>(시장·군수) |             |         |               |

第23編 第5章 都市・住宅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위반건축물표지                                                                                       |       |        |  |
|-----------------------------------------------------------------------------------------------|-------|--------|--|
| ①위 치                                                                                          |       |        |  |
| ②건 속 주                                                                                        |       | ③공사시공자 |  |
| ④허가 또는<br>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⑤허가 번호 |  |
| ⑥주요용도                                                                                         |       |        |  |
| ⑦위반사항                                                                                         |       |        |  |
| ⑧조치사항                                                                                         |       |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br>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br>다.<br>년 월 일<br>(시장, 군수) |       |        |  |

7803-1-21A  
1973. 9. 6

750mm×400mm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제 호                                                                                                                     |      | 사<br>진                 |
| 건축물등출입검사공무원증                                                                                                            |      |                        |
| 소 속                                                                                                                     | 직 명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유효기간                                                                                                                    |      | 자 19 : :<br>지 19 : : : |
| 위 공무원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br>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자<br>임을 증명함.<br>년 월 일<br>(전설부장관)<br>도 지 사<br>(시장·군수) |      |                        |

7803-1-7A(1)  
1973. 9. 6 승인

9cm/m×7cm/m  
(청상지 120g/m<sup>2</sup>)

[별지 제16호서식]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         |        |
|------------------------------------------------------------------------------------------------------------------------------------------------------------------------------------|-------------------|---------|--------|
| 진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공사시공자                                                                                                                                                                              | ④성명또는상호           | ⑤자격     | 건설업면허호 |
|                                                                                                                                                                                    | ⑥주소               | 전화      |        |
| ⑦위치                                                                                                                                                                                |                   |         |        |
| ⑧대지면적                                                                                                                                                                              |                   | ⑨건축면적   |        |
| ⑩주용도                                                                                                                                                                               |                   | ⑪연면적    |        |
| ⑫건축물                                                                                                                                                                               |                   | ⑬층수     |        |
| ⑭건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        |
| ⑮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⑯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p>건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㉑</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p> |                   |         |        |

[별지 제17호서식] &lt;개정 74.8.17 건설령146&gt;

| (정 본)                                             |           |         |            | 처리기간 |
|---------------------------------------------------|-----------|---------|------------|------|
| <p style="text-align: center;">용역및공작물등축조허가신청서</p> |           |         |            | 2일   |
|                                                   |           |         |            |      |
| 진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설계자                                               | ④성명       |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호 |      |
|                                                   | ⑥주소 및사무소명 | 전화      |            |      |
| 공사시공자                                             | ⑦성명또는상호   | ⑧자격     | 건설업면허제 호   |      |
|                                                   | ⑨주소       | 전화      |            |      |
| ⑩대지위치                                             |           |         |            |      |
| ⑪저각                                               |           | ⑫지구     |            |      |
| ⑬대지면적                                             |           |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접수증                                                                               |                   |         |       |
|--------------------------------------------------------------------------------------------|-------------------|---------|-------|
| 년 월 일                                                                                      |                   |         |       |
| 제 호                                                                                        |                   |         |       |
| <p>건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접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㉑</p> |                   |         |       |
| 진축주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④위치                                                                                        |                   |         |       |
| ⑤대지면적                                                                                      |                   | ⑥건축면적   |       |
| ⑦용도                                                                                        |                   | ⑧연면적    |       |
| ⑨건축물                                                                                       |                   | ⑩층수     |       |
| ⑪건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       |
| ⑫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⑬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7803-1-23A  
1973. 9. 6 승인190mm×268mm/m  
(신문용지 50g/m²)

| ⑭착공예정일                                                                                                                                                                                                                                                                       |        | 년 월 일 | ⑮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공개작물의요                                                                                                                                                                                                                                                                       | ⑯종류    |       |        |       |
|                                                                                                                                                                                                                                                                              | ⑰높이    |       |        |       |
|                                                                                                                                                                                                                                                                              | ⑱구조    |       |        |       |
|                                                                                                                                                                                                                                                                              | ⑲공작물규모 |       |        |       |
| <p>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p> <p>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부근 안내도 및 배치도·입면도·단면도·구조상세도·구조제상시 각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㉒</p> |        |       |        |       |

2803-1-3(2-2)A(1)  
1973. 9. 6 승인190mm×268m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부분)                         |       | 응낙및공작물등록조서 |       | 제 호       |       |
|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의 축조계획은 건축 |       |            |       |           |       |
| 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축조를 허가함.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 ④                    |       |            |       |           |       |
| 건축주                          | ①성명   |            | ②주민등록 |           |       |
|                              | ③주소   |            |       | 전화        |       |
| 설계자                          | ④성명   |            |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 |       |
|                              | ⑥주소및  |            |       | 전화        |       |
| 공사                           | ⑦성명또는 |            | ⑧자격   | 건설업면허제    | 호     |
| 시공자                          | ⑨주소   |            |       | 전화        |       |
| ⑩대지위치                        |       |            | ⑪지    | 구         |       |
| ⑫대지면적                        |       |            |       |           |       |
| ⑬확공년월일                       | 년     | 월          | 일     | ⑭주공인      | 년 월 일 |
| 공작물                          | ⑯종류   |            |       |           |       |
|                              | ⑰높이   |            |       |           |       |
|                              | ⑱구조   |            |       |           |       |
| 의개요                          | ⑲공작물  |            |       |           |       |
|                              | 규     |            |       |           |       |

7803-1-3(2-2)A(2)  
1973. 9. 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sup>2</sup>)

(주6)

[별지 제18호서식]

|        |                  |
|--------|------------------|
| 건축허가표지 |                  |
| 건축주    | ①성명              |
|        | ②주소              |
| 설계자    | ③성명              |
|        | ④사무소명            |
| 공사     | ⑤성명              |
| 관리자    | ⑥사무소명            |
| 공사     | ⑦성명또는            |
| 시공자    | ⑧주소              |
| 공사현장   | ⑨성명              |
| 관리자    | ⑩주소              |
| ⑪허가번호  | ⑫허가일자            |
| ⑬대지위치  |                  |
| ⑭건축면적  | ⑮연면적             |
| ⑯주요용도  | ⑰층수지상( )지하( )    |
| ⑱공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
| (허가기관) |                  |

7803-1-8A(1)  
1973. 9. 6 승인

500m/m×350m/m

# 건축물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완전히 구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구분)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 착공 통계조사.
  2. 주택 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 ② 건축물 착공통계 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주택 착공 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 대상으로 한다.
- ④ 보정조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착공조사는 그달에 착공 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당해 건축허가 기관
2.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당해신고서 접수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 읍·면장

②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착공통계 조사
- 가. 건축주  
나. 건축 위치  
다. 지역·지구  
라. 건축물 용도  
마. 대지 면적·건축면적·연면적  
바. 층 수  
사. 건축물 구조  
아. 공사 종별  
자. 공사 기간  
차. 공사비 예정액  
카. 허가 유무
2. 주택 착공 통계 조사
- 가. 주택의 종류  
나. 주택의 형태  
다. 규모

- 라. 주택의 호수
- 마. 주택의 이용 구분
- 바. 공사자금 조달방법

### 3. 보정 조사

- 가. 보정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제기한 사항. 이 경우에 "공사비 예정액"을 "공사실시액"으로 한다
- 나. 기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8 조 (조사방법)** ① 제 6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 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 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제 6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서울 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착공신고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서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부산시장 1 부와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총괄표와 시·도별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익월 15일까지 건설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정조사)** ① 보정조사는 착공조사 결과의 보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년 1 회 건설부 장관이 임명한 조사원이 현지를 확인 조사한다.

- ② 건축주·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 ③ 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청구 및 배부)**

- ① 도지사는 익년도에 필요한 착공신고서 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 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건설부 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0월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1월30일 까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會員動靜

서울특별시지부(사무소이전)

| 姓 名   | 名 稱        | 所 在 地                 | 電 話      | 免許番号   | 登録番号  | 年 月 日 |
|-------|------------|-----------------------|----------|--------|-------|-------|
| 신 형 범 | 경진종합기술(연)  | 중구서소문동50-2            | 23-0698  | 1-54   | 1-12  |       |
| 강 용 원 | 수정건축설계사    | 관악구봉천동 399-1          | 87-3684  | 1-415  | 1-641 |       |
| 강 지 원 | 대호건축(연)    | 관악구 봉천동423            | 87-5417  | 2-15   | 2-39  |       |
| 박 동 회 | 동신종합설계공사   | 중구다동 131              | 777-4485 | 1-1466 | 1-66  |       |
| 엄 준 세 | 미로건축(연)    | 중구남산동 3가13-30         | 23-4041  | 1-1401 | 1-573 |       |
| 김 재 경 | 삼협건축(연)    | 중구남산동 3가13-30         | 23-4041  | 1-4    | 1-88  |       |
| 정 만 선 | 신 진 사      | 영등포구당산동 3가326-3       | 63-9660  | 1-34   | 1-23  |       |
| 이 현 구 | 대진건축설계사    | 동대문구신설동102-7          | 92-6264  | 2-1552 | 2-356 |       |
| 최 용 정 | 범아종합설계사    | 종로구서린동100-1           | 74-3684  | 1-311  | 1-569 |       |
| 임 경 모 | 임 창 전 측    | 강남구신사동 산79-9          | 57-0775  | 1-680  | 1-171 |       |
| 빙 창 설 | 일진건축설계사    | 영등포구당산동 3가228-23      | 53-8885  | 1-755  | 1-365 |       |
| 김 보 현 | 강남합동현대건축   | 영등포구당산동 3가228-23      | 64-2613  | 1-74   | 1-314 |       |
| 추 명 오 | 명신건축(연)    | 영등포구등촌동 산 2-19        | 33-5407  | 1-1423 | 1-589 |       |
| 김 혜 진 | 진일건축(연)    | 중구신당동248-33           | 52-1010  | 1-679  | 1-243 |       |
| 김 회 수 | 현신건축기술공사   | 종로구신문로2가89(피어선빌딩 607) | 74-7534  | 1-1081 | 1-107 |       |
| 이 근 추 | 범한건축(연)    | 중구초동13-2              | 26-3234  | 1-728  | 1-279 |       |
| 김 청 열 | 효성건축기술(연)  | 중구 수표동 11-8           | 27-4080  | 1-643  | 1-587 |       |
| 한 용 설 | 부국건축설계사    | 중구충무로 1가25-8          | 22-0510  | 1-705  | 1-220 |       |
| 이 병 균 | 대동건축설계사    | 관악구봉천동 419-3          | 87-4543  | 1-377  | 1-104 |       |
| 김 문 규 | 대전사도시건축(연) | 마포구공덕동 427-5          | 71-3966  | 1-1370 | 1-538 |       |
| 조 사 현 | 신안건축       | 중구을지로 3가 296-13       | 26-7695  | 2-1523 | 2-422 |       |
| 김 현 배 | 영신건축(연)    | 성동구구의동66-8            | 56-2454  | 2-325  | 2-317 |       |
| 유 용 준 | 현대건축설계사    | 영등포구방화동 607-197       | 66-1041  | 2-86   | 2-31  |       |
| 오 세 총 | 세일건축기술공사   | 관악구방배동 36             | 87-1726  | 2-967  | 2-267 |       |
| 김 영 길 | 양지건축설계사    | 강남구역삼동 산75-49         | 57-7385  | 2-814  | 2-233 |       |
| 김 형 인 | 세한건축기술공사   | 도봉구수유동 191-45         | 98-0211  | 1-1045 | 1-552 |       |
| 김 영 복 | 삼부건축설계사    | 동대문구신설동 103-3         | 53-3977  | 1-223  | 1-606 |       |
| 김 형 일 | 우성건축설계사    | 종로구낙원동 105-1          | 21-4016  |        | 1-681 |       |
| 박 희 선 | 도봉건축설계사    | 도봉구수유동 191-45         | 98-0211  | 2-972  | 2-389 |       |
| 민 병 구 | 민구건축설계사    | 도봉구수유동 191-45         | 99-9606  | 2-1027 | 2-240 |       |

서울특별시지부(폐업회원)

|       |              |                |         |        |       |           |
|-------|--------------|----------------|---------|--------|-------|-----------|
| 김 한 섭 | 금성종합설계공사     | 중구을지로 2가163-1  | 28-6541 | 1-309  | 1-80  | 76. 4. 29 |
| 배 기 형 |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 종로구관철동 280     | 74-0237 | 1-382  | 1-101 | 76. 4. 24 |
| 김 재 영 | 대저건축(연)      | 서대문구남가좌동295-5  | 32-4616 | 1-566  | 1-244 | 76. 4. 29 |
| 홍 대 현 | 주식회사홍대현건축연구소 | 북창동135-1       |         |        | 1-198 | 76. 5. 7  |
| 임 병 태 | 신진건축기술공사     | 종로구창신동366      | 53-3977 | 1-500  | 1-319 |           |
| 박 태 식 | 대한건축(연)      | 관악구봉천동439-4    | 68-1157 | 2-913  | 2-413 |           |
| 채 대 용 | 채대용건축(연)     | 영등포구영등포동 2가195 | 62-2446 | 2-1640 | 2-377 |           |

서울특별시지부(등록취소)

|       |       |          |         |       |       |  |
|-------|-------|----------|---------|-------|-------|--|
| 이 기 은 | 동은 건축 | 종로구세종로87 | 75-4557 | 1-214 | 1-248 |  |
|-------|-------|----------|---------|-------|-------|--|

서울특별시지부(재입회)

|                   |         |                   |           |        |       |  |
|-------------------|---------|-------------------|-----------|--------|-------|--|
| 박 시 익             | 오미건축(연) | 중구신당동294-45       | 52-0139   | 1-1457 | 1-705 |  |
| 서울특별시 지부 (전화번호변경) |         |                   |           |        |       |  |
| 이 춘 삼             | 신양건축사무소 | 중구다동87(유일빌딩 202호) | (777-3155 | 55     | 280   |  |

서울특별시지부(전임회원)

| 姓 名   | 名 稱       | 所 在 地     | 電 話     | 免許番号  | 登録番号  | 年 月 日 |
|-------|-----------|-----------|---------|-------|-------|-------|
| 문 정 식 | 범양건축기술(연) | 중구필동51-11 | 26-7325 | 1-509 | 1-690 |       |

서울특별시지부(사망회원)

|       |        |              |         |      |      |  |
|-------|--------|--------------|---------|------|------|--|
| 이 완 식 | 동림설계공사 | 도봉구수유동191-33 | 98-9130 | 2-91 | 2-45 |  |
|-------|--------|--------------|---------|------|------|--|

서울특별 시지부(영업정지)

|       |      |              |         |      |       |           |
|-------|------|--------------|---------|------|-------|-----------|
| 최 재 응 | 대정건축 | 도봉구변동 449    | 99-7896 | 1076 | 2-242 | 76. 5. 22 |
| 정 상 명 | 제림건축 | 관악구신림동 74-44 | 69-8364 | 1369 | 1-576 | 76. 5. 24 |

부산직할시지부(사무소이전)

|       |           |               |         |        |  |       |
|-------|-----------|---------------|---------|--------|--|-------|
| 박 영 두 | 오양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시중구대교동 2가22 | 44-1284 | 1-1341 |  | 76. 5 |
| 김 택 진 | 김택진건축설계원  | 남구대연동 331     | 8-8277  | 1-120  |  | 76. 5 |

부산직할시지부(휴업회원)

|       |        |            |         |       |      |          |
|-------|--------|------------|---------|-------|------|----------|
| 鄭 炳 和 | 내쇼날설계사 | 중구충무동 2가48 | 23-2683 | 1-123 | 제18호 | 76. 5. 4 |
|-------|--------|------------|---------|-------|------|----------|

경기도지부(사무소이전)

|       |           |               |      |        |    |           |
|-------|-----------|---------------|------|--------|----|-----------|
| 김 중 희 | 합동건축연구원   | 인천시중구경동83     |      | 1-210  | 8호 | 76. 4. 23 |
| 김 평 선 | 남양건축설계사무소 | 시흥군서면광명리50-2  |      | 1-398  |    |           |
| 박 응 규 | 중앙건축설계사무소 | 경기도용인읍김량장리254 | 2621 | 2-1175 | 76 | 76.5.25   |

충청북도지부(사무소이전)

|       |            |               |      |      |      |           |
|-------|------------|---------------|------|------|------|-----------|
| 오 재 영 | 삼영건축설계공사   | 청주시북문로 3가4의4  | 2789 | 668  | 1-13 | 76. 4. 16 |
| 윤 영 재 | 중합건축설계공사   | 청주시북문로 2가83-9 | 3383 | 903  | 1-6  | 76. 3. 26 |
| 오 세 형 | 중합건축설계공사   | 청주시북문로 2가83-9 | 6424 | 200  | 1-9  | 76. 3. 26 |
| 남 견 회 | 중합건축설계공사   | 청주시북문로 2가83-9 | 3383 | 203  | 1-8  | 76. 3. 26 |
| 이 지 훈 | 이지훈건축설계사무소 | 충북보은읍삼산리99    | 461  | 1310 | 2-13 | 76. 3     |
| 이 광 주 | 이광주건축설계사무소 | 충주시역전동673-1   | 3082 | 1191 | 1-10 | 76. 5. 1  |
| 김 이 구 | 한양건축설계사무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3082 | 1165 | 2-10 | 76. 5. 1  |
| 김 진 용 | 김진용건축설계사무소 | 충주시역전동 664-1  | 3795 | 204  | 1-2  | 76. 5. 1  |
| 김 태 철 | 현대건축사      | 충주시역전동 673-1  | 3795 | 329  | 1-4  | 76. 5. 1  |

전라남도지부(사무소이전)

|       |           |                  |        |        |      |           |
|-------|-----------|------------------|--------|--------|------|-----------|
| 宋 良 浙 | 한미건축설계사무소 | 광주시동구계림동505-1085 | 3-9516 | 1-1257 | 광주20 | 76. 2. 27 |
| 李 準 珩 | 아세아건축사무소  | 광주시동구계림동505-1085 | 4-3558 | 2-592  | 광주 6 | 76. 2. 27 |
| 朴 錦 植 | 금호건축연구원   | 광주시동구계림동505-1085 | 4-3558 | 2-1701 | 광주29 | 76. 2. 27 |
| 金 琰 植 | 국제설계사무소   | 광주시동구계림동505-1085 | 3-1302 | 1-176  | 광주 5 | 76. 2. 27 |
| 曹 龍 造 | 한일건축사무소   | 광주시동구금남로 5가153-2 | 3-0520 | 2-1329 | 광주19 | 76. 3. 30 |
| 裴 允 珍 | 삼일건축사무소   | 광주시동구금남로 5가153-2 | 4-3237 | 2-281  | 광주12 | 76. 3. 30 |
| 崔 秀 一 | 백제건축설계사무소 | 광주시동구금남로 5가153-2 | 4-3342 | 2-1245 | 광주20 | 76. 3. 30 |
| 朱 曉 昇 | 상아건축설계사무소 | 광주시동구금남로 2가15    | 2-5538 | 2-1247 | 광주21 | 76. 4. 7  |
| 李 璚   | 우일건축연구원   | 광주시동구대인동311-2    | 2-6944 | 1-343  | 광주10 | 76. 5. 1  |



경상북도지부(사무소이전)

| 姓 名   | 名 稱          | 所 在 地     | 電 話    | 免許番号   | 登録番号  | 年 月 日     |
|-------|--------------|-----------|--------|--------|-------|-----------|
| 서 상 길 |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 중구동문동 9-7 | 4-1246 | 2-1053 | 2-114 | 76. 5. 25 |
| 김 상 응 | 대구건축사합동중부사무소 | "         | "      | "      | "     | "         |

경상북도지부(폐업회원)

|       |              |                 |        |        |     |           |
|-------|--------------|-----------------|--------|--------|-----|-----------|
| 강 신 원 | 대구건축사합동원대사무소 | 대구시원대동 3가1366-4 | 4-7817 | 1-147  | 132 | 76. 5. 15 |
| 이 중 섭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대구시동문동13        | 5-4501 | 2-506  | 14  | 76. 5. 15 |
| 이 중 만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대구시중구동문동13      | 4-1788 | 1-158  | 53  | 76. 5. 17 |
| 오 인 준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중구동문동13         | 5-6278 | 2-507  | 121 | 76. 5. 19 |
| 이 지 관 | 대구건축사합동신암사무소 | 대구시신암동 164-17   | 4-9046 | 2-148  | 153 | 76. 5. 20 |
| 홍 기 원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대구시중구동문동13      | 2-4368 | 2-1742 | 98  | 76. 5. 26 |
| 김 상 태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가54      |        | 1-1155 | 7   | 76. 5. 26 |

경상북도지부(휴업회원)

|       |                    |              |        |        |    |           |
|-------|--------------------|--------------|--------|--------|----|-----------|
| 임 종 순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중구동문동13      | 4-5769 | 1-155  | 62 | 76. 5. 8  |
| 임 경 종 | 대구건축사합동동성건축<br>연구소 | 중구동성로 2가 100 | 5-4744 | 1-1052 | 29 | 76. 5. 18 |

경상남도지부(사무소이전)

|       |         |              |        |  |       |          |
|-------|---------|--------------|--------|--|-------|----------|
| 임 명 의 | 대양건축설계사 | 마산시중앙동 3가3번지 | 2-3868 |  | 제 8 호 | 76. 5. 3 |
|-------|---------|--------------|--------|--|-------|----------|

경상남도지부(전출회원)

|       |           |              |        |  |  |  |
|-------|-----------|--------------|--------|--|--|--|
| 하 성 국 | 덕명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동구신천동 845 | 5-9050 |  |  |  |
|-------|-----------|--------------|--------|--|--|--|

서울특별시지부(폐업회원)

|       |           |             |         |      |       |           |
|-------|-----------|-------------|---------|------|-------|-----------|
| 신 정 환 | 대흥건축설계사   | 관악구사당동 9-31 | 69-4931 | 609  | 1-465 | 76. 5. 31 |
| 고 석 생 | 태우건축연구소   | 관악구봉천동 59-2 | 68-0726 | 1300 | 1-666 | 76. 6. 5  |
| 오 봉 근 | 오전건축설계사무소 | 도봉구번동 449-3 | 99-2609 | 556  | 1-669 | 76. 5. 26 |
| 최 석 문 | 삼진건축설계연구소 | 중구신당동 432-1 | 52-3115 | 647  | 1-325 | 76. 5. 24 |
| 박 순 종 | 예지건축설계실   | 마포구노고산동57-1 | 32-4336 | 1656 | 2-374 | 76. 5. 24 |

서울특별시지부(사무소폐쇄)

|       |            |             |         |      |       |           |
|-------|------------|-------------|---------|------|-------|-----------|
| 이 상 신 | 상진건축연구소    | 응암동87-2     |         |      | 2-438 | 76. 5. 27 |
| 김 병 일 | 유진건축연구소    | 합동24-22     | 73-6047 | 611  | 2-105 | "         |
| 유 판 열 | 신현대건축연구소   | 영등포동 2가159  | 63-8781 | 45   | 2-362 | "         |
| 이 지 훈 | 복지건축연구소    | 서교동354-1    | 33-1633 | 311  | 2-115 | "         |
| 원 익 희 | 삼원건축계획(연)  | 신설동101-7    | 93-2665 | 438  | 2-166 | "         |
| 장 술   | 장 전 사      | 봉천동419-3    | 67-4830 | 934  | 2-214 | "         |
| 조 환 용 | 천호건축연구소    | 천호동409-13   | 55-8473 | 1554 | 2-386 | "         |
| 박 정 현 | 태극건축연구소    | 자양동187-1    | 55-4320 | 2    | 2-383 | "         |
| 박 정 철 | 동보건축기술연구소  | 신설동102-6    |         |      | 2-42  | 76. 6. 2  |
| 강 기 세 | 중앙엔지니어링    | 중구장충동 2가202 | 53-8194 | 708  | 1-630 | "         |
| 이 태 봉 | 동보건축이태봉건축사 | 종로구충인동1256  | 94-3131 |      | 2-380 | "         |

서울특별시지부 (휴업회원)

| 姓 名   | 名 稱                    | 所 在 地            | 電 話                | 免許番号 | 登録番号  | 年. 月. 日 |
|-------|------------------------|------------------|--------------------|------|-------|---------|
| 송 시 준 | 삼연사전속연구소               | 중구수표동11-1        | 29-1415            | 1001 | 1-649 | 76.5.31 |
| 최 용 정 | 범아종합설계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3-6705            | 1340 | 1-569 | 76.6.1  |
| 김 관 풍 | 서울합동기술개발공단<br>김관풍건축연구소 | 중구다동87. 유일BD202호 | 23-2436<br>23-7154 | 26   | 1-62  | 76.6.1  |
| 이 재 덕 | 삼양건축설계사무소              | 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 6   | 62-4413            | 375  | 1-317 | 76.5.31 |
| 이 환 명 | 신우건축설계사무소              | 성북구삼전동 5 가298-1  | 93-3831            | 114  | 1-302 | 76.5.31 |
| 송 관 식 | 황해건설사                  | 중구을지로 1 가26-1    | 23-2410            | 58   | 1-20  | 76.6.3  |

부산직할시지부 (폐업회원)

|       |                |                |         |        |       |         |
|-------|----------------|----------------|---------|--------|-------|---------|
| 고 총 영 | 동래지구건축사합동건축연구소 |                |         | 2-1672 | 동래제44 | 76.5.26 |
| 김 희 관 | " 보림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광동 4 가14    |         | 1-976  | 중구제12 |         |
| 강 신 칠 | " 유니온신신건축연구소   | 진구부전동 259-19   |         | 2-1673 | 진구제77 | 76.5.29 |
| 박 재 평 | " 삼익에이스건축설계사   | 남구대연동 327-12   |         | 2-1733 | 남구제4  | 76.5.29 |
| 강 신   | " 영신건축사무소      | 동래구북천동 380-5   |         | 2-1613 | 동래제35 | 76.5.29 |
| 강 영 기 | " 종합설계사        | 중구신창동 1 가8     |         | 1-131  | 중구제22 | 76.5.   |
| 박 규 식 | " 전우설계사        | 중구광복동 1 가59    | 22-8030 | 1-972  | 중구제10 | 76.5.17 |
| 조 준 길 | " 조광건축설계사      | 부산진구부전동 264-23 | 3-5166  | 2-1514 | 진구제61 | 76.5.25 |
| 조 성 래 | " 상명건축사무소      | 남구대연동1741-3    | 6-6216  | 2-533  | 남구제12 | 76.5.18 |

충청북도지부 (사무소이전)

|       |         |           |      |     |       |  |
|-------|---------|-----------|------|-----|-------|--|
| 정 순 모 | 정화건축    | 제천읍명동10-2 | 3513 | 78  | 2-182 |  |
| 이 기 등 | 기 신 건 축 | "         |      | 359 | 2-9   |  |
| 유 영 수 | 신 건 축   | "         |      | 959 | 2-183 |  |
| 이 학 로 | 대 성 건 축 | "         |      | 201 | 1-2   |  |

전라남도지부 (폐업회원)

|       |           |                 |  |       |    |         |
|-------|-----------|-----------------|--|-------|----|---------|
| 黃 義 國 | 신광설계사무소   | 목포시대의동 6 의 1 번지 |  | 2-270 | 18 | 76.3.29 |
| 黃 判 奉 | 황건건축설계사무소 | 순천시저전동114       |  | 2-608 | 25 | 76.5.7  |

경상북도지부 (사무소이전)

|       |           |           |        |        |       |         |
|-------|-----------|-----------|--------|--------|-------|---------|
| 김 용 태 | 태화건축설계사무소 | 남구대명동2107 | 5-5883 | 5-320  | 1-152 |         |
| 이 중 우 | 현 대 건 축   | 중구동문동 1-2 | 4-4046 | 1-1153 | 1-23  | 76.5.29 |
| 김 무 권 | 현대건축연구소   | "         | 4-4046 | 1-1517 | 1-99  | "       |
| 구 성 일 | 현대건축사무소   | "         | "      | 2-1589 | 2-108 | "       |
| 권 국 현 | 현대건축설계사무소 | "         | "      | 2-1354 | 2-130 | "       |

경상북도지부 (휴업회원)

|       |              |           |  |  |     |         |
|-------|--------------|-----------|--|--|-----|---------|
| 박 정 규 | 대구건축사합동중앙사무소 | 중구동인동12-1 |  |  | 129 | 76.5.29 |
|       |              |           |  |  |     |         |

경상북도지부(사무소이전)

| 姓 名   | 名 稱              | 所 在 地          | 電 話    | 免許番号   | 登録番号  | 年 月 日     |
|-------|------------------|----------------|--------|--------|-------|-----------|
| 서 보 광 | 대구건축사합동동성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2 가100   | 5-4744 | 1-1519 | 93    | 76. 5. 3  |
| 임 경 중 | "                | "              | 5-4744 | 2-1052 | 29    | "         |
| 김 영 태 | "                | "              | 5-4744 | 2-1739 | 94    | "         |
| 이 기 혁 | "                | "              | 5-4744 | 2-1697 | 101   | "         |
| 박 상 정 | "                | "              | 2-0474 | 2-1067 | 124   | "         |
| 안 승 재 | 대구건축사합동한진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종로 2 가41-38  | 2-0474 | 1-1349 | 6     | 76. 5. 7  |
| 이 덕 우 | "                | 중구종로 2 가41-38  |        | 1-880  | 126   | "         |
| 김 남 수 | " 공평건축연구소        | 중구동문동10        | 4-8356 | 1-307  | 33    | "         |
| 김 경 진 | " 중앙로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35-13 | 3-0445 | 1-151  | 134   | "         |
| 김 대 룡 | " 공평건축연구소        | 중구동문동10        | 4-8356 | 1-767  | 139   | "         |
| 정 수 영 | " 한진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종로 2 가41-38  | 2-0474 | 1-881  | 155   | "         |
| 백 봉 상 | " 공평건축연구소        | 중구동문동10        | 4-8356 | 2-1619 | 2     | "         |
| 김 주 학 | " 한진건축설계사무소      | 중구종로 2 가41-38  | 2-0474 | 2-522  | 106   | "         |
| 한 석 인 | " 한진 "           | "              | 2-0474 | 1-910  | 128   | "         |
| 최 원 태 | " 공평건축사무소        | 동구신천동781-3     | 4-8356 | 1-1272 | 140   | "         |
| 이 수 일 | "                | "              |        |        | 2     | 76. 5. 7  |
| 안 상 은 | 대구건축사합동동도사무소     | 동구신천동772-11    | 4-1510 | 2-1742 | 89    | "         |
| 장 상 희 | " 서부사무소          | 서구비산동389-5     | 2-5772 | 2-278  | 157   | "         |
| 김 영 두 | 대구건축사합동대원건축      | 중구동문동 1        | 5-7565 | 1-1270 | 22    | 76. 4. 28 |
| 김 성 일 | 대구건축사합동대원건축      | 중구동문동 1        | 5-7565 | 2-1476 | 30    | "         |
| 이 홍 기 | "                | "              | 5-7565 | 2-1416 | 116   | "         |
| 김 규 열 | "                | "              | 5-7565 | 2-1482 | 117   | "         |
| 고 목 훈 | "                | "              | 5-7565 | 2-1583 | 119   | "         |
| 이 진 회 | 이진회건축사무소         | 중구동인동 2 가165-1 | 4-1785 | 1-149  | 3     | "         |
| 방 한 수 | 대구건축사합동동인사무소     | 중구동문동 9-10     | 4-8098 | 1-319  | 49    | "         |
| 김 태 욱 | "                | "              | 4-8098 | 2-1584 | 64    | "         |
| 이 무 상 | 대구건축사합동사무소       | 중구동문동 9-10     | 4-8098 | 2-1693 | 81    | "         |
| 이 상 열 | " 동인사무소          | "              | 4-8098 | 2-1578 | 103   | "         |
| 임 팔 임 | " 동인사무소          | "              | 4-8098 | 2-1740 | 107   | "         |
| 문 귀 등 | "                | "              | 4-8098 | 2-1130 | 131   | "         |
| 박 정 규 | 대구 건축사합동중앙사무소    | 중구동인동 2 가12-1  | 4-7648 | 1-148  | 129   | 76. 5. 3  |
| 도 원 회 | 대구건축사합동중앙사무소     | 중구동인동 2 가12-1  | 4-7648 | 2-1101 | 63    | "         |
| 임 두 현 | 대구건축사합동중앙사무소     | 중구동인동 2 가12-1  | 4-7648 | 2-480  | 67    | "         |
| 도 무 찬 | 대구건축사합동중앙사무소     | "              | 4-7648 | 2-1692 | 19    | "         |
| 최 병 민 | "                | "              | 4-7648 | 2-933  | 105   | "         |
| 최 승 삼 | 대구건축사합동성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2 가100   | 5-4744 | 1-1387 | 38    | "         |
| 김 인 호 | 대구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 동구신천동 781-3    | 4-8688 | 1-1152 | 1-10  | 76. 5. 25 |
| 정 재 수 | 대구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 동구신천동 781-3    | 4-8688 | 2-1059 | 2-41  | "         |
| 김 홍 태 | 대구건축사합동동부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54    | "      | 1-679  | 1-72  | "         |
| 최 성 덕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54    | 2-4368 | 1-991  | 1-160 | "         |
| 박 해 룡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54    | 2-4368 | 2-523  | 1-42  | "         |
| 최 용 남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54    | 2-4368 | 2-1585 | 2-46  | "         |
| 박 영 하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성로 3 가54    | 2-4368 | 2-925  | 2-47  | "         |
| 박 현 일 | 도심건축설계사무소        | 중구동문동 9-7      | 2-4368 | 2-1694 | 2-68  | "         |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백 정 열  
名 稱 대 지 건축 연구소  
所 在 地 서대문구남가좌동295-5  
電 話 32-4616  
免許番号 1-1489  
登録番号 683  
年 月 日 76.4.29



本 籍 충청북도  
姓 名 조 영 민  
名 稱 성 아 엔 지 니 어 링  
所 在 地 서울중구을지로2가148-53  
電 話 26-2032  
29-0098  
免許番号 2-1233  
登録番号 440  
年 月 日 76.4.14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白 聖 国  
名 稱 동우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중구양동286  
電 話 23-1291  
免許番号 1-1324  
登録番号 709  
年 月 日 76.5.10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許 畢 鼎  
名 稱 대한합동설계공사  
所 在 地 중구무교동19  
(체육회관305호)  
電 話 23-0219  
28-4131  
免許番号 1-3호  
登録番号 709  
年 月 日 76.4.30

京畿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崔 勝 元  
名 稱 태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경기도안양시안양동631-6  
電 話 5645  
免許番号 2-1662  
登録番号 11  
年 月 日 76.3.29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全 成 男  
名 稱 성준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군동부면신장리427  
電 話 601  
免許番号 2-1389  
登録番号 2  
年 月 日 76.4



本 籍 제주도  
姓 名 尹 榮 才  
名 稱 유신건축연구소  
所 在 地 경기도김포군김포면  
북면리376  
電 話 김포78  
免許番号 2-1325  
登録番号 1  
年 月 日 76.4.20

慶尙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경 북  
姓 名 洪 聖 圭  
名 稱 환경건축설계연구소  
所 在 地 대구시 중구동문동16-2  
電 話 5-4450  
免許番号 1-1484  
登録番号 163  
年 月 日 76.5.12

慶尚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慶 北  
姓 名 林 門 基  
名 稱 유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북구칠성동 2가35  
電 話 2-8520  
免許番号 1-1441  
登録番号 112  
年 月 日 76.5.10



本 籍 慶 北  
姓 名 金 泰 浩  
名 稱 대능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서구비산동391-13  
電 話 3-2962  
免許番号 2-179  
登録番号 132  
年 月 日 76.5.20



本 籍 慶 北  
姓 名 李 広 一  
名 稱 유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북구칠성동 2가35  
電 話 4-5480  
免許番号 2-1073  
登録番号 162  
年 月 日 76.5.12



本 籍 慶 北  
姓 名 林 大 圭  
名 稱 대능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서구비산동391-13  
電 話 3-2962  
免許番号 2-712  
登録番号 121  
年 月 日 76.5.20



本 籍 大 邱  
姓 名 秋 慶 鎬  
名 稱 유진건축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동구신천동772-4  
電 話 2-1420  
免許番号 2-1420  
登録番号 113  
年 月 日 76.5.11



本 籍 慶 北  
姓 名 張 基 雄  
名 稱 유진건축연구소  
所 在 地 대구시중구교동9-1  
電 話 4-5458  
免許番号 2-1054  
登録番号 14  
年 月 日 76.5.15.



本 籍 大 邱  
姓 名 鄭 慶 雲  
名 稱 가야건축연구소  
所 在 地 대구시중구 포정동44  
電 話 3-6798  
免許番号 1-145  
登録番号 104  
年 月 日 76.4.24

全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全 南  
姓 名 金 鉉 俊  
名 稱 삼호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대인동49-5  
電 話 4-2722  
免許番号 2-1451  
登録番号 광주37  
年 月 日 76.2.23

全羅南道支部 新入會員



本 籍 전 남  
姓 名 徐 永 俊  
名 稱 내외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제림동505-558  
電 話 3-5421  
免許番号 1-1481  
登録番号 광주26  
年 月 日 76.3.4



本 籍 전 남  
姓 名 金 容 均  
名 稱 삼성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제림동505-108  
電 話 4-3200  
免許番号 2-1322  
登録番号 광주38  
年 月 日 76.3.19



本 籍 전 남  
姓 名 朴 武 吉  
名 稱 대광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동구남동168  
電 話 2-1743  
免許番号 1-1288  
登録番号 27  
年 月 日 76.5.12

---

室内建築入門

室内디자인

Interior Design,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interiors.

A. Freidmann

J. F. Pile

F. Wilson

共著

弘益大学校 建築科교수

尹 道 根

漢陽大学校 建築学科교수

劉 熙 俊

共 訳

4 × 6 배판 350面 가격 ₩4,500원

발행일 : 1976. 6. 24

발행인 : 技術書籍兄弟社

29-5427

---

## 協會記事



■ 제 1 회 지도위원회 회의광경



■ 서정채신 및 새마을 사업추진  
전국 사무국장회의



■ 본회를 방문 집행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는 건설부 남덕현 주택 도시국장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지부에서는  
원호의 달을 맞이하여 제주신문 사  
에서 개최하는 제주도 원호대상  
(76. 6. 4. 14:00제주도문화관)  
수상식에 참여하고 수상자 전달금  
으로 행사비중에서 일금 1만원을  
기탁하여 원호의 달 행사에 참여했  
음.

# 月間協會動靜

## 제12회 (정기) 이사회

일 시 : 1976. 6. 3. 16: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출석임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성일영 김진성 김두섭 정효환  
참석임원 : 감 사 박래운 서울지부장 이봉로  
부의안건 : 가. 1976년도 본부 및 시도지부 추가 경쟁 예  
산 승인 신청  
나. 차량 양도 승인의 건  
다. 본소장 취임 승인의 건  
라. 주택은행 표준설계도 설계비 경감 협조의  
회의 건  
마. 잠실지역 설계 보수 요율 경감 협조 회의  
의 건  
사.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아. 직원 표창에 관한 건  
자. 기타사항

## 제3회 사무국장 회의

일 시 : 1976. 6. 5.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임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감사 박래운  
출 석 : 사무청장 노병진 총무부장 안희모 기획부장  
이해운 출판부장 이해동 사업담당 김희근  
총무과장 박영목 서무담당 박희수 기술과장  
홍록표  
고진학(서울) 반덕진(부산) 박찬영(경기)  
김창남(강원) 표중호(충북) 김영윤(충남)  
강원창(전북) 정동주(전남) 김홍업(경북)  
박수원(경남) 홍전호(제주)

부의안건 : 서정세진 및 새마을 사업추진과 물자절약 및  
행정제도 개선

## 제1회 지도위원회

일 시 : 1976. 6. 16. 12:00  
장 소 : 서린호텔 3층  
참 석 : 이규복 장기인 강명구 강봉진 한창진

## 제5회 편찬위원회

일 시 : 본회 회의실  
출 석 : 위원장 김두섭  
위 원 김인석 김진일 신현식  
이문보 유경철 윤도근

부의안건 : 가. 4월호 합경  
나. 5월호 편집 계획안 검토  
다. 기타사항

## 제13회 임시이사회

일 시 : 1976. 6. 15.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출석임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성일영 김진성 김두섭 정효환  
참석임원 : 감 사 박래운 서울지부장 이봉로  
부의안건 :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책 실시에 관한 건

## 제4회 지부장회의

일 시 : 1976. 6. 17.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 석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성일영 김진성 김두섭 정효환  
감 사 윤희준 박래운  
지부장 이봉로(서울) 유광택(부산) 김일호(경기)  
이상철(강원) 오석근(충북) 박홍우(충남)  
이영수(전북) 최춘화(전남) 윤 옥(경북)  
윤상봉(경남) 강은홍(제주)

토의사항 : 가. 주택건축허가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건  
나. 기타사항

## 本會 會館建立委員 10名委嘱

本會에서는 当然職外の 會館建立委員으로 다음의 人士를 委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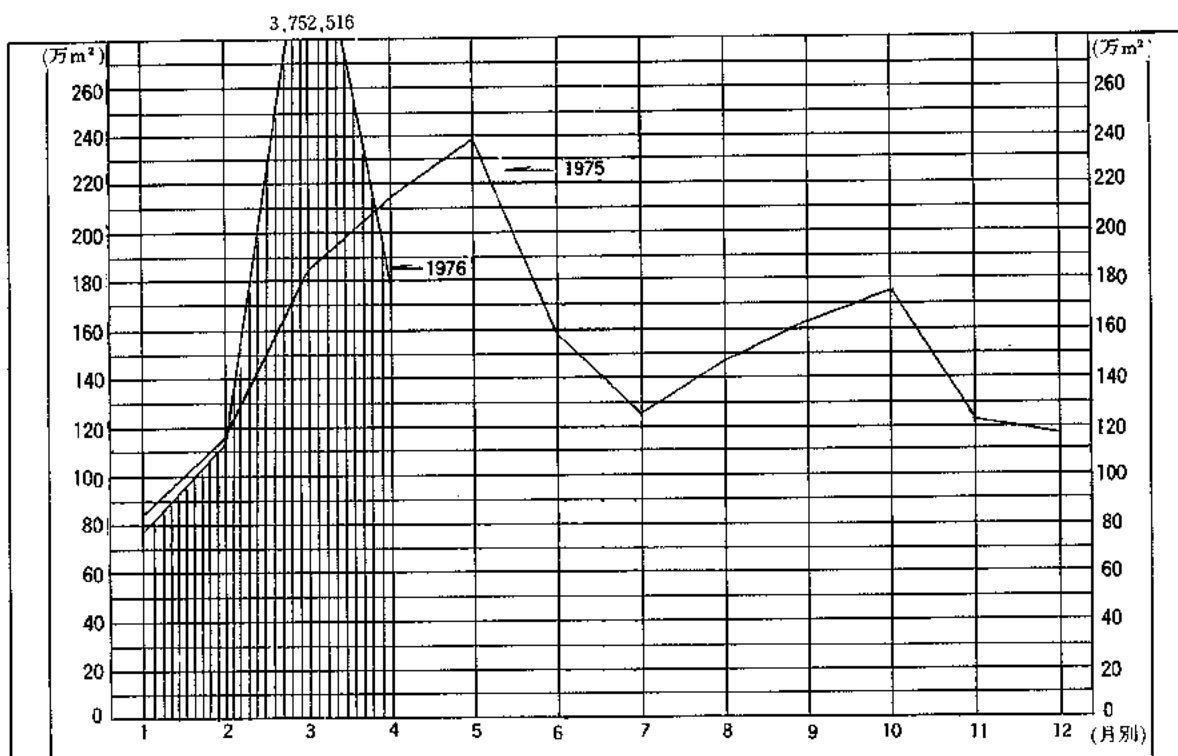
|   |   |   |                         |                   |          |
|---|---|---|-------------------------|-------------------|----------|
| 이 | 홍 | 수 | 신일건축연구소                 | 중구필동 2 가10        | 27-3337  |
| 오 | 완 |   | 전합건축연구소                 | 중구필동 1 가43- 1     | 25-5217  |
| 연 | 진 | 명 | 연전건축설계                  | 중구명동 1 가5 - 1     | 776-8656 |
| 이 | 만 | 재 | 불이건축설계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101- 7     | 92-3690  |
| 유 | 명 | 하 | 대한합동설계공사                | 중구무교동14(체육회관 305) | 23-0219  |
| 김 | 춘 | 배 | 서울지부농부문소장               |                   |          |
|   |   |   | 중구신당동 250- 9 주택은행라6성동지점 | 703               | 53-1141  |
| 박 | 형 | 삼 | 삼미건축연구소                 | 중구을지로 3 가334 - 2  | 26-2349  |
| 안 | 영 | 준 | 삼에이건축연구소                | 성북구삼선동 1 가13~ 4   | 92-3758  |
| 이 | 종 | 완 | 서울지부서부분소장               | 서대문구교남동24- 3      | 74-8524  |
| 이 | 주 | 호 | 서울지부장남분소장               | 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195   | 64-29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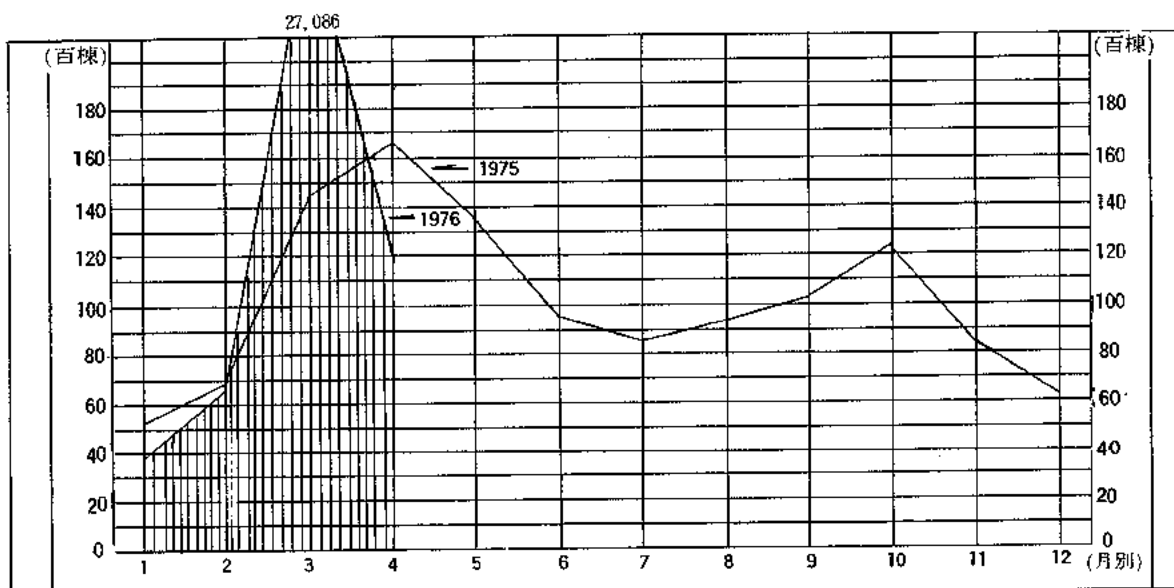
# 全國建築許可統計

(1976年4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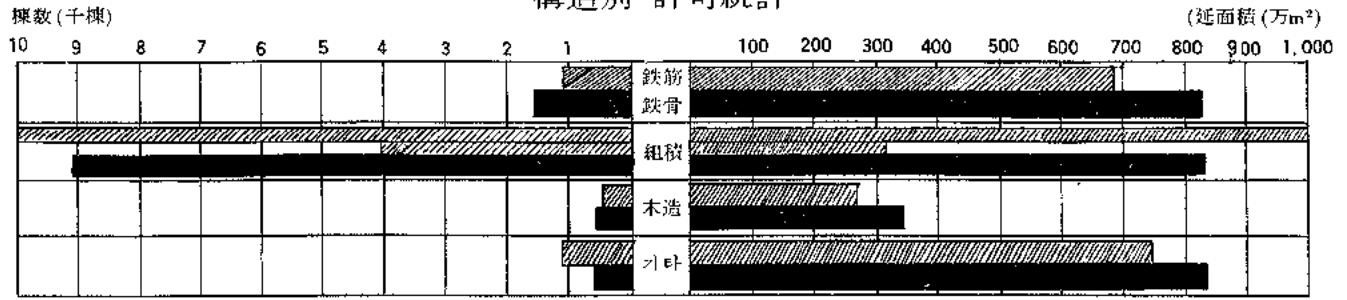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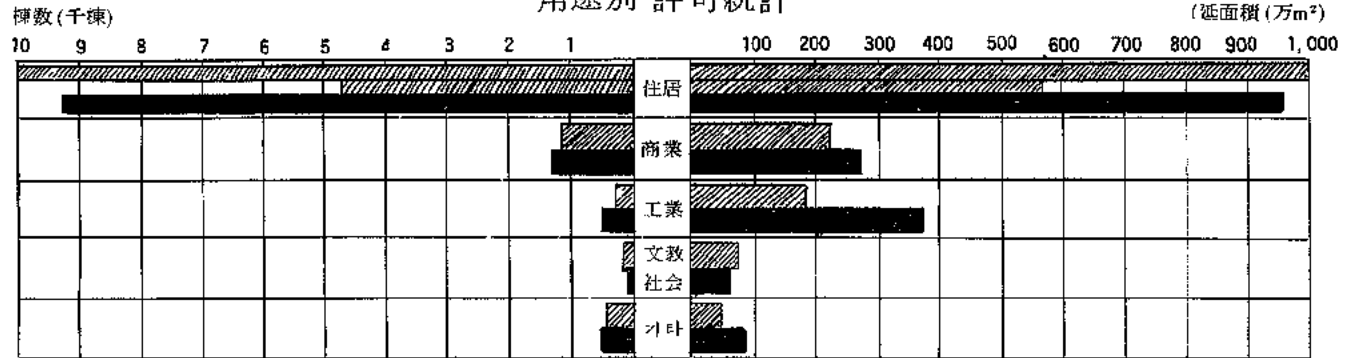
(1976年4月分)

1975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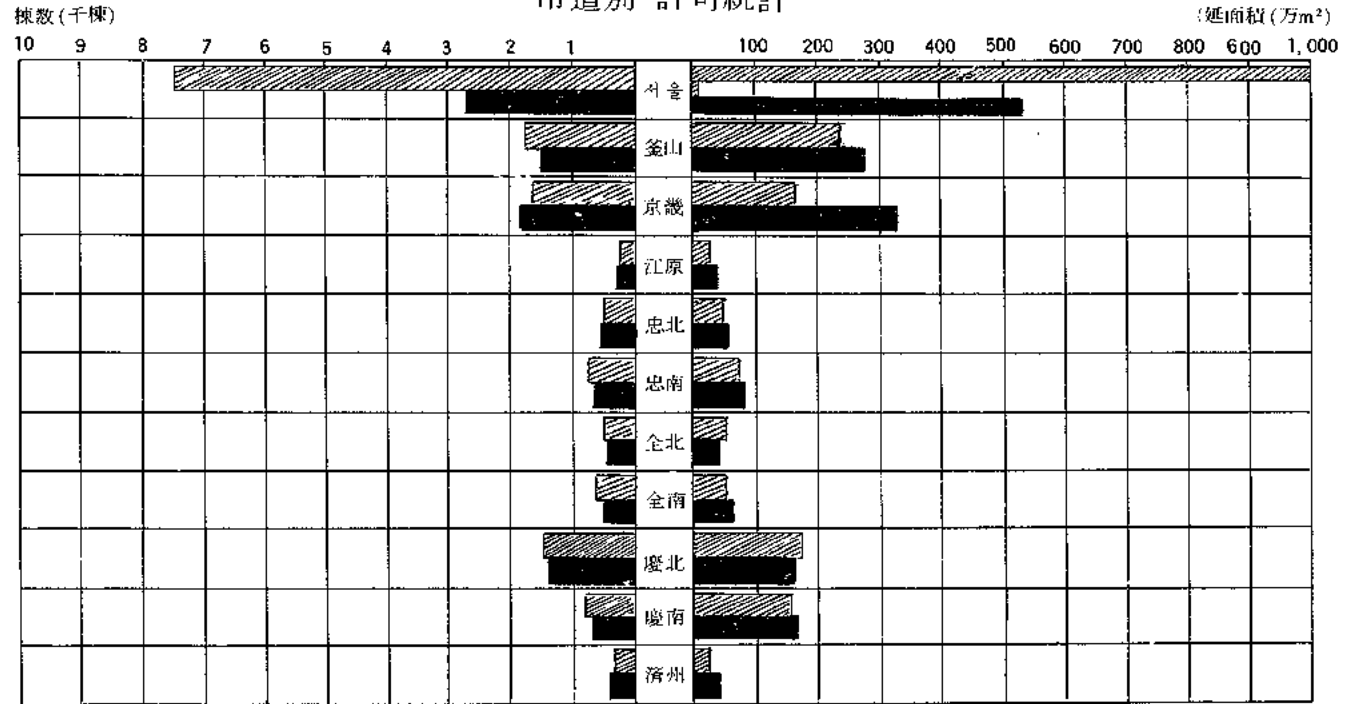
構造別 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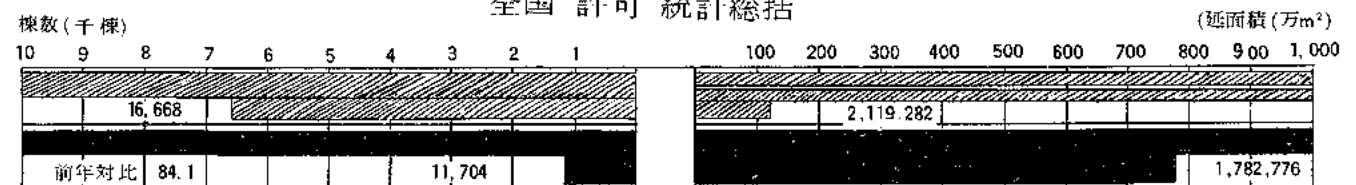
用途別 許可統計



市道別 許可統計



全国 許可 統計總括



## 편 집 후 기

이해도 벌써 그 절반을 보내고 오유월 폭염의 계절로 접어들었다.

우리 협회도 이제는 모든면에서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변화로써 중흥의 바탕을 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에로의 지향은 어제 오늘의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국 우리 회원님들의 피와 땀의 결정이리라. 이와 병행 우리회지 “건축사”지도 발맞추어 한층 분발 회원님들에게 추모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실을 다 해보려 한시도 게을러서는 아니되겠다. 긴장을 하고 있으나 항상 아쉬움을 안은채 달을 넘기곤 한다.

이제 우리 회관(본부)주변 무교동의 환경도 수십년의 저들은 때를 벗어 던지고 말끔하고 시원한 전면이 전개되어 그전면모가 웬히 들어나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표정도 밝다.

이러한 환경아래 출판부에도 활력소적인 역할을 담당케된 지경자양이 전입 발령을 받고 자리를 옮겨 앗하李·許·俞·池로 그 살림이 늘었다.

회장님을 비롯 전임원들의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과격적인 배료를 보은 하는 길은 오직 더 발전된 회지·알찬 기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길만이리라 다짐하며 편집을 서둘러 본다.

그리고 공사 바쁘신중 기고하여 주시는 여러 집필자 제위의 후의를 외람되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편달 있으시길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회원님들의 작품과 회원코너 기고를 간접으로 청탁하오니 많으신 참여와 아낌없는 편달을 바랍니다.

평소 회지 “건축사”의 편집을 위해 측면에서 적극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쓰다주시는 사무처장님 그리고 동료 직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후기를 줄인다.